

월간
재정포럼

2018. April_Vol.262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4

권두칼럼

양적·질적 속성이 판이한 한국과 일본의 국가 채무 | 국중호

현안분석

OECD 공기업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박한준

기업의 사내유보, 현금성자산 그리고 투자행태 추이와 시사점 | 김학수

정책연구

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1) 외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안 승인 외

CONTENTS

권두칼럼

양적·질적 속성이 판이한 한국과 일본의 국가 채무 · 국중호 ... 02

현안분석

OECD 공기업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박한준 06

기업의 사내유보, 현금성자산 그리고 투자행태 추이와
시사점 · 김학수 24

정책연구

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1)
· 전병목·송호신·성명재·전영준·김승래 44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 오종현·최충 48

법인세 정책이 기업의 위험부담행위에 미치는 영향
· 김학수·김빛마로 52

친환경차 확산 관련 조세제도의 정책방향 · 최준욱·이동규 57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이상엽·홍우형 60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관세율 체계 분석 연구
· 정재호·강성훈 63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안 승인 외 68

조세·재정 정책 및 연구 동향

세미나 & 정책 및 연구 120

정책흐름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125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130



양적 · 질적 속성이 판이한 한국과 일본의 국가 채무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 경제학 교수
서울대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16년 말 한국이 38.3%, 일본이 239.3%를 보이고 있다(IMF 정부재정통계).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현격히 낮으므로 빚을 낼 여력이 충분하다고 곧잘 언급되며, 그럴 듯하게 들리기도 하다. 때문에 늘어나는 복지비용 등의 재정지출을 담당해야 하는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큰 유혹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그 유혹을 제어하지 못하면 헤어내기 어려운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구조적으로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는 국면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일본의 상황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가계 순자산(=자산-부채), 대외 불안정성, 한일 국민성 차이를 들어, 국가채무가 늘어날 때 한국이 일본보다 위험할 수 있음을 가늠해 보자.

가계 순자산 차이

우선, 한국은 국채를 인수할 수 있는 가계 순자산이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다. 쌓아놓은 재산도 많지 않으면서 빚을 크게 늘리다간 파탄에 이를 수 있다. 가계(민간비영리단체 포함) 순자산을 보면 한국이 7,539조원, 일본이 2경 5,958조원으로 한국보다 3.4배나 많다(한국은행 및 내각부 통계에 의거해 산출. 2016년). 일본 인구(1억 2,700만명)가 한국보다 2.5배 많다는 점에 견주어 보아도 일본의 가계 순자산이 한국을 크게 능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채발행 증대가 있을 때 한국의 가계가 일본에 비해 그 소화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거품경제 붕괴가 있었던 1990년대 초부터 급증하였다. 1990년대 평균 71.9%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0년대 159.8%로 2배 이상 상승하고 있다(재무성 자료 이용). 구조개혁을 수반하지 않은 케인즈식 경제정책(대형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의 실패와 함께 고령화 진전에 따른

연금, 의료 등의 사회보장 지출 증대가 재정 압박 및 국가채무 누증을 가져왔다.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급부비 비율은 1990년 13.7%에서 2016년 30.7%로 17.0%p나 높아지고 있다(후생노동성 자료). 그럼에도 일본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국채 발행을 소화할 수 있는 가계 금융자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외 불안정성

다음으로 한국은 대외 불안정성이 일본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일본의 재정 위험성은 대외적이 아닌 '대내적' 위험성이다. 비록 1경원이 넘는 엄청난 국가채무(1,087조엔의 국채 및 단기국고증권)를 떠안고 있지만 외국인의 일본 국채 보유 비율은 11.0%에 불과하다(2017년 9월 말).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국채 수익률(이자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띤다.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앞세우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얼마나 보유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한국이 국채 보유 주체별 내역 발표를 꺼린다 함은 그만큼 국가채무의 잠재적 대외 불안정성이 높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1997년 이전의 한국은 국가채무 증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재정 수요가 커졌으나 경제성장률은 낮아져 국가채무를 줄이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00년 18.4%에서 2016년 38.3%로 두 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등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여기에 가계 부문의 국채 인수 여력도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의 한국 국채 보유 비율이 늘어났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정주성(定住性) 성향 차이

마지막으로 일본인이 한국인에 비해 정주성이 강하다는 국민성을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벗어나는 것에 두려움을 지녀왔던 일본인은 집단을 빠져나가 혼자 독립해 살겠다는 행동을 극히 꺼려한다. 내부에 머물려는 불박이 정주성이 강하다 함은 설사 재정 파탄이 있더라도 나라를 떠나 살겠다는 이들이 아주 적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이는 일본의 폐쇄성을 반영하는 단면이지만, 달리 보면 일본으로 유입된 부(富)의 국외 유출이 적을 것임을 시사한다.

.....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재정 수요가 커졌으나 경제성장률은 낮아져 국가채무를 줄이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다.

.....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은
양적, 질적으로
국가 채무 속성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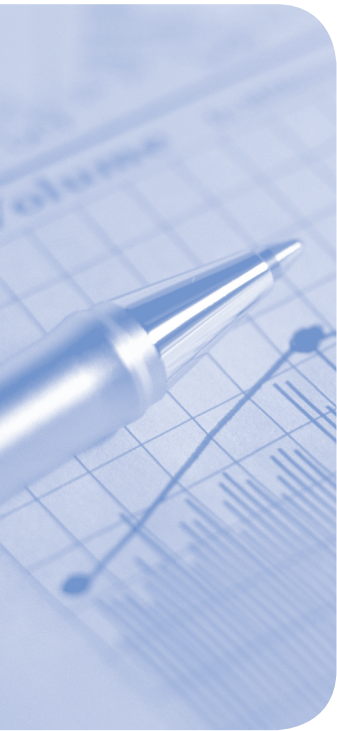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이동성이 높은 편이다. ‘내 돈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 성향이 일본보다 강하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있었고 그 극복을 위해 산업 구조조정이 한창이었을 때 많은 능력자가 한국을 떠나기도 했다. 정주성이나 이동성 차이를 두고 한쪽이 좋고 다른 한쪽이 나쁘다는 가치 평가를 하려 함이 아니다. 양국민의 성향 차이를 지적한 데 불과하다. 다만 뛰어난 인재들이 떠나가면 한국 내에서 부(富)를 일궈낼 동력도 줄어들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 부채가 많은 일본, ‘국가’ 부채가 늘어날 한국

일본에서는 가계 금융자산이 발행 국채를 대량 소화하고 있다. 달리 말해 일본은 대외 국가채무가 많은 게 아니라, 가계가 채권자이고 정부가 채무자인 ‘정부’ 부채가 많은 상황이다. 일본은행도 40%가 넘는 국채를 떠안고 있다 (40.9%, 2017년 9월 말). 아베노믹스 금융완화 정책은 일본은행에 의한 간접적인 국채인수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채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여 이자비용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금융완화에는 ‘국채 이자비용 억제’를 통한 재정문제 대응이라는 속내가 숨어 있다. 와세다(早稻田) 대학의 노구치 유키오(野口悠紀雄) 교수는 그의 저서 『금융완화로 일본은 파탄한다』에서 ‘이차원(異次元)적 금융완화는 문제해결을 뒤로 미루는 마약’이라며 경종을 울린다.

국내에서 국채 증발(增發)을 감당할 여력이 달리는 한국에서, 정부가 빚을 많이 내게 되면 외국인 대상 ‘국가’ 채무 증대로 직결된다. 국가채무 증대는 국내 소화능력의 한계를 단기간에 노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일본처럼 정책운영을 하라는 주문이 아니다. 또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상태도 아닌 상황에서 금융완화 정책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은 양적(가계 순자산 규모 및 외국인 국채 보유 비중), 질적(국민성)으로 국가 채무 속성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본은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버텼지만, 한국이 선불리 빚더미를 늘리다간 몇 년도 못 버티고 버거워할까 우려된다. **KPF**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OECD 공기업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박한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기업의 사내유보, 현금성자산 그리고 투자행태 추이와 시사점
김학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OECD 공기업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I. 서론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hanpark@kipf.re.kr)

어느 정부에서나 공공기관은 늘 가장 중요한 개혁의 대상이었다.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개혁과제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복대리(複代理)구조라는 지배구조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국민을 대신하여 공공기관을 관리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역시 새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속에서도 공공기관 혁신정책의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12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과제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평가체계를 확립하며, 지배구조 개선으로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내실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단계적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감사의 독립성 강화와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¹⁾ 과거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이 ‘성과주의’에 근거하였다면, 최근 공공성에 근거한 혁신은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업적 활동과 함께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양면적 존재가치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체계는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는 2005년 제안된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이하 OECD 가이드라인)’를 고려하여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시장의 감시기능이 존재하고, 수익창출을 원칙으로 운영되는 민간 기업과 달리 정부의 소유아래 기업적 활동과 함께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태생적인 특성으로 발생

* 본고는 박한준 외(2017) 「공공기관 신뢰와 조직효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과제수행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일부 결과 및 논의를 발췌하여 작성함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2015년 OECD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본법 기능을 담당하였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도 확대되었으며, 2017년 3월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10주년 심포지엄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혁신방향 점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를 위한 아이디어를 찾고, 고민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2015년 10월 말 진행된 제25차 OECD Working Party on State Ownership and Privatization Practices 정기회의에서 개정된 OECD 가이드라인(2015)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국제표준(global standards)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 OECD 가이드라인의 구조와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OECD 가이드라인의 정책지향과 구성

OECD 가이드라인의 2015년 개정서문은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강제(non-binding)적 표준이지만, 국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정부 소유 기업운영을 위한 좋은 지배구조(good governance)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좋은(good) 지배구조라고 언급한 것은 정부 소유라는 본질적인 속성과 공공기관에 존재되어 있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이라는 제약조건 아래에서는 효율적(efficient)인 지배구조를 명확하게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OECD 가이드라인은 경영활동과 사업수행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반영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적인 지배구조의 구성과 작동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즉, OECD 가이드라인은 절대적인 지배구조의 모범을 제시하기보다는 정부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소극적인 소유권 행사인지, 기관운영 과정에서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차단하고 책임성을 제고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자율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도전과제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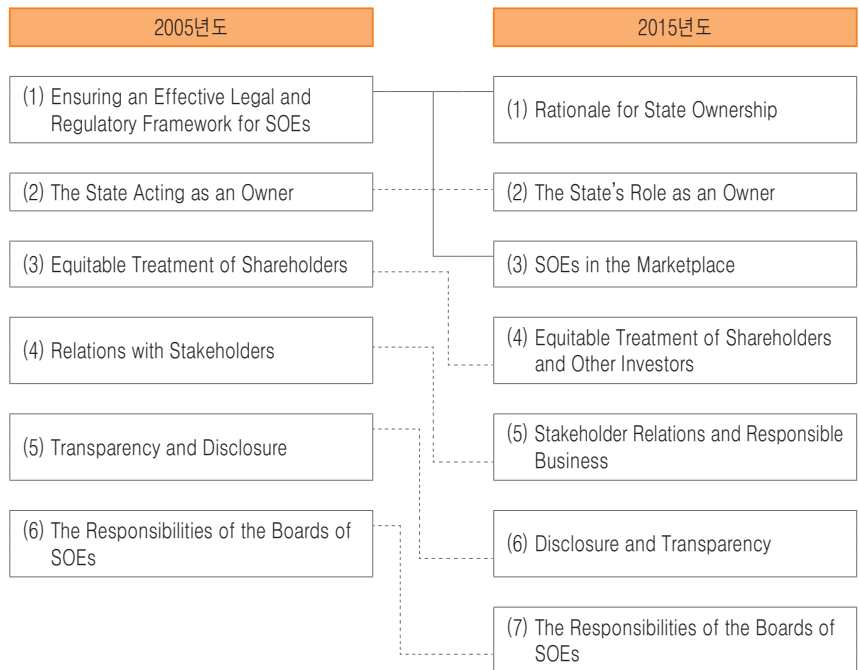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국제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 OECD 가이드라인의
구조와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http://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2017.11.19.\)](http://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2017.11.19.)) 참조

이렇게 공공기관
 운영책임이
 관리자, 이사회, 소유권자,
 정부부처, 의회 등
 다양한 계층구조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환경에서는
 자율과 책임, 투명성,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관리원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명확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첫째, 과도한 간섭이나 정치적 동기로 변색된 소유권 개입은 공기업의 운영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왜곡시키기 때문에, 책무성 저하와 효율성 손실로 인해 공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반대로 정부의 소극적이고 긴밀하지 않은 소유권 행사로 발생하는 감독부재 상황은 공기업과 내부 근로자들을 기관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도록 견인하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결국 내부자들의 사익추구 행태를 강화하는 점, 즉 복대리(複代理)문제를 함께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공기관 운영책임이 관리자, 이사회, 소유권자, 정부부처, 의회 등 다양한 계층구조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환경에서는 자율과 책임, 투명성,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관리원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표 1〉 개정 이후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구성 변화



출처: 저자 작성

2015년에 개정된 OECD 가이드라인은 2005년도 가이드라인에 비해 세분화되었다. 일단 그 구성을 살펴보면 (1) 국가소유권에 대한 근거, (2) 소유주로서 국가의 역할, (3) 시장에서의 공기업, (4) 주주 및 기타 투자자들에 대한 공평한 대우, (5) 주주관계와 책임경영, (6) 공시와 투명성, (7) 공기업 이사회회의 책임 등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 제3장까지는 공공기관 관리정책 및 제도의 목표와 방향, 사업 환경에 대한 거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제4장에서부터 제7장까지는 정책영역별 방법론을 구체화하고 있다. 개정 가이드라인의 전체적인 특징을 구성의 구조화 수준과 내용의 구체화 수준으로 나누어 비교할 수 있다. 먼저 구조적인 변화를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도에 총 6장으로 구성되었던 가이드라인이 2015년 개정과정에서 1장이 추가되어 총 7장으로 확대되었다. 과거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 수행 및 관리(소유)정책에 대한 법적·규제적 프레임 구축의 주요원칙을 설명하였던 가이드라인 1장의 논의를 국가소유권 정책프레임에 대한 논의와 경쟁중립성에 대한 논의로 세분하여 개정 가이드라인의 1장과 3장을 구성하였다(〈표 1〉 참고).

경쟁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별도의 장(章)으로 구성한 점은 2010년대 접어들면서 OECD를 중심으로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을 강조한 것이다. 즉, 주요내용을 독립적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17년 초 미국의 탈퇴선언으로 추진동력이 잃어버렸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의 협정서에서도 국영기업 장을 별도의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고, 차별적인 정부지원이나 법·제도적 특혜를 금지하였던 것은 경쟁중립성의 논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쟁중립성 논의가 가이드라인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집행효과가 국내적(domestic)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internationally) 네트워크 속에서도 파급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즉, 각국의 공기업 특혜나 자원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우려가 매우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 일반적인 수준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경쟁 환경의 공정성을 논의하였던 것이 국제통상협상을 통한 자유무역 네트워크화가 진행되면서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쟁점을 넘어서는 산업통상 분야의 정책어젠다로 확대되고 있는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개별 장의 주요내용은 후술하겠으나, 종합하면 공기업 국가소유의 정당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시장에서 공기업의 공정경쟁과 관련된 정책문제에 대한 관심이 10년 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 개정 가이드

경쟁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한 것은 2010년대 접어들면서 OECD를 중심으로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을 강조한 것이다. 즉, 주요내용을 별도의 장을 통해 독립적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개정 OECD 가이드라인 제1장에서는 국가별 공공기관 설립과 소유근거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설립 및 유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라인의 주요 특징이다.

III. 개정 OECD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개정 OECD 가이드라인 제1장(국가소유권에 대한 근거)에서는 국가별 공공기관 설립과 소유근거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설립 및 유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소유권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의 역할, 소유권 정책의 실행 방식, 이에 관련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도록 하고, 그 정당성이 유효한지를 주기적·반복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대중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점도 포함되었다.

〈표 2〉 OECD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제1장)

	제1장 국가소유권에 대한 근거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최종목표의 명확화(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한 사회가치 극대화) • 정부의 소유권 정책마련 • 적절한 절차를 통한 소유권정책 수립 • 공기업 소유권 근거 규정 및 소유근거의 정당성변화 주기적·반복적 검토 • 공공정책목표의 명시 및 공개

출처: 저자 작성

OECD 가이드라인 제2장(소유주로서 국가의 역할)은 소유주로서 국가는 공공기관 운영의 바탕이 되는 법적 형태를 간결하게 표준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상법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규범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운영에 대한 정부의 불합리·불투명한 정치적 개입금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효과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투명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 이외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성과주의 실현 의무, 그리고 공시정책 수립의무를 새롭게 포함시키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즉, 공공기관의 목표와 의무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소통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실행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공

시정책 수립도 공개적으로 권고함으로써 관리정책 기본원칙에 투명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공기업의 정부 소유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유권 행사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2장의 본질적 논의는 소유권 정책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점과, 공기업의 정부 소유 환경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부 소유의 정당성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제2장의 본질적 논의는 소유권 정책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점과, 공기업의 정부 소유 환경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부 소유의 정당성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표 3〉 OECD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제2장)

제2장 소유주체로서의 국가의 역할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형태 간결화 및 표준화 • 공기업 운영의 자율성 보장 • 이사회 임무수행을 위한 독립성 존중 • 소유권 행사실체의 명확화를 위한 단일소유권 주체 • 소유권 실체의 대의기관에 대한 책임

출처: 저자 작성

제3장(시장에서의 공기업)은 민간과 경쟁하는 시장에서 상업적 활동을 하는 공기업에 대한 특혜를 금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개정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독립적인 장으로 구성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과거 2005년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국가소유권과 시장규제, 산업정책의 분리를 통해 시장경쟁 왜곡금지를 선언하는 동시에, 비용 및 수익구조를 투명하게 공시하여 상업적 활동과 공공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사업활동을 분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정책목표를 추구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소요비용을 국가가 조달해야 하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새로운 특징이다.

제4장은 주주 및 기타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상장되어 있거나, 비정부 투자자가 소유주로 포함되어 있다면, 국가와 공공기관은 모든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며, 기관정보 등에 대한 동일한 접근권한 및 대우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표 4〉 OECD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제3장)

제3장 시장에서의 공기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의 소유권 기능과 시장규제기능의 구분 • 채권자, 경쟁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침해 시, 구제수단 마련 • 공공정책사업의 비용 및 수익구조의 높은 수준의 투명성 및 공시 • 공공정책 사업비용의 국가조달 및 공시 •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공기업은 일반법, 세법 및 규제의 동일적용 • 시장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공기업 차입 및 채권발행 • 공공조달의 절차적 공정성 · 투명성 확보

출처: 저자 작성

기존 OECD 가이드라인의 제3장이 확대·개정된 제4장(주주 및 기타 투자자들에 대한 공평한 대우)은 주주 및 기타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상장되어 있거나, 비정부 투자자가 소유주로 포함되어 있다면, 국가와 공공기관은 모든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며, 기관정보 등에 대한 동일한 접근권한 및 대우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국가가 지배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기관의 이익과 무관한 목표를 추구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와 공공기관, 공공기관 상호간의 거래는 시장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장여부를 떠나 국가의 기업지배구조 규범을 준수해야 함을 제4장에서 새롭게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에 공공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때에도 비정부 일반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합작투자, 민관협력 사업 계약에 대한 권리준수, 조정기재 도입, 효과적인 보상의무도 개정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었다.

〈표 5〉 OECD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제4장)

제4장 주주와 기타투자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 • 모든 주주와 소통 및 협의 활성화 • 이사선임과 같은 공기업의 핵심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 독려 • 모든 공기업(상장/비상장)은 기업지배구조 규범 준수 • 공공정책사업 추진 시, 非국가주주들에게 충분한 관련정보를 상시적 제공 • 합작투자 또는 민관협력사업 수행 시, 계약당사자의 권리 준수 및 객관적 분쟁해결

출처: 저자 작성

정치적 활동 지원 및 개입금지를 강조하고 있는 제5장(주주관계와 책임경영)도 더욱 강화 및 구체화되어 개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통해 국가와 공공기관은 일반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야 하며 환경, 근로자, 공중보건 및 안전, 인권 실현을 위한 책임경영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공의무가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공공기관이 정치적 활동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해준다. 즉, 정치캠페인이나 활동의 자금원으로 전락해서는 안되며, 여기에는 공공기관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사이의 거래형식으로 포장되는 활동도 포함됨을 밝히고 있다.

제5장에서는 국가와 공공기관은 일반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야 하며 환경, 근로자, 공중보건 및 안전, 인권 등을 고려한 책임경영을 실현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표 6〉 OECD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제5장)

	제5장 이해관계자와 관계 및 책임경영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소유권주체, 공기업은 법률 및 상호 합의로 수립된 이해관계자의 권리 존중 • 상장 또는 대형 공기업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에 대해 고도의 투명성 준수 • 공기업 이사회는 국제규범에 따라 내부통제, 윤리 및 준법감시프로그램을 실행,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 • 공기업은 책임경영 기준을 준수하며, 그 기준을 일반대중에게 공개 • 정치활동 자금조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방지 및 정치후원금 금지

출처: 저자 작성

제6장(공시와 투명성)에서는 공공기관의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성과 및 현황 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상장공기업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은 상장공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의 공시요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함을 새롭게 권고하였다. 주요 공시항목에는 재무현황 및 성과, 기업성과, 비재무적 정보, 임금정책,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지배구조 정책 및 기업지배구조 강령 준수 여부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사회와 주요 임원진에 대한 혜택 및 보수수준을 공개하며, 사직하거나 퇴직한 임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나 보수도 공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사회 이사의 자격과 선출과정과 관련된 정보투명성 강화도 개정내용에 포함시켰다.

제6장에서는
상장기업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은 상장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의
공시요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함을
새롭게 권고하였다.

〈표 7〉 OECD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제6장)

제6장 공시 및 투명성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공시기준에 따라 재무·비재무정보 보고 • 공기업 목표와 목표달성 여부 • 공공정책사업 관련 비용 및 자원조달 방법, 공기업 재무운영 성과 • 공기업의 지배구조, 소유구조, 및 의결권 구조 • 이사회 이사진 및 주요임원의 보수, 이사회 자격요건, 다양성 정책 등 • 국가의 재정적 지원(보증) • 독립적 외부 회계감사 • 연차보고서의 발간

출처: 저자 작성

제7장(공기업 이사회 책임)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전략적 지침과 모니터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주체가기도 한 이사회 전문성과 활동품질 제고를 위해 어떻게 이사회를 구성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우선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본인을 지명한 추천인이나 단체가 아닌 해당 공공기관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감사가 가능하도록 임명절차를 투명하게 구조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본 가이드라인은 이사회 건전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사회에 참여하는 공무원들도 다른 이사들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을 확인해 주고 있다. 특히, 행정 및 정치권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국가원수나 정부부처의 장관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이사회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만약 근로이사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인 근로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이사회 논의의 폭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근로이사는 다른 이사들과 동일한 임무와 책임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 정보, 교육 및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즉 이사회 운영의 효과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제(mechanisms) 개발을 강조하는 것이 제7장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표 8〉 OECD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제7장)

제7장 공기업 이사회의 책무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 • 이사회의 CEO 임명·해임권한, 공기업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보수수준 • 독립적·객관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이사회 구성하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이사들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명되며, 동일한 법적책임을 가짐 • 비상임이사는 이해관계 및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 함 • 근로이사제를 시행할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정보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다른 이사와 동일할 임무와 책임을 가짐 • 이사회 의장과 CEO 겸직금지 권고 • 이사회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연례평가 • 이사회 업무수행 보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권고 • 내부감사기능 수립

출처: 저자 작성

제7장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전략적 가이드와 모니터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주체로서 이사회의 전문성과 활동품질 제고를 위한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OECD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공기업 설립·존립의 정당성에 대한 주기적·반복적인 검토를 통해 공기업의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공기업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정부 소유권 기능의 건전한 행사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해 사회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사전적·과정적 측면에서는 공기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후적으로는 성과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있다. 공기업 관리와 관련된 주요쟁점을 명문화하고, 전(全) 관리과정을 공개하여 사회적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OECD 가이드라인의 구성논리와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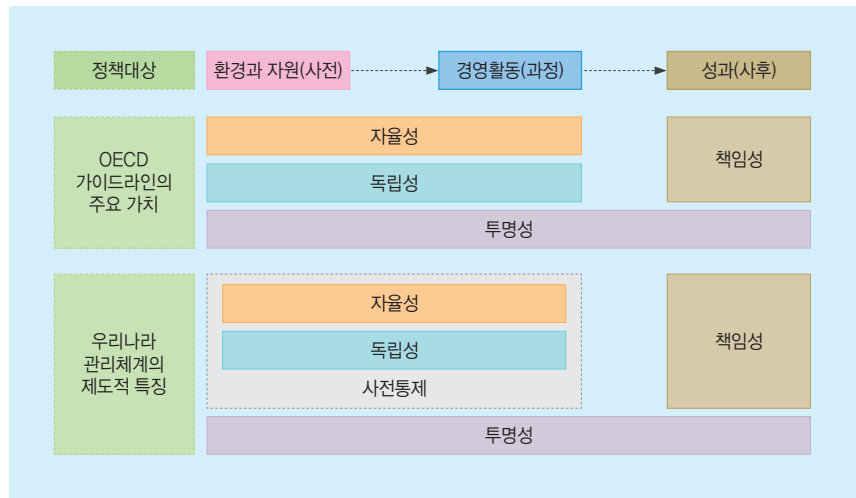
IV.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관리체계

우리나라 공공기관 정책과 제도 관련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은 2005년 발표된 OECD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공운법에서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경영감독기능을 일원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부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활동의 투명성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경영공시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임원 임면권한의 중심축을 주무부처로부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전환하였으며, 이사

우리나라 공공기관 운영체계의 주요 특징은 사전·과정적 측면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환경 및 투입자원에 대한 사전적 통제기능을 함께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회에 기관장·상임이사 해임건의권을 부여하여 제도적으로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제도와 운영은 OECD 가이드라인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림 1] OECD 가이드라인 vs. 공공기관 제도 및 운영현황 비교



출처: 저자 작성

OECD 가이드라인이 공기업 관리체계의 제도적 구성과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주요 내용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 운영체계는 사전·과정적 측면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면서, 동시에 환경 및 투입자원에 대한 사전적 통제기능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조직팽창과 방만한 예산운영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액인건비제도, 증원심사제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력규모와 예산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 일례다. 사전적으로 투입자원의 수준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자율경영과 다소 상충적일 우려가 있다. 즉, 사전적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후적 평가를 통해 책임을 부과하는 OECD 가이드라인의 접근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OECD가 공기업가이드라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공기업의 범위보다 우리나라 공운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더욱 포괄적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 상업적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을 하는 기관들 이외에 정책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하

는 기관들을 포함하여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9〉 공공기관 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단위: 점)

구분	총액인건비	증원심사	경영실적평가	기능조정	경영공시
자율경영 강화	3.2	3.3	3.1	3.8	4.3
책임경영 강화	3.6	3.8	3.8	4.2	5.0

주: 점수값: 7점 리커트 척도의 응답값에 따라 1-7점으로 변환하였으며, 1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7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4점 보통)

출처: 저자 작성

공운법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관리정책·제도의 성과 및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책방향 및 제도개선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실무자²⁾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³⁾에서는 기존 공공기관 관리제도들이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강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도와 증원심사와 같은 사전적 자원 통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평가점수가 최고 점수인 7점 대비 평균 3.2점 내지 3.3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적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보상과 책임을 묻는 경영실적평가제도에 대해서는 평균 3.1점의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즉, 공운법이 지향하는 자율경영 강화와 관리제도의 기능이 상충적으로 작동하면서 관련제도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정책이나 제도에 비해 응답자들이 경영공시제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별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기존 공공기관 관리제도들이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강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2) 정부정책 및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대상기관 중심적인 편파적 평가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설문결과와 신뢰성에 대해 지적도 가능하다. 1차적으로 정책과 제도에 대한 평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책대상 집단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기관 실무담당자들의 인식수준을 조사하는 것이 의미를 가진다.
- 3) 공공기관 관리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2017.9.); 기획재정부 주관 경영실적평가대상 119개 기관의 평가지표별 담당직원 1,7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610명이 응답하였다(응답률: 34.4%).

설문조사 결과
총액인건비제도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강화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모두 부정적 평가의
비중이 높았다.

〈표 10〉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부정적	보통	긍정적
자율경영 강화에 기여	58.7	20.3	21.0
책임경영 강화에 기여	48.7	19.8	31.5

출처: 저자 작성

총액인건비제도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강화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모두 부정적 평가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자율경영 기여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21.0%) 응답자 비중보다 부정적(58.7%) 응답자 비중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1〉 증원심사제도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부정적	보통	긍정적
자율경영 강화에 기여	59.5	17.4	23.1
책임경영 강화에 기여	43.8	21.1	35.1

출처: 저자 작성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강화에 증원심사제도가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역시 모두 부정적 평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앞선 질문과 마찬가지로 자율경영 기여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23.1%) 응답자 비중보다 부정적(59.5%) 응답자 비중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기 2개의 개별 질문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긍정적 의견의 비중이 유사하다는 점은 인력규모와 인건비가 단절된 이슈가 아닌 상호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표 12〉 경영실적평가제도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부정적	보통	긍정적
자율경영 강화에 기여	63.0	18.0	19.0
책임경영 강화에 기여	42.8	19.8	37.4

출처: 저자 작성

자율적인 자원 운영과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환경의 확보가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실현의 전제조건임을 시사해 준다.

앞서 살펴본 관리제도와는 달리 경영공시제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상당수 응답자들이 공시제도가 기관의 자율경영(43.6%)과 책임경영(66.7%)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66.7%가 책임경영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책임성 확보에 효과적인 접근방식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본고에서 살펴본 대부분 제도들에 대해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점은 경영실적평가제도가 자율경영 강화에 가장 부정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며, 경영공시제도가 책임경영 강화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평가된다는 점이다. 종합하면, 본 설문결과는 자율적인 자원(resource) 운영과 의사결정(decision)이 가능한 경영환경의 확보가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실현의 전제조건임을 시사해 준다.

V. 쟁점 및 시사점

서론에서 언급하고,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개정된 OECD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은 공기업 운영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여 자율 및 책임경영 환경을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혁신 방향과 과제들을 발굴할 수 있겠으나, 다음과 같은 쟁점들에 대해 우선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첫 번째, 현재 2007년 제정된 공운법 체계도 OECD 가이드라인의 주요방향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려고 하였으나, 실무자 관점에서는 공공기관 관리제도가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평가가 관리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근거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으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개별 제도들 간의 중복이나 상충 여부, 특정 제도와 적용대상과의 정합성 여부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관리정책의 기본취지를 제도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현상과 쟁점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공하는 탄력정원

제 도입이 시도되고 있으나, 총액인건비제도나 증원심사제도가 방만한 기관운영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실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 제도 모두 방만 경영을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기관에 따라서는 중복규제와 사전규제로 자율경영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공공기관 자율경영 강화에 대한 인센티브와 정부의 사전통제가 형성하는 상충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제도의 정당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 적용대상의 타당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 현장에서 자율성 보장이 강화되어야 하는 기관과 사전적 통제의 실익이 큰 기관을 구분하여 차별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OECD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되는 공기업 범주에 우리나라 공공기관 가운데 과연 어느 정도가 포함될지 고민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현재 정책목적에 따른 기관유형 지정·분류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기관들의 특수성과 다양성에 비해 획일적인 정책과 제도를 적용하는 통합적 관리프레임을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운법을 제정하기 이전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구분하고 기본법을 달리하여 관리하였던 과거의 경험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제도개선의 중심에 있는 경영실적평가의 환경과 가치에 대한 고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는 기본적으로 인력과 같은 자원(resources)의 투입과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환경에서 사후적 성과를 측정하여야 실제 평가제도의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관리제도 및 정책상의 내재적 한계가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사회형평적 채용의무를 확대하면서 기관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제도와 제도, 또는 제도와 운영환경이 상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과 한계를 조정하는 것도 제도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사회적 가치가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실현의지를 유인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실현노력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회적 가치와 공

**본질적으로는
현재 정책목적에
다른 기관유형
지정·분류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기관들의 특수성과
다양성에 비해 획일적인
정책과 제도를 적용하는
통합적 관리프레임을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다양한 기관들을 하나의 정책과 제도 틀로써 관리하는 것은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책임성을 실현하는 해법이 되기 힘들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기관과 자율경영이 필요한 기관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공성 실현수준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측정하여 대내외적인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즉, 제도의 기본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확보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도 제도의 실효성과 피평가기관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넷째,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정부정책 이행수준(공공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면서 수익성과 효율성(기업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평가목적과 방향의 모호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기업성과 공공성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하는지, 기업성과 공공성을 분리하여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도 공운법 개정과정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다.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일한 평가체계를 통해 종합하여 평가하는 경우, 기업성 지표와 공공성 지표 중 특점이 용이한 지표에 집중하고, 특점이 어려운 지표는 적당히 대응하는 전략적 선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상충적 또는 경쟁적 가치를 동일한 평가체계를 통해 경영실적으로 포괄하여 측정할 경우, 특정 가치실현을 위해 투자한 기관들의 자원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평가기관의 전략적 행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일괄적·통합적인 평가보다는 핵심가치별로 평가체계를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도 다양한 정책가치 실현과 제도운영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관련 쟁점들을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를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공공기관 혁신은 기관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환경이 조성될 때 가능하다. 다수의 다양한 기관들을 하나의 정책과 제도 틀로써 관리하는 것은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책임성을 실현하는 해법이 되기 힘들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기관과 자율경영이 필요한 기관을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한준 외, 『공공기관 신뢰와 조직효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직무몰입과 만족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_____, 『OECD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 2015 개정판(한국어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유민수,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성과 개선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기업법연구』, 24(2), 2010.
- 이상철, 『한국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서울, 2006.
- 조택,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 2007.
- 한상일, 「한국 공공기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지배구조」, 『한국조직학회보』, 7(1), 2010.
- OECD,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15 Edition, OECD Publishing, Paris, 2015.
- Varouj A, Aivazian et al., “Can Corporatization Improve the Perform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even without Privatization?,”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11(5), 2005.
- World Bank,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A Toolkit*,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2014.

기업의 사내유보, 현금성자산 그리고 투자행태 추이와 시사점

I. 서론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hagskim@kipf.re.kr)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투자의 확대는 새로운 이익실현을 위한 기업가정신의 발현이기 때문에 활력이 넘치고 성장가능성이 큰 경제가 보이는 전형적 특징 중 하나가 투자 증가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성숙됨에 따라 투자증가율은 정체 또는 둔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둔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및 경제 활력이 더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금이라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가들이 보다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보다 많은 이익실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거시경제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금융위기 이후 사내유보금 증가추이만을 가지고 투자 여력이 풍부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규모 기업들이 이익을 사내에 유보해두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오해와 함께 2015년부터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25% 최고세율 구간 신설과 함께 기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강화됐다.¹⁾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사회는 대기업들의 사내유보 증가와 투자 사이에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했다. ‘대기업들의 사내유보 증가’가 곧 ‘투자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미환류법인소득세제를 도입하고 2009년 법인세율 인하를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책에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정부가 투자 촉진을 위해서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당근을 제시했으나 2015년부터는 추가과세라는 채찍을 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사내유보의 증가는 투자를 하고 이익

이 발생하는 기업에서 관측되는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성자산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오해는 바로 잡아야 한다.

사내유보는 기본적으로 이익잉여금의 누적된 결과지만 이미 투자된 자산의 자산재평가액과 같은 잉여금에 의해서도 증가된다. 기존에 투자한 자산들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경우 기존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사내유보의 증감으로 반영된다. 자산평가법에 따른 자산재평가의 결과는 평가 시점의 기업 투자 변화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또한 한 기업의 순이익을 전부 설비투자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면 재무상태표의 대변 항목인 부채와 납입자본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은 차변의 자산증가액인 투자금액만큼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내유보금의 변화가 투자의 변화와 역의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가질 어떠한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처럼 논리적으로 부적절한 오해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소득 환류를 위해 2015년 도입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정책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본금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기업소득 환류의 정책대상을 수익성을 확보한 대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소득의 환류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중소기업이 과연 투자여력이 전혀 없거나 충분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검토한 연구결과도 찾아보기 어렵다.

김학수(2017)에 따르면, 「법인세법」이 최초로 도입된 1949년 일반법인의 법인세율은 35%의 단일세율이었다. 당시 함께 도입된 소득세제의 세율 구조는 65%의 최고세율을 가진 17단계 초과누진구조였다는 점은 거의 70년 전에도 법인과 자연인을 구분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법인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고 이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도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자연인처럼 누진과세의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인식하고, 여기에 덧붙여 일부에서는 법인세율 누진구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일부 소수의 대기업에 적용될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하에서 중소기업에는 관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대기업에는 보다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방향이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이 설립 이후 보다 큰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보다 많은
이익실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는 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기업소득의 일정비율 이상 투자, 임금, 배당 및 상생협력 등의 형태로 환류되지 않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로써 2015년부터 시행됐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류대상에 투자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으며, 2년 통산이 허용되어 초과환류되었거나 미환류분은 다음 연도의 환류대상 기업 소득에서 차감되거나 가산된다. 이러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제는 기업들의 부담만을 확대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환류대상에서 배당을 제외하고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형태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개편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두 제도의 정책대상자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본금 500억원 이상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들로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사내유보 및 기업보유 현금성 자산의 추이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본다. 그리고 기업규모별 투자 행태와 기업보유 현금성자산의 추이를 비교하며 과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정책대상자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고 보다 나은 재화와 용역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면서 경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 조세정책방향은 기업의 성장을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투자를 촉진해야 하는 정책대상이 일부 대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제도로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사내유보 및 기업보유 현금성자산의 추이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본다. 그리고 기업규모별 투자 행태와 기업보유 현금성자산의 추이를 비교하며 과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정책대상자에서 중소기업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사내유보 및 현금성자산의 추이

1. 사용자료

사내유보금은 재무상태표상의 대변항목인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이익 중에서 주주 배당, 임원상여금, 세금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내에 저장되어 있는 누적액을 사내유보라 부른다. 한편 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 차변자산을 구성하는 한 유형으로서 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투자증권, 단기금융상품, 단기대여금의 합계다.²⁾ 이러한 사내유보금과 현금성자산의 구성 변수들의 자료는 NICE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KISVALUE DB에서 찾을 수 있다.

2000~2016년 사업연도 기간의 외부감사대상 기업에 대해 KISVALUE에서 찾을 수 있는 총 273,361개의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사내유보와 현금성자산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³⁾ DB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의미한 기업재무자료는 2000년 10,349개에서 2016년 22,176개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자료에 포함된 연도별 기업 수는 연평균 4.9%씩 증가한 결과다. 이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범위 확대, 법인 수 증가 등에 의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수입금액 규모별 기업의 매출액 대비 사내유보금과 현금성자산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 중 단기대여금과 단기투자증권은 비금융업 법인들의 재무제표에서 찾을 수 있는 항목이고 단기투자증권은 키스밸류 비금융업 항목의 변수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기타 단기투자증권의 합이다. 현금 및 현금등가물과 단기금융상품은 모든 업종의 공통항목이다.

3) 자료내에 포함된 연도별 기업 수 및 기업규모별 업체 수는 앞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1〉 연도별 관측치(기업 수)

(단위: 개, %)

연도	전체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2000	10,349	(3.7)	2,413	(4.2)	7,936	(3.6)
2001	11,251	(4.0)	2,569	(4.5)	8,682	(3.9)
2002	12,144	(4.3)	2,694	(4.7)	9,450	(4.2)
2003	12,749	(4.6)	2,789	(4.9)	9,960	(4.5)
2004	13,240	(4.7)	2,897	(5.1)	10,343	(4.6)
2005	13,763	(4.9)	3,012	(5.3)	10,751	(4.8)
2006	14,554	(5.2)	3,139	(5.5)	11,415	(5.1)
2007	15,332	(5.5)	3,257	(5.7)	12,075	(5.4)
2008	16,042	(5.7)	3,380	(5.9)	12,662	(5.7)
2009	16,724	(6.0)	3,518	(6.2)	13,206	(5.9)
2010	17,731	(6.3)	3,668	(6.4)	14,063	(6.3)
2011	18,804	(6.7)	3,799	(6.7)	15,005	(6.7)
2012	19,881	(7.1)	3,893	(6.8)	15,988	(7.2)
2013	20,891	(7.5)	3,973	(7.0)	16,918	(7.6)
2014	22,009	(7.9)	4,018	(7.0)	17,991	(8.1)
2015	22,273	(8.0)	4,030	(7.1)	18,243	(8.2)
2016	22,176	(7.9)	3,990	(7.0)	18,186	(8.2)
합계	279,913	(100.0)	57,039	(100.0)	222,874	(100.0)

출처: NICE평가정보 KISVALUE

수입금액 규모별
기업의 매출액 대비
사내유보금과 현금성자산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사내유보금과 현금성자산의 추이

가. 사내유보금 추이

2000년 표본 내 전체 기업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189조원이었으나, 연평균 14.3%씩 증가하여 2016년 표본 내 전체 기업의 1,590조원 수준으로 파악되며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절대적으로 크지만 증가속도에서는 중소기업보다 소폭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⁴⁾ 대기업의 경우 연평균 14.1%의 증가세로 2000년 168조원 수준의 사내유보금이 2016년 1,397조원 수준으로 확대되어 자료에 포함된 대기업 수는 2000년 2,413개에서 2016년 3,990개 수준으로 약 1.7배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00년 20조원 수준이던 사내유보금이 연평균 15.1%씩 성장하여 2016년 1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포

4) 여기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법정 구분으로서 대기업은 중소기업 이외의 모든 기업을 포함한다.

**대기업 평균 사내유보금
연평균 증가율은
2009년 이후 7.4%,
2012년 이후 4.9%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평균 사내유보금은
2009년 이후 대기업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합된 중소기업 수는 2000년 7,936개에서 2016년 18,186개로 약 2.3배 증가했다. 이는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대기업만의 특징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본 내 2016년 사내유보금 총액을 구성한 기업 수가 2000년 비해 두 배 정도 크므로 총액을 구성하는 기업 수 증가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기업 수 증가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연도별 표본에 포함된 기업당 평균 사내유보금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평균 184억원 수준의 사내유보금은 연평균 9.2%씩 증가해서 2016년 평균 758억원으로 2000년 대비 4.1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 경우 대기업의 증가세가 중소기업 증가세보다 소폭 높게 나타난다. 2000년 대기업 평균 사내유보금은 698억원 수준으로 이후 연평균 10.6%씩 증가하며 2016년 평균 3,517억원으로 2000년 대비 5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대기업 평균 사내유보금 연평균 증가율은 2009년 이후 7.4%, 2012년 이후 4.9%로 크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중소기업 평균 사내유보 규모는 26억원 수준이었으나 이후 연평균 9.3%씩 증가하여 2016년 평균 106억원 수준으로 2000년 대비 4.2배로 확대됐다. 또한 중소기업 평균 사내유보금은 2009년 이후 대기업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2009년 이후 연평균 8.7%, 2012년 이후 연평균 10.2%의 증가율을 보이며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매출액 대비 사내유보금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기업의 경우 2000년 23.6%에서 2016년 58.1%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증가는 주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의 매출액 대비 비율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2000년 24%였던 매출액 대비 사내유보금 비율이 연도별 등락 속에 2016년 61.9%로 확대됐으나 중소기업은 2000년 20%에서 2016년 36.9%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내유보금의 상당 부분이 기투자규모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출액 대비 기업의 투자가 대기업에 의해서 주도됐음을 시사한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관측결과는 사내유보금을 투자의 지표로 고려할 경우 투자 확대를 도모해야 하는 정책대상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대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 전체의 투자 규모 베이스를 이루고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투자축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투자·상생협력축진제도가 효과적이라면, 자본금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그 제도의 정책대상자로 삼아야 한다.⁵⁾

5) 비록 절대규모 면에서 대기업의 현금성자산 보유액이 크지만 중소기업의 사내유보금 대비 현금성자산의 비율이 대기업보다 더 높고 중소기업 매출액 대비 현금성자산의 비율도 소폭 높게 나타난다. 특히 이후에서 살펴볼 매출액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과 사내유보금 대비 현금성자산의 비율의 추이는 대기업의 투자 촉진과 함께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의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기업의 투자 촉진과 함께 중소기업의 투자 확대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구조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기업규모별 사내유보금 추이

(단위: 조원, 십억원, %, 배)

연도	표본 내 전체 사내유보금(조원)			기업당 평균 사내유보금(십억원)			매출액 대비 사내유보금 비율(%)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2000	189	168	20	18.4	69.8	2.6	23.6	24.0	20.0	
2001	198	175	23	17.8	68.3	2.6	22.4	22.6	20.2	
2002	238	210	28	19.8	78.1	2.9	25.7	26.3	21.1	
2003	311	277	34	24.6	99.3	3.4	30.9	32.2	22.8	
2004	367	326	41	28.0	112.7	3.9	31.1	32.5	23.3	
2005	459	410	49	33.6	136.0	4.6	36.5	38.5	25.8	
2006	555	497	57	38.3	158.5	5.0	40.2	42.7	27.3	
2007	679	612	67	44.5	188.0	5.5	43.2	46.2	27.8	
2008	750	679	71	47.0	201.0	5.6	35.6	37.3	25.9	
2009	826	748	78	49.7	212.7	5.9	40.1	42.2	27.9	
2010	956	865	91	54.2	235.9	6.5	41.5	44.1	27.5	
2011	1,105	1,002	103	59.1	263.8	6.9	43.1	46.1	27.3	
2012	1,245	1,130	115	63.0	290.3	7.2	45.9	49.3	28.7	
2013	1,332	1,203	129	64.1	302.8	7.7	48.8	52.9	29.9	
2014	1,434	1,286	147	65.5	320.2	8.2	50.7	55.0	31.6	
2015	1,550	1,380	170	69.9	342.5	9.3	55.1	59.8	34.4	
2016	1,590	1,397	193	75.8	351.7	10.6	58.1	61.9	36.9	
비교 가	전체기간	14.3	14.1	15.1	9.2	10.6	9.3	-	-	-
	'09~'16	9.8	9.3	13.8	6.2	7.4	8.7	-	-	-
	'12~'16	6.3	5.5	13.8	4.7	4.9	10.2	-	-	-
2000년 대비 2016년 배율	8.4	8.3	9.5	4.1	5.0	4.2	2.5	2.6	1.8	

출처: NICE평가정보 KISVALUE

나. 현금성자산 추이

재무상태표 차변의 자산 구성항목은 크게 각 유형의 실물자산과 현금성자산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당기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성자산을 재원으로 실물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즉 투자를 하는 경우, 차변의 구성항목은 변하더라도 재무상태표의 대변 항목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 현금성자산은 사내유보일 수도 전기에 조달한 부채일 수도 있다. 어떻게 조달하였든 실물투자에 쓰인 현금성자산의 축소만큼 자산계정에 실물자산가액이 늘어나므로 자산총계에 변화를 주지 않고 대변항목들인 부채, 자본, 사내유보에 변동이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투

**기업규모 대비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과거 추이와
비교를 통해
현재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들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자 증가가 사내유보 금액의 축소를 가져오지 않는다. 또한 순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해당연도의 순이익 전부를 실물자산 구입에 사용한다면, 전기말까지 누적된 현금성자산에는 변화가 없고 실물자산이 당기순이익의 전부만큼 증가하게 되고 차변의 증가분만큼, 즉 당기순이익의 증가분만큼 대변의 이익잉여금 증가에 따른 사내유보가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투자가 증가하면서 사내유보도 증가하게 되며 두 변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의 증가로 사내유보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투자 증가는 현금성자산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사내유보금액의 축소를 가져올 수 없다. 사내유보금액의 축소는 당기순이익을 넘어서는 배당 또는 과도한 임금 증가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순손실 발생 등에 의해서 초래된다. 결과적으로 투자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는 변수는 기업의 현금성자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재원을 조달하거나 외부차입을 통해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투자규모만큼 자본 또는 부채가 증가하여 사내유보금의 규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투자를 수행하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현금성자산은 늘어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사내유보금은 수익성 개선과 투자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사내유보금 전체가 기업의 투자가용 재원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은 이미 투자되었거나 투자가 진행 중인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투자여력을 가늠하는 지표로는 부적절하다. 기업들의 투자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자산의 보유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자산의 규모는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등 기업의 다양한 필요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서 기업이 보유하는 현금성자산 규모는 업태, 기업규모, 기업의 장기 계획 등 개별기업의 특수성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특정한 수준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략적으로 기업규모 대비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과거 추이와 비교를 통해 현재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들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여기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현금성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태가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 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 기업의 현금성자산 규모는 2000년 127조원 수준에서 2016년 575조원

으로 연평균 9.8%씩 성장하여 2016년 기업보유 현금성자산 규모는 2000년 대비 4.5배 확대됐으며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중소기업 보유 현금성자산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00년 113조원 규모의 대기업 보유 현금성자산은 연평균 9.2%씩 증가하여 2016년 463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2000년 대비 4.1배 확대된 규모다. 중소기업의 경우 2000년 14조원 수준이던 현금성자산이 2016년 112조원으로 연평균 13.7% 증가했으며 2000년 대비 7.8배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총계수준의 추이분석은 표본에 포함된 기업 수 증가효과를 함께 포괄하고 있으므로 기업당 평균 추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당 평균 현금성자산 추이도 앞에서 살펴본 총계수준의 추이분석과 정성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연평균 증가율과 배율의 수준은 다소 낮게 추정된다. 기업당 평균 현금성자산 규모는 2000년 123억원 수준에서 2016년 261억원 수준으로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4.8% 수준으로 표본에 포함된 기업 수를 고려하기 이전보다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2000년 기업당 평균 468억원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했으나 연평균 5.9%씩 증가하여 2016년 1,166억원으로 2000년 대비 2.5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보유 현금성자산 규모는 기업당 평균 2000년 18억원에서 2016년 61억원으로 연평균 7.9%씩 증가하여 대기업 평균 현금성자산 증가율보다 높았으며 2000년 대비 3.4배 증가하였는데 현금성자산 증가율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연평균 2%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 수 증가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여 기업규모별 현금성자산 보유 추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살펴본 전체 총계의 기간 평균 증가율과 2000년 대비 배율보다는 낮은 수준의 기업평균 현금성자산의 기간 평균 증가율과 2000년 대비 배율이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금성자산이 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는 기존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9~2016년의 기간 동안 중소기업 평균 현금성자산 증가율은 6.9%이었으나 2012~2016년의 기간 동안 중소기업 평균 현금성자산 증가율은 9% 수준으로 이전 기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 평균 현금성자산 보유금액의 증가율이 대기업의 평균 현금성자산 보유금액 증가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2012년 이후 기업들은 이전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보유 현금성자산 증가속도가 더욱 빠르게 나타났다.

**2012년 이후 기업들은
이전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보유
현금성자산 증가속도가
더욱 빠르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현금성자산을
투자나 여타 긍정적
외부효과가 기대되는
행위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전체 기업 매출액 대비 현금성자산의 평균 비율은 2000년 15.8%에서 2016년 20%로 1.3배 증가했으며 대기업의 평균 비율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2000년 전체 평균을 하회했으나 2005년 이후 대기업의 평균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현금성자산의 비율은 2000년 16.1%에서 2016년 19.7%로 1.2배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현금성자산의 비율은 2000년 14.2%에서 2016년 21.7%로 1.5배 증가했다. 특히 2005년 이후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현금성자산의 비율이 추세적으로 확대되며 대기업의 비율보다 높은 수준을 시현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은 2012년 중소기업 17.4%, 대기업 14.4%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 차이는 3%포인트까지 확대되기도 했으나 이후 소폭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며 2016년 중소기업 매출액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은 21.7% 수준으로 대기업의 비율보다 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매출액 대비 중소기업의 현금성자산 보유액 비율이 대기업의 경우보다 높다는 점은 중소기업들도 일정수준 투자여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책입안자의 관점에서 대기업의 투자확대 유도과 함께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112조원 규모의 현금성자산의 일부를 투자 등 경제적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보다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에서 살펴보듯이, 중소기업의 사내유보금 대비 현금성자산의 비율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줄곧 60% 안팎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은 2000년 이후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31.4%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수익성을 확보한 대기업들이 재투자를 통해 사내유보금은 증가했으나 현금성자산 증가세는 사내유보금 증가세보다 낮게 유지되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이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금성자산 증가세와 사내유보금 증가세가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어 사내유보금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이 추세적으로 60% 수준에서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일정수준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중소기업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현금성자산을 투자나 여타 긍정적 외부효과가 기대되는 행위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세는 과거보다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지

만 2009년 이후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세 둔화 및 2012년 이후 감소세 전환과 비교했을 때 대기업보다는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세계 경기 여건 개선에 따라 대기업의 수출 실적 개선을 통한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중소기업 매출의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적극적 투자 확대를 위해 사내에 저장되어 있는 현금성자산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인해야 한다.

〈표 3〉 기업규모별 현금성자산 추이

(단위: 조원, 십억원, %,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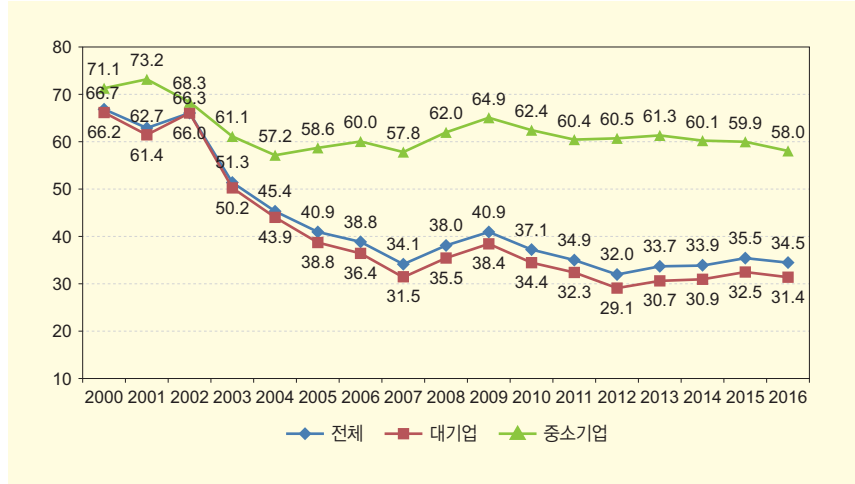
연도	현금성자산(조원)			기업당 평균 현금성자산(십억원)			매출액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2000	127	113	14	12.3	46.8	1.8	15.8	16.1	14.2	
2001	126	109	17	11.2	42.4	1.9	14.1	14.1	14.8	
2002	160	140	19	13.1	52.2	2.0	17.0	17.6	14.4	
2003	161	140	21	12.6	50.2	2.1	15.8	16.3	14.0	
2004	168	145	23	12.7	49.9	2.3	14.1	14.4	13.3	
2005	189	160	29	13.7	53.1	2.7	14.9	15.0	15.1	
2006	217	182	34	14.9	58.0	3.0	15.6	15.6	16.4	
2007	233	194	38	15.2	59.6	3.2	14.7	14.6	16.1	
2008	286	242	44	17.8	71.5	3.5	13.5	13.3	16.1	
2009	340	289	51	20.3	82.1	3.8	16.4	16.3	18.1	
2010	356	299	57	20.1	81.6	4.1	15.4	15.3	17.1	
2011	388	326	62	20.7	85.8	4.2	15.1	15.0	16.5	
2012	400	330	70	20.1	84.9	4.4	14.7	14.4	17.4	
2013	451	371	79	21.6	93.5	4.7	16.4	16.3	18.3	
2014	489	400	89	22.2	99.6	4.9	17.2	17.1	19.0	
2015	552	450	102	24.8	111.7	5.6	19.3	19.2	20.6	
2016	575	463	112	26.1	116.6	6.1	20.0	19.7	21.7	
비 가 비	전체기간	9.9	9.2	13.7	4.8	5.9	7.9	-	-	-
	'09~'16	7.8	7.0	11.9	3.7	5.1	6.9	-	-	-
	'12~'16	9.5	8.8	12.5	6.7	8.3	9.0	-	-	-
2000년 대비 2016년 배율	4.5	4.1	7.8	2.1	2.5	3.4	1.3	1.3	1.5	

출처: NICE평가정보 KISVALUE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기업들이 현금성자산을
선호한다는 분석결과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외부재원을 조달하는 데
제약이 크다는 사실에
기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내에 저장된
투자여력을 살피는 변수로는
사내유보금이 아닌
현금성자산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기업규모별 사내유보금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 추이

(단위: %)



출처: NICE평가정보 KISVALUE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기업들이 현금성자산을 선호하는 양상은 우리나라의 특징만은 아니다. Graham and Leary(2017)는 미국 기업들의 현금보유 성향을 1920년 이후 거의 100년의 기간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1980년 이후 평균 현금성자산의 보유성향은 신생기업들의 증가에 기인하고 기존 기업들의 성향은 그대로이거나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Brown and Petersen(2011)은 1970~2006년의 기간 동안 상장된 미국 제조업 영위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규모가 작고 신생기업일수록 연구개발투자의 변동성 축소를 위해서 보다 높은 현금성자산 보유 성향을 갖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Martinez-Carrascal(2010)은 1997~2005년의 기업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유럽 국가들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보다 예비적 동기(pre-cautionary causes)에 의해서 보다 큰 현금성자산 보유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외부재원을 조달하는 데 제약이 크다는 사실에 기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내에 저장된 투자여력을 살피는 변수로는 사내유보금이 아닌 현금성자산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설비투자 재원별 비중을 기업규모별로 발표하고 있는 산업은행(2016, 2017)의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2016년 중소기업 설비투자의 재

원 중 내부자금으로 조달된 비중은 37%에 불과하고 2017년에도 38.1%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내부자금을 재원으로 설비투자를 수행하는 비중은 2016년 68.7%와 2017년 74.2%로 나타나서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오히려 중소기업들보다 더 큰 비율로 내부자금을 의존하여 설비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60%를 상회하는 투자재원을 외부자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주식이나 회사채와 같은 직접금융보다는 대부분 금융채무와 같은 간접금융으로 전체 외부자금의 90% 이상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사내에 저장해 놓은 2016년 기준 112조원에 달하는 현금성자산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부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⁶⁾

중소기업들의 경우 60%를 상회하는 투자재원을 외부자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주식이나 회사채와 같은 직접금융보다는 대부분 금융채무와 같은 간접금융으로 전체 외부자금의 90% 이상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Ⅲ. 기업규모별 현금성자산과 투자 행태 비교

1. 사용자료

앞에서 기업의 투자여력을 살펴보는 지표로서 현금성자산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기업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기업의 투자 행태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고 현금성자산의 추이와 투자행태를 비교하고자 한다. 기업재무제표상에서 기업의 투자 행태를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변수는 현금흐름표에서 찾을 수 있는 각종 자산 항목에 대한 현금유출액이다. 그러나 각 자산항목별 현금유출액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현금흐름표상 자산유형별 현금유출액은 중고자산에 대한 현금유출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민계정상 총고정자본형성의 개념과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계정상 총고정자본형성은 신규 자산에 대한 투자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제시될 기업의 현금흐름표상 다양한 자산 유형별 현금유출액은 국민계정상 총고정자본형성과 직접 비교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

그러나 국민계정의 민간부문 설비투자 규모는 현금흐름표상 설비투자 규모보다 작게 나타나지만 증가율 추이는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서 현금흐름표상 자산항목에 대한 현금유출액 증가율은 기업의 투자행태를 나타내는 대용변수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표와 그림을 살펴보면,

6)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2017년 25.2조원의 설비투자를 집행했고 대기업은 169.8조원의 설비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연구개발투자와 토지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설비투자 정의를 따르는 본 연구의 설비투자와는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설비투자 금액 중에서 내부자금 비율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경우에 훨씬 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계정의 설비투자
 민간부문 설비투자의
 2015년 증가율도
 2010년 증가율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며
 현금흐름표를 이용하여
 추계한 설비투자 증가율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2012~2014년과 2016년을 제외한 다른 연도의 현금흐름표상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는 국민계정의 설비투자(정부포함) 및 민간부문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금흐름표상 설비투자는 중고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규모는 국민계정상 설비투자 지표들보다 10~19% 정도 큰 편이나 증가율 추이는 유사하다. 특히, 국민계정의 설비투자와 민간부문 설비투자의 2015년 증가율도 2010년 증가율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며 현금흐름표를 이용하여 추계한 설비투자 증가율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측결과는 기업재무제표 중 하나인 현금흐름표에서 찾을 수 있는 각 자산항목별 현금유출액 합계의 절대 규모는 중고자산에 대한 현금유출액을 포함하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국민계정상의 설비투자 규모와 비교 가능하지는 않지만 증가율 추이는 매우 흡사하므로 투자의 대용지표로서 현금유출액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국민계정 설비투자 추이와 비교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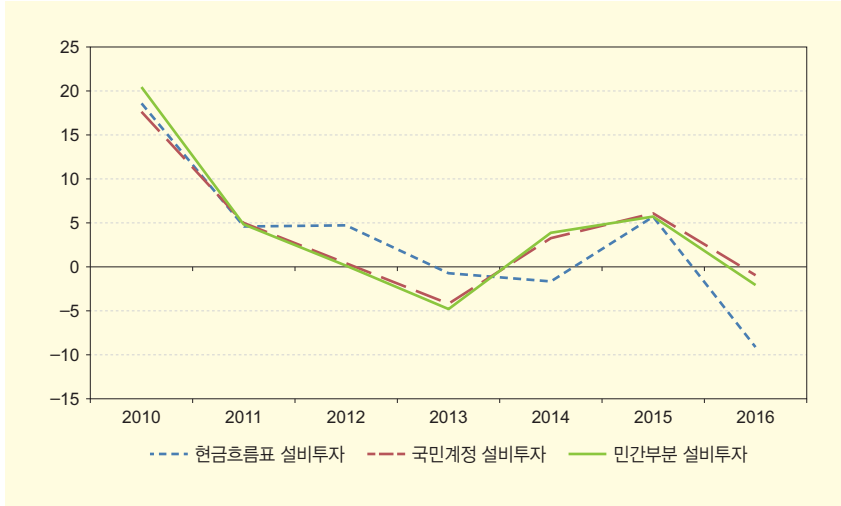
	현금흐름표 설비투자 전체합계		국민계정 설비투자		국민계정 민간부문 설비투자	
	투자규모	증가율	투자규모	증가율	투자규모	증가율
2009	107.7	-4.9	103.5	0.5	92.2	-1.3
2010	127.7	18.6	121.6	17.5	111.2	20.5
2011	133.5	4.5	127.7	5.0	116.7	4.9
2012	139.7	4.7	128.3	0.4	116.9	0.2
2013	138.8	-0.7	123.0	-4.1	111.3	-4.8
2014	136.6	-1.6	127.2	3.4	115.6	3.9
2015	144.5	5.8	134.9	6.1	122.5	5.9
2016	131.2	-9.2	133.7	-0.9	119.9	-2.1

출처: 1. NICE평가정보 KISVALUE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국민계정-주체별 총자본형성(<http://ecos.bok.or.kr/>)

[그림 2]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비교

(단위: %)



출처: 1. NICE평가정보 KISVALUE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국민계정-주체별 총자본형성(<http://ecos.bok.or.kr/>)

중소기업들의 현금성자산 선호 성향이 대기업보다 다소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약한 중소기업의 현금성자산과 설비투자 증가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중소기업에 축적되어 있는 현금성자산이 투자로 연계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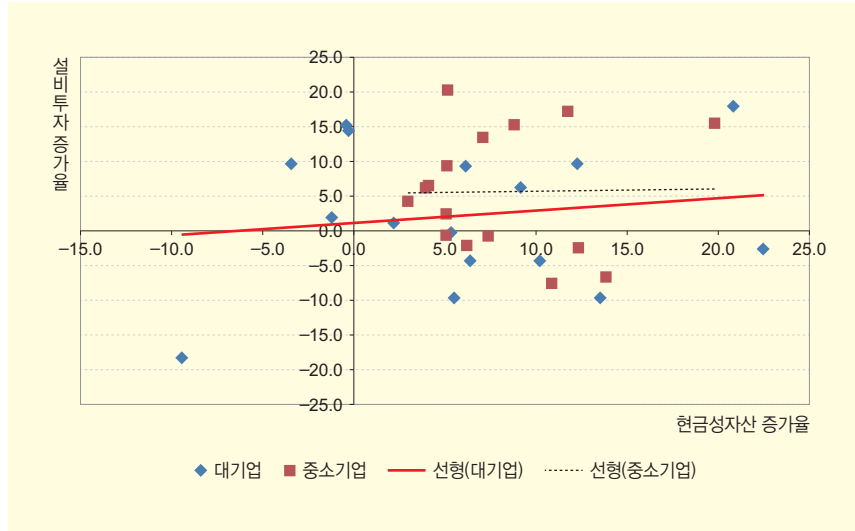
2. 기업규모별 현금성자산과 설비투자 증가율 비교

[그림 3]의 산포도는 기업당 평균 현금성자산과 설비투자 증가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대체적으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현금성자산 증가율과 설비투자 증가율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의 추세선이 중소기업의 경우보다 더 큰 양의 기울기를 보이며 현금성자산 증가율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설비투자 증가율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들의 현금성자산 선호 성향이 대기업보다 다소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약한 중소기업의 현금성자산과 설비투자 증가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중소기업에 축적되어 있는 현금성자산이 투자로 연계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기업의 추세선이
중소기업의 경우보다
더 큰 양의 기울기를 보이며
현금성자산 증가율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설비투자 증가율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현금성자산과 설비투자 증가율: 기업규모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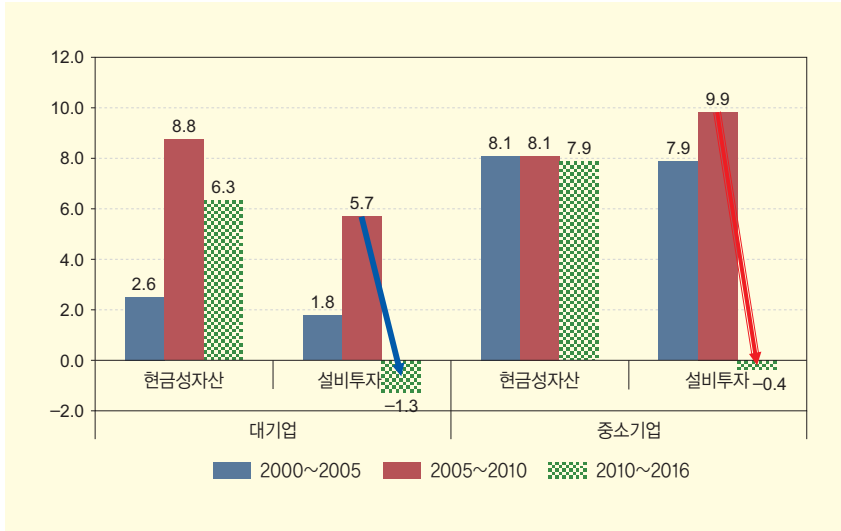


출처: KISVALUE DB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대기업의 경우 2005년 이전 현금성자산 연평균 증가율은 2.6% 수준이었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1.8%였으나 2005~2010년 기간 동안 현금성자산 연평균 증가율은 8.8%로 크게 확대되며 설비투자 증가율도 5.7%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2005년 이전 현금성자산과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8.1%와 7.9% 수준이었으며 이후 2005~2010년의 기간에 현금성자산 증가율은 이전 기간과 동일한 8.1% 수준을 유지한 반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9.9%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투자 증가세는 2000년 이후 2010년까지 비교적 견조하게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 이후 현금성자산 증가세는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인 7.9%로 나타났지만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0.4%로 나타나며 투자가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전 기간의 연평균 9.9%에 달하던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0.3%포인트나 낮아졌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2010년 이후 현금성자산 연평균 증가율이 6.3%로 나타나며 이전 기간 평균 증가율보다 2.5%포인트 낮아지면서,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이 -1.3%를 보이며 설비투자 축소로 이어졌다. 2010년 이후 대기업의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이전 기간 연평균 증가율보다 7%포인트 낮아졌으나 중소기업의 증가세 둔화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림 4] 현금성자산과 설비투자자의 증가율 추이: 기업규모별·기간별 비교

(단위: %)



출처: KISVALUE DB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산업은행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반기별로 발표하는 설비투자계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2017년 실적은 전년 대비 14.1%로 추정되고 있다. 산업은행의 발표 결과에는 토지구입이 포함되어 있어 여기서 분석한 내용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016년과 2017년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10%를 하회한다는 점은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시행된 법인세율 인하 이후 많은 논란 속에 대기업의 투자 확대가 미진하다는 주장에 의해 정부는 자본금 500억원 이상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미환류법인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미환류법인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제도와 이를 강화하여 올해 도입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정책대상자 설정과정에서 중소기업은 배제됐다. 그러나 사실상 2010년 이후 큰 폭의 설비투자 증가율 둔화는 중소기업에서도 발생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전체 설비투자의 근간을 이루고 설비투자의 추가적 확대 추이를 결정하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설비투자 증가율

이러한 중소기업 설비투자 증가율 둔화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향후 성장잠재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도 일정수준의
투자여력이 있으며
우리 경제의 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둔화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향후 성장잠재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IV. 시사점

기업들의 투자여력으로 지난 수년간 잘못 인식되어 온 사내유보금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들의 투자여력 대용지표로서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현금성자산 추이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봤다. 또한 기업들의 투자행태의 대용지표로서 현금흐름표상 설비자산에 대한 현금유출액을 이용하여 기업규모별 현금성자산과 설비투자의 상관관계를 개괄적으로 검토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6년 18,186개의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들은 기업당 평균 61.6억원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표본 내 중소기업 전체 현금성자산 보유 규모는 1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준의 중소기업 보유 현금성자산의 3%에 달하는 3.4조원만 더 투자되더라도 2016년 기준 국민계정상 총고정자본의 0.7%, 민간 설비투자의 2.8%만큼 추가 확대가 예상된다. 이러한 투자의 증가는 국내총생산의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467억원에 달하는 3,990개의 표본 내 대기업 보유 현금성자산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매출액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에 소폭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내유보금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은 대기업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며 사내유보 중 이미 투자된 수준이 중소기업의 경우에 크게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0~2016년의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의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0.4%에 불과하고 2005~2010년의 기간 동안 보였던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 9.9% 대비 10.3%포인트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도 일정수준의 투자여력이 있으며 우리 경제의 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확대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액공제와 같은 당근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와 같은 채찍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당근을 그리고 대기업에는 당근과 채찍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기업관련 비과세감면 정비 이전부터 임시투자세

액공제 폐지 및 고용창출투자세액 도입 등 비과세감면 요건을 고용과 연계하며 투자 인센티브의 크기를 축소해왔다. 따라서 현재는 투자 유인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더하여 올해부터는 강화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시행하며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25%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했다.⁷⁾

전반적으로 정부의 투자에 대한 지원이 낮아진 가운데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적 과세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제 현황을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김학수(2016)는 이러한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적 법인세제는 기업의 성장,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이 성장해가면서 지속적으로 포기해야 할 세제상의 혜택이 존재하는 한 기업들은 피터팬 신드롬에 빠져서 기업조개기와 같은 비정상적 경영활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기업규모에 의존한 차등적 조세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제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정책대상자에서 중소기업이 배제된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 둔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보유 현금성자산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달하며 투자재원의 60% 이상을 부채로 조달하고 있다. 부채로 조달할 경우 이자비용이 소득공제대상이므로 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중소기업 보유 내 부자금도 보다 생산적인 곳에 사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제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효과성 여부를 떠나서 중소기업도 동 제도들의 정책대상자로 포함되어 기업규모 의존적 차등과세의 정도를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8) KIF}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제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효과성 여부를 떠나서 중소기업도 동 제도들의 정책대상자로 포함되어 기업규모 의존적 차등과세의 정도를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7) 2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들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과세표준 3천억원 기업들의 실효세율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복잡성은 또 다른 비효율을 낳는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8)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 제도변경 후 처음 시행되므로 그 효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 김학수, 『중소기업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_____, 「새 정부의 법인세율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경제포럼』, 제10권 제3호, 2017, pp. 85-119.
- 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제83호, 2016.
- _____, 『설비투자계획조사』, 제85호, 2017.
- Brown, J. R., & Peterson, B. C., “Cash holdings and R&D smoothing,” *Journal of Finance*, Vol. 58, pp. 2167-2202.
- Graham, J. R., & Leary, M. T., “The Evolution of Corporate Cash,” NBER working paper, No., 23767, 2017.
- Martinez-Carrascal, C., “Cash holdings, firm size and access to external finance. Evidence for Euro area,” Documentos de Trabajo No. 1034, Bank of Spain, 2017.
- NICE평가정보, KISVALUE DB, 2017.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政策研究

정책연구



■ 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1)

전병목 · 송호신 · 성명재 · 전영준 · 김승래

■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오종현 · 최충

■ 법인세 정책이 기업의 위험부담행위에 미치는 영향

김학수 · 김빛마로

■ 친환경차 확산 관련 조세제도의 정책방향

최준욱 · 이동규

■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이상엽 · 홍우형

■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관세율 체계 분석 연구

정재호 · 강성훈

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1)

- 소득재분배를 중심으로 -

전병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송호신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성명재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영준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승래 /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두 차례 경제위기의 극복, 경제규모의 확대, 인구고령화의 진행 등으로 점차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성장률은 하락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복지정책 등 국가 역할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저성장시기로의 진입은 고용창출 능력의 하락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 이로 인한 소득격차 확대 등을 야기하고 있다.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과 함께 고령화로 나타나는 은퇴계층의 증가는 소득격차를 더 확대시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의 둔화는 정부 역할에 필요한 세입확보를 어렵게 하여 적극적 재원조달 노력과 함께 효과적인 정책운용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저성장시기에 조세정책이 추구하여야 할 재원조달과 재분배기능의 조화방안을 살펴본다. 재원조달은 정부 역할 수행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재분배는 정부 역할로서 최근 가장 사회적으로 크게 요구되는 기능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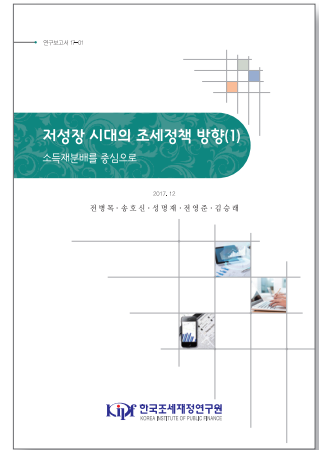
먼저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대부분의 국가가 잠재성장률 하락을 경험하면서 상대적 저성장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잠재성장률 하락은 생산가능인구(또는 총인구) 증가율 하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증가율 하락은

수명연장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소득분배 상황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잠재성장률 하락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인구성장률 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경제성장률 둔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인구성장률 둔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추세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선진국들과 달리 소득수준과 사회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는 노동 및 자본의 질(quality) 향상, 혁신 등을 통한 추가적인 성장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양한 정책옵션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 안에서 정부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가 야기하는 소득분배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재정지출정책의 조화가 중요하다. 선진국들의 사례는 재분배효과 측면에서 조세정책보다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재분배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누진적 세목은 제한적이고 동 세목의 활용 정도 역시 경제적 왜곡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재정지출 정책은 이러한 제약조건 없이 소득재분배를 개선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큰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는 소득수준과 소득 증가율이 낮은 고령층의 증가로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키면서 주요 생산요소 가운데 노동력의 양적 투입 증가가 제한되므로 성장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세정책은 재분배 기능을 중시하되 그 주된 기능은 재정지출이 담당하도록 하며 재원조달에 무게중심을 두는 균형유지가 중요하다. 재원조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배의 역진성 문제도 이후 더 큰 재분배효과를 갖는 재정지출정책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는 정책개선방안으로 소득세의 공제수준 하향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소득세 면세점 인하로 세수와 재분배를 함께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소비세의 경우에도 징수과정의 단기적 역진성은 생애주기 관점에서 비례적으로 완화되고, 복지지출로 얻을 수 있는 재분배효과가 단기적 역진성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역할 강화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조세 및 재정정책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국민부담률과 현금성 공공사회지출 수준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 재원조달로 현금성 공공사회지출을 높일 경우, 재원조달 과정의 분배 개선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재분배 관점에서 조세제도와 재정정책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재원조달 과정의 재분배 영향이 큰 정책제약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조세정책 중에서는 개인소득세의 비중과 최고세율 등이 지니계수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비중과 이보다 격차가 작은 최고세율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 증가를 통한 복지 재원확보가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B5변형/ 295면

2017. 12

개별 세목별로 구체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인소득세, 자산과세, 법인세 등의 재원조달과 재분배기능의 관계를 분석한다. 개인소득세는 국제비교분석에서 재분배에 크게 기여하는 정책수단으로 분석되었으므로 보다 구체적 부담증대방안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과세는 노동 이외의 소득창출수단으로서 분포 편중성이 심한 자산에 대한 과세를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상당부분 자본에 귀착되는 세부담으로서 최근 재분배 및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요구가 높은 세목이므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누진적 구조여서 재분배에 긍정적인 세목으로 세수확보 및 재분배에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근로유인에의 영향, 빈곤함정(poverty trap) 등 효율성 관점에서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소득세 증세가 야기할 수 있는 근로유인 저해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가구규모별(1인, 4인) 소득수준에 따른 한계세율 구조를 분석하였다. 한계세율 구조는 전반적으로 소득에 따라 증가하면서 명목세율의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 추가적인 세부담 인상이 추진되더라도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노동시장참여세율 역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어 복지제도의 확충 역시 근로유인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 증세정책에 대한 세수 1조원당 재분배(지니계수) 개선 정도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부담 증가 방안의 경우 평균적 재정지출보다 효과적인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득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재분배 지표, 즉 5분위 배수, 10분위 분배율 등의 개선은 재정지출에 비해 효과성이 크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상하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조세정책은 고소득층 소득세 증세라는 시나리오에서도 재정지출에 비해 우위에 있지 않았다.

가구규모를 반영한 소득세 부담구조 형성이라는 목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적공제 확대는 상당한 세수감소를 유발하면서 재분배 개선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양가족 규모와 소득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세수확보와 소득재분배 개선 측면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조정이 최고세율 인상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제도의 재분배 효과를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재분배에 효과적인 재정지출정책을 더 활용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자산과세의 경우, 제도 운용으로 인해 장기적인 성장, 고용 등의 지표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산과세의 운용으로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효과는 확인할 수 있었다. 세수당 재분배효과는 경제 호황기보다 불황기에 강하게 나타나 불황기 분배 개선에 자산과세가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목으로는 상속세가 자본소득세에 비해 더 큰 재분배효과를 보였다. 동시에 두 정책의 운용은 소득분배 개선뿐만 아니라 자산 및 소비의 불균등성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율의 3%p 인상의 재분배효과를 살펴보면 노동 대비 자본에 귀속되는 부담이 커 대규모 기업에 세부담이 일차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파급효과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종업원, 소액주주, 대주주, 정부 등 경제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귀착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주의 구성에 있어서 대규모 기업이 소규모 기업에 비해 대주주나 고소득층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소득계층별 누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변화 정도는 세입 1조원당 0.000075 수준에 그쳐 소득세의 평균적 개선 정도 0.000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법인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매우 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대로 조세부과의 경제적 비용(즉 효율성 비용)은 여러 세목 중 가장 높아, 재원조달과정에서 이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로 악화된 소득분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대응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정책대응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정책수단은 분배개선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하되 먼저 세입확보와 재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세목의 역할 증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소득세, 상속세, 자본소득세 등의 역할 증대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법인세의 경우, 재원조달과정에서 재분배 개선 정도는 매우 약한 반면 그 비용은 가장 큰 세목으로 평가된다. 또한 소득 및 자산과세를 통한 재분배기능 강화 효과는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수규모로 표준화한 재분배 효과성은 소득과세가 크게 나타난 가운데 상속세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제도 변화는 호경기보다 불경기에 재분배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불경기에는 자산과세 강화를 통한 재분배 강화가 상대적으로 유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의 강화는 근로유인 저하 등 효율성 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잠재성장률 제고 노력과 함께 그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각 정책별 효과성 제고 노력도 중요하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7-01 『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1)』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오종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 충 /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조세정책의 다양한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분배 기능이다. 특히 최근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조세정책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조세정책을 통한 재분배 효과는 단순히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1차적인 효과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조세체계는 개인의 노동공급이나 저축 등의 행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소득이나 자산의 분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개인의 행태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분명 장점이 존재한다.

오종현·박명호(2015)는 Krusell and Smith(1998), Chang and Kim(2007) 등과 유사한 이질적 가계를 가정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만, 오종현·박명호(2015)는 노동공급의 자산효과가 제거된 효용함수를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노동공급의 자산효과를 쉽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10억원의 복권에 당첨되었을 경우 노동공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공급의 자산효과가 제거되면 자산 수준에 상관없이 개인은 오직 임금에 의해서만 노동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오종

현·박명호(2015)가 이러한 가정을 도입한 이유는 소득, 소비, 자산분포에 대한 현실의 데이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이질적 가계를 가정한 일반균형모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분포는 잘 설명하더라도 자산이나 소비에 대한 분포를 지나치게 과소 추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Oh(2013)에 따르면 효용함수에서 노동공급의 자산효과를 제거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완화된다. 오종현·박명호(2015)는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경기변동에 따른 소득, 소비, 자산 불평등도의 변화와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동 모형이 우선적으로 현실의 소득, 소비, 자산분포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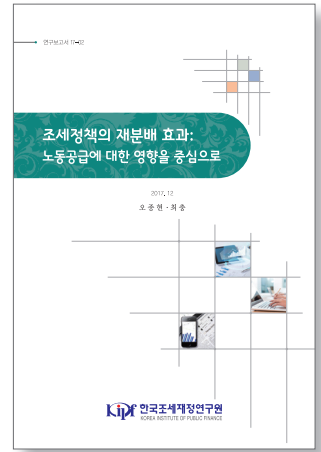
만약 노동공급의 자산효과를 반영하면 오종현·박명호(2015)에서 분석한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소득세율이 인상되면 유효임금이 변하고 이는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노동공급의 자산효과가 제거되면 재분배 효과는 주로 노동과 소비의 상대가격 변화에 의한 대체효과를 통해 발생하게 된다. 반면 노동공급의 자산효과를 반영하게 되면 고소득·고자산 계층과 저소득·저자산 계층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에 소득 등의 분포 및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가 달라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공급 자산효과에 따른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오종현·박명호(2015)의 결과를 재해석한다. 이를 위해 오종현·박명호(2015)의 모형에 Jaimovich and Rebelo(2009; 이하 JR)의 효용함수를 도입한다. 일반적인 효용함수와는 달리 JR 효용함수는 노동공급의 자산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모수를 포함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공급의 자산효과가 큰 것으로 가정하여 King, Plosser, and Rebelo(1988; 이하 KPR)의 효용함수를 가정한다. 반면 오종현·박명호(2015)와 같이 노동공급의 자산효과를 제거할 경우 Greenwood, Hercowitz, and Huffman(1988; 이하 GHH)의 효용함수를 가정한다. JR 효용함수는 KPR 효용함수와 GHH 효용함수를 두 가지의 양극단적인 효용함수로 포함하며, 특정 모수를 통해 양극단이 아닌 다양한 수준의 노동공급 자산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모수를 θ 로 정의하였다. JR 효용함수에서 θ 를 1로 가정하면 이는 KPR 효용함수를 의미한다. 반면 θ 를 0으로 가정하면 GHH 효용함수를 의미한다. 이에 0과 1 사이의 다양한 θ 값을 통해 노동공급의 자산효과에 따른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제Ⅱ장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통한 분석을 수행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소득, 소비, 자산의 분포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2011~2015년 대상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복지부문 자료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금융부문과 복지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소비에 대한 자료는 복지부문에만 존재한다. 한편 본 연구는 노동공급을 통한 분배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 생산가능연령인 25~64세의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소득 등의 분포를 측정하였다. 분석 단위로는 가구원

B5변형/ 181면
2017. 12



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균등화개인 단위로 분석하였다.

소득 등의 분포를 측정한 결과 대체로 순자산, 근로소득, 시장소득, 민간소득, 처분가능소득, 소비 순으로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여러 분배지표 중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순자산의 지니계수는 0.5567로 소득이나 소비의 지니계수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다. 근로소득, 시장소득, 민간소득,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는 각각 0.3526, 0.3496, 0.3446, 0.3235이다. 한편 소비의 지니계수는 0.2594로 자산이나 소득의 지니계수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의 효용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소비와 가까운 단계일수록 분배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의 효용은 소비와 여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자산과 소득은 이러한 소비와 여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소비와 같이 효용을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소비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이나 시장소득도 중요하지만 처분가능소득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Ⅲ장에서는 노동공급의 자산효과에 대해 살펴

보기 위한 일반균형모형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일반균형모형은 Krusell and Smith(1998), Chang and Kim(2007), Chang et al.(2015), 오종현·박명호(2015) 등과 같이 노동생산성의 이질성으로 말미암아 가계의 자산, 소득, 소비 등의 분포가 발생하는 일반균형모형이다. 또한 Aiyagari(1994), Huggett(1993), Imrohroglu(1989)와 같이 자본시장이 불완전한 모형이다. 이와 같은 모형에 노동공급의 자산효과를 조정할 수 있는 JR 효용함수를 가정하였다. 또한 조세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을 위해 오종현·박명호(2015)와 Chang et al.(2015)의 정부부문을 도입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제Ⅲ장에서 정의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노동공급의 자산효과에 따라 조세정책이 소득 등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동공급의 자산효과가 조세정책을 통한 분배 지표 변화의 방향성을 변화시키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세의 누진도를 강화시키면 모든 단계에서 지니계수가 개선된다. 통합소득세율을 인상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증가하지만 시장소득 등의 지니계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자산소득세율을 인상하면 근로소득의 지니계수는 감소하지만 시장소득 등 다른 단계의 소득 및 소비, 자산의 지니계수는 오히려 증가한다. 한편 소비세율 인상은 소득 등의 분포에 미미한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공급의 자산효과가 조세정책의 분배지표 변화의 방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변화의 크기에는 영향을 미친다. 통합소득세의 누진도를 강화할 경우 노동공급의 자산효과가 클수록 근로소득 등 지니계수의 감소율이 낮아진다. 이러한 특징은 모든 단계의 소득 및 소비, 자산의 지니계수에서 관찰된다. 이는 통합소득세의 누진도 강화에 대한 분배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효용함수의 가정에 따라 그 효과가 과소 혹

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처럼 일반균형모형에서 KPR 효용함수를 가정하지만, 실제 노동공급의 자산효과가 이보다 작다면 조세정책의 분배효과는 과소평가될 것이다.

통합소득세율 인상이 소득 등의 분포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 또한 노동공급의 자산효과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노동공급의 자산효과가 클수록 통합소득세율 인상으로 인한 근로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율은 과대평가된다. 반면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소비의 지니계수의 변화율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자산에 대한 지니계수 변화율은 노동공급 자산효과에 대해 비선형적인 특징이 있다. 일반균형모형에서 효용함수를 JR 효용함수의 양극단인 KPR 효용함수나 GHH 효용함수로 가정하면 통합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자산에 대한 지니계수 변화율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자산소득세율의 인상이 소득 등의 분포에 미치는 효과 또한 노동공급의 자산효과에 대한 가정에 영향을 받는다. 노동공급의 자산효과가 클수록 자산소득세율 인상으로 인한 근로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율은 과대평가된다. 반면,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소비의 지니계수 변화율은 과소평가된다. 통합소득세율과 마찬가지로 자산소득세율의 인상으로 인한 자산의 지니계수 변화율은 노동공급 자산효과에 대해 비선형이다. 특히, 노동공급의 자산효과를 양극단으로 가정할 경우 자산소득세율 인상으로 인한 자산의 지니계수 변화율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한편, 소비세율 인상은 소득 등의 분포에 미미한 영향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Ⅴ장에서는 제Ⅲ장에서 정의한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도출된 노동공급의 1계조건을 이용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노동공급의 자산효과를 추정하였다. 현실에서 노동공급의 자산효과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GHH 효용함수보다

KPR 효용함수가 널리 이용되는 이유는 노동공급의 자산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직관과는 상충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Jaimovich and Rebelo(2009), Guvenen(2009), Monacelli and Perotti(2008), Schmitt-Grohe and Uribe(2012), Oh(2013) 등은 KPR 효용함수에서의 노동공급의 자산효과는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즉 현실은 KPR 효용함수와 GHH 효용함수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의 일반균형모형에서 노동공급의 자산효과를 의미하는 θ 를 추정할 결과 KPR 효용함수를 의미하는 1과 GHH 효용함수를 의미하는 0이라는 귀무가설이 모두 기각되고 그 사이에 위치한 값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다양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도 강건하게 유지되었다. 즉, KPR 효용함수와 GHH 효용함수 모두 노동공급의 자산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극단적인 가정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일반균형모형에서 KPR 효용함수를 주로 가정하는데, 이 경우 노동공급의 자산효과에 대한 가정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부 거시경제학 문헌에서는 노동공급의 자산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GHH 효용함수를 가정하지만 이 또한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이질적 가계를 가정한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조세정책이 소득 분포 및 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노동공급의 자산효과에 대한 가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저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두 가지가 처음으로 시도된 연구로 의의가 있다. 먼저 이질적인 가계를 가정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살펴볼 때, 노동공급의 자산효과에 대한 가정의 영향을 살펴본 최초의 연구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그동안 거시자료를 활용한 실증연구는 존재

하였으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JR 효용함수의 노동공급 자산효과에 해당하는 모수를 처음으로 추정한 연구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7-02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법인세 정책이 기업의 위험부담행위에 미치는 영향

김학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빛마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 서론

본 연구는 기업들의 위험부담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법인세제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법인세율인상과 인하의 효과가 비대칭적인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성숙한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제4의 성장 동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가정신에 법인세율 변화가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별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법인세율 정책 효과의 비대칭성을 분석한 결과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분석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주요 OECD 국가들의 상장기업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기업 수준의 위험부담행위를 측정하고 기업의 위험부담행위 결정요인들 중 법인세율의 변화가 기업 수준의 위험부담행위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을 분석한다. 법인세율 정책효과와 비대칭성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인 Ljungqvist and Smolyansky(2014)와 Ljungqvist et al.(2017)의 분석 틀을 기본으로 활용할 것이다.

셋째, 기업특성별로 가상적인 법인세율 정책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앞에서 수행한 실증분석결과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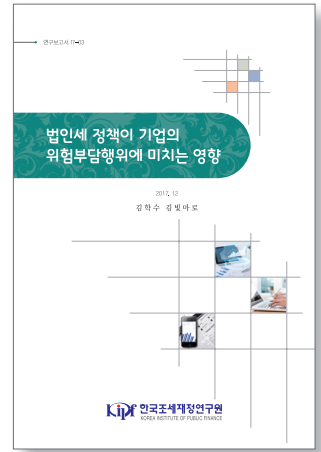
II. 성장동인으로서 기업가정신과 법인세

기업가정신은 경제 활력도와 향후 성장가능성을 나타내주는 지표라 할 수 있는데 오랜 기간 성장동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기업가정신이 최근 제4의 성장동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관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네 가지 대용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수준을 가늠해 보았다.

지표에 따라 기업가정신 수준은 OECD 평균을 상회하기도 하고 하회하기도 하지만,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추이는 대체적으로 정체되어 있거나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중 국제특허출원 건수를 기업가정신 대용지표로 설정하는 경우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수준은 2000년 이후 OECD 평균을 상회하여 추세적으로는 기업가정신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2010년 이후 정체 내지 소폭 둔화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신설법인 수의 경우,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개선양상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고용주 비중을 기업가정신 대응지표로 설정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수준은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2009년 이후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GEM의 TEA 지수를 기업가정신의 대응지표로 설정하는 경우, 2010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수준은 OECD 평균을 하회하며 2001년 대비 2016년 TEA 지수의 축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2000년 이후 하락 또는 정체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에 법인세율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OECD 국가들의 총량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연도별 패널 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대체적으로 전기의 법인세율인상 정도와 법인세율인하 정도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의 법인세율인상은 국제특허건수, 신설법인 수와 같이 법인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기업가정신 대응변수에 매우 탄력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년도의 법인세율인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추정됐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고용주 비중과 GEM의 TEA 지수로 측정된 기업가정신은 전기의 세율인상 정도가 클수록 더욱 위축되고, 법인세율인하 정도가 클수록 기업가정신 발현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리의 사전적 예상과 부합하는 부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됐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고용주 비중과 TEA 지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법인세율의 변화가 법인기업의 행위와 크게 연관된 기업가정신 지표들에 미치는 영향은 세율의 변화 방향에 따라 비대칭적이라는 Ljungqvist et al.(2017)의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B5변형/ 117면
2017. 12

이상의 분석결과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인세율인상이 2000년 이후 정체 또는 둔화되고 있는 기업가정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III. 기업의 위험부담행위와 법인세제

조세정책의 변화가 고용, 투자, 입지 등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 및 실증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조세정책의 변화가 기업의 투자 결정 중에서도 위험부담행위(risk-taking behavior)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업의 투자 총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세계가 기업의 위험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이론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부담이 강화되는 경우 위험한 프로젝트의 세후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이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져 위험부담 수준이 감소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미국기업 자료를 이용한 실증 연구(Ljungqvist et al, 2017)에서는 법인세율이 인상될 때 기업이 위험부담 행위를 줄이는 효과는 나타나지만,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는 위험부담 수준에 유의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비대칭적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OECD 국가에서도 성립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위험부담행위를 측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별기업의 위험부담 수준은 기업이 속한 국가 또는 시장 여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조직적 위험(systematic risk)과 기업 고유특성에 의한 위험(idiosyncratic risk)으로 구분된다. 기업이 동일한 행태를 보이더라도 기업이 속한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 경우 해당 기업이 직면한 위험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증가하는 위험을 조직적 위험이라고 한다. 반면 기업 고유특성에 의한 위험은 시장 여건 등 외부요인이 아닌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 및 행태에 의한 위험을 뜻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별 기업의 위험부담 수준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고유특성에 의한 위험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재무제표에 기재된 수익의 변동성을 통해 위험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이 시장수익률을 이용하는 방식보다 기업 고유특성에 의한 위험을 보다 잘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개별기업의 위험부담 수준 측정이 필요한 많은 연구에서는 재무자료 기반 접근법이 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기업의 분기별 총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s, 이하 ROA)의 변동성을 사용하여 위험부담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험부담 수준 현황을 파악하고, 법인세제가 위험부담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주요국의 개별기업 재무 자료를 이용해 위험부담행위 현황을 비교해본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험부담행위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위험부담 수준은 2.40%로 동기간 조사대상 국가 전체 평균인 5.33%의 약 45% 정도이었으며, 분석대상 14개국 중 10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위험부담행위 수준이 높은 국가는 캐나다(13.55%), 미국(6.50%), 영국(5.34%)이었으며, 위험부담행위 수준이 낮은 국가는 스페인(1.34%), 일본(1.42%)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와 해외 국가와의 위험부담 수준 차이는 3차 산업보다 2차 산업에서 더 컸으며, 최근 들어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기타 조사대상 국가의 위험부담행위 수준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와 외국 모두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위험부담 수준이 높은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위험부담 수준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위험부담 수준은 외국 중소기업의 약 37%, 중기업의 경우 약 68% 수준인 데 비해 대기업의 위험부담 수준은 외국 평균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또한 추세적으로 살펴봐도, 해외 국가와의 중소기업 위험부담 수준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법인세율의 변화가 기업의 위험부담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Thomson Reuters의 EIKNON Database, OECD Database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실증분석 방법은 Ljungqvist et al.(2017)을 참고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경우 기업은 위험부담 수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지만,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위험부담 수준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법인세율 1%p 인상 시 평균적인 기업은 약 5%p 위험부담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법인세율이 1%p 인하되는 경우에는 기업들이 위험부담 수준을 최대 1%p 증가시키는 데 그쳤다. 이는 기업들이 세율인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위험부담 수준을 감소시키지만, 세율인하에는 상대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비대칭적 결과가 성립함을 의미한다.

둘째, 3차 산업 종사 기업, 중소기업 및 “초거대기업”(고용인 수 1만명 이상)은 세율인상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2차 산업 종사 기업은 세율인하에 유의미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업 규모 및 업종 등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의 행태변화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법인세율 변화에 대한 기업의 비대칭적 반응은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 집단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부채비율에 따라 전체 기업을 2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후 수행한 회귀분석 추정결과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인하에 유의미하게 반응하여 법인세율인상과 인하의 탄력성 차이가 작은 반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탄력성 차이가 매우 크거나 법인세율인하가 되는 경우에도 위험부담 수준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채권자들에 의한 경영제약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세율이 인하되어 고위험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높아진 경우에도 쉽게 위험부담 수준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이론적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즉,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위험부담 수준이 법인세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규모, 업종, 부채비율 등 기업 특성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가정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설계 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은 다양한

국가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며, 자료의 한계상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IV. 우리나라 기업의 위험부담행위와 법인세제

국가별 총량자료와 기업별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국가 전체의 기업가정신 및 개별기업의 위험부담행위에 미치는 법인세율 정책효과의 비대칭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완하고자 우리나라 3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의 60% 정도는 2016년에 신규투자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2016년 신규투자를 수행하지 않은 기업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16년 신규투자 규모의 55.4%는 내부재원으로 조달됐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내부조달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70.6%의 투자재원이 사내에서 조달됐다. 2016년 신규투자를 수행한 기업들 중 80%는 해외투자 없이 전부 국내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투자의 절반 이상이 설비자산(56.66%)에 투자됐고, 다음으로 연구개발 등 무형자산(20.35%), 건물 및 구축물(15.65%), 토지(7.45%)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응답 기업들의 60.7%는 과거 5년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대용지표들이 2010년을 전후하여 정체 내지 하락하고 있는 양상과 매우 유사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해외투자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최근 5년간 해외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투자 경험이 없는 244개 기업들 중 34.4%만이 국내투자 규모를 최근 5년간 확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법

정 기업규모 중 중견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투자 부진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중견기업들이 이미 수익성이 확보된 국내시장에서 안주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상의 법인세율 변화에 대해 기업들의 투자 변화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법인세율 정책효과와 비대칭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인세율 변화에 대한 국내투자의 탄력성 구간과 기업특성 구분에 따라 법인세율 정책효과와 비대칭성, 즉 법인세율인상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와 법인세율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Ljungvist et al.(20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됐다. 그러한 가능성을 보이는 기업특성 구분은 법정 대기업, 제조업, 수출기업, 해외자회사 보유기업,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이다. 종업원 수와 매출액 규모의 경우 탄력성 구간에 따라 소규모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정책효과와 비대칭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종합해 볼 때, 최근 우리 기업들의 기업가정신 내지 위험부담행위 성향은 정체 내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성 및 혁신성을 제고하는 정책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노력은 단순한 지원제도로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다양한 비과세감면제도를 통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기업에 비해 우대해주고 있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소극적 투자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포기해야 할 조세혜택은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제도 본연의 도입 목적과 달리 안주하게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V. 결론

이상의 분석과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내지 기업의 위험부담행위는 2010년을 전후하여 정체되거나 약화되어 왔으며,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에 중요한 기업가정신과 개별기업의 위험부담행위에 미치는 법인세율 정책효과는 비대칭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가정신과 위험부담행위의 부진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미약한 투자행위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우리 경제가 보다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위험부담행위 및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포기해야 할 조세혜택이 크다면 제도 본래의 취지와 달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안주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는 단순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확대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7-03 『법인세 정책이 기업의 위험부담행위에 미치는 영향』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친환경차 확산 관련 조세제도의 정책방향

최준욱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친환경차 확산과 관련된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은 조세, 그리고 부(-)의 조세로 볼 수 있는 보조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친환경차 관련 조세 및 보조금 제도에 대해 고찰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 및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의 제Ⅱ장에서는 전기차의 확산과 관련된 조세 및 보조금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현재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전기차의 환경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수년간 전기차 관련 기술에서 큰 진전이 있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는 해당 국가의 발전원 구성 등 제반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것은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전기차는 아직까지 경제성이 확보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전기차 확산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기차 1대당 보조

금은 조세감면을 포함하여 최대 4,200만원에 달한다. 반면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편익은 차량 1대당 84만~400만원 정도로 비용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비용 편익의 틀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의 보조금 및 조세감면에 타당성을 부여하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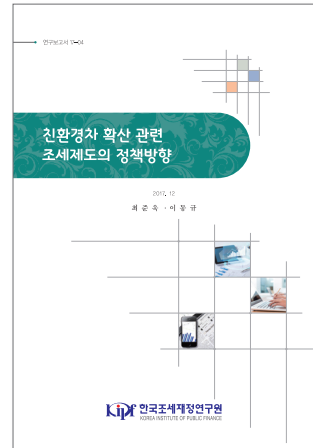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의 보조금 수준으로는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의 수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 수준 및 비용구조하에서는 전기차 확산을 통한 환경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로는 현재 실현되는 환경편익 외에도 기술발전 등을 통해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환경편익, 그리고 전기차 관련 산업의 발전 등 산업정책적 측면 등도 언급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좀 더 엄격하고 조심스러운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수입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도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내의 전기차 기술 발전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자체가 국내시장만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만 과도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

한 논리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전기차 기술의 발전은 국내의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인류의 공공재로서도 중요할 수 있으며, 그러한 방향으로의 정책지원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제품 확산 정책이 기술발전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약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전기차가 보편적으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가 필요하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큰 변화와 그에 따른 경제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조금에 의존하여 전기차를 빠른 속도로 확산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래의 전기차 기술의 발전 가능성 및 경제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 그리고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도 존재한다. 전기차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그러한 요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는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고가의 중요한 내구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차량으로 대체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미래의 환경개선 수단으로서 전기차를 포기할 이유는 없지만, 전기차의 본격적인 확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조급증은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술에서 전기차의 환경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운송 및 동력수단의 전기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기차로의 대체는 사용량이 많은 차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전기차의 확산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기차로의 대체에 따른 환경편익 중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보다는 미세먼지 감축효과 등 지역적인 환경개선 효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기차 확산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B5번호/ 145면
2017. 12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확산이 인프라와 관련된 규모의 경제 실현 측면 등에서도 유리하다. 셋째, 전기차로의 대체가 승용차에만 국한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전기화(electrification)를 통한 편익이 큰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배기량은 작지만 오염저감장치가 취약하여 승용차보다는 단위당 오염배출이 크고 따라서 재정의 투입 대비 환경개선 효과성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되는 이륜차의 전기화, 그리고 일부 중장비 등의 전기화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Ⅲ장에서는 하이브리드차의 확산과 관련된 조세 및 보조금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개선 효과 자체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는 전기차의 경우와 달리, 하이브리드차가 동급의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에 비해 환경오염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비교적 명확하다. 기존의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휘발유 차량 기준)에 비해 하이브리드차 1대당 평균적으로 150만원 내외의 환경편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1대당 평균 지원액은 300만원을 초과한다. 흔히 비용 편익 분석의 틀에서 쓰는 표현

으로는 B/C는 약 0.5 이하라 할 수 있다. 즉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원도 충분한 효과성을 가진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물론 이것은 평균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기술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개인별·차량별로 차이가 있으며, 주행거리가 긴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수도 있다.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것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원규모를 현재보다 축소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물론 현재의 기술을 기준으로 재정지원의 투입 대비 산출(환경개선) 측면에서 본다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원은 전기차에 대한 지원보다는 효과성이 높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전기차에 대한 지원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도 있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주로 현재의 편익보다는 기술발전 등을 통한 미래의 잠재적 편익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이브리드차의 경우에도 기술개발은 중요할 수 있다. 다만 전기차의 경우에는 기술 발전에 따라 미래에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반면, 하이브리드차의 경우에는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차의 확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하이브리드차를 이용하는 것이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 경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의 개편이라는 시각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조세감면 및 보조금을 축소하면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확산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주행단계 과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증세 방

식의 주행단계 과세를 검토하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자동차 관련 세수의 중립성을 전제로 하여, 주행단계의 과세 강화를 보유단계의 과세 축소와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을 검토하였다. 그러한 방식의 세계개편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확산함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여지는 있음은 비교적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면서도 하이브리드차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보조금을 환경편익이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주행단계 과세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확산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보조금 및 조세감면 총액을 현재의 절반 이하인 평균 150만원 내외로 축소하더라도, 주행단계의 과세 강화 등과 더불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구매 동기가 약화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보조금을 다소 축소하되 주행단계의 과세 강화와 더불어 추진하는 정책이 현실적인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행단계 과세 강화를 급격하게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러한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첫째, 자동차의 수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둘째, 노후차량의 폐차가 지연되어, 오히려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도 존재한다. 셋째, 휘발유만을 대상으로 한 주행단계 과세 강화는 하이브리드차 대신에 경유차를 선호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현실적인 세계개편의 속도 및 보완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7-04 『친환경차 확산 관련 조세제도의 정책방향』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이상엽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홍우형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정부는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변화하면서 적정 배당 등으로 기업의 이익을 주주와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하였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증가율,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주주와 기업의 배당사결정에 대한 세제상 중립성을 강화하여 배당의 인센티브를 높이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정부가 배당소득증대세제로 기대한 1차적인 경제적 효과는 기업의 배당 확대이고, 2차적인 경제효과는 배당소득의 확대와 자본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자산효과 등을 통해 가계의 소비여력과 기업의 투자여력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1차적인 경제적 효과, 즉 배당소득증대세제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 수준을 주요 국가와 비교 분석하여 평가하고, 배당의 결정요인을 이론적·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배당의 결정요인에서는 자본이득과 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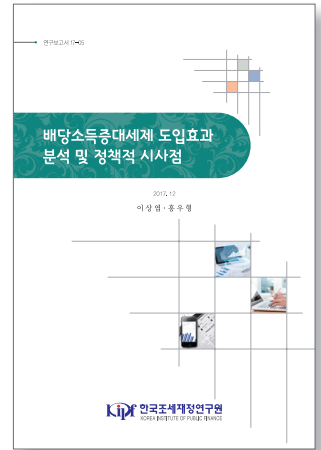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제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국가의 기업들의 배당정책 결정요인과 배당과 주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배당과 주가와의 관계를 살펴본 이유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로 배당성향이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다. 먼저, 기업의 배당정책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자본이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상대적인 크기가 기업의 배당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규모, 부채비율, 수익성, 업력(상장기간) 등 기업의 재무적 특성 변수들이 배당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기업이 배당성향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지를 분석한 결과, 배당성향의 지속성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그 지속성의 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목표 배당성향을 설정하고 배당금을 결정하는 경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배당과 주가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배당성향이 주가수익률(PER, Price Earning Ratio)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가 배당성향이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선행 연구와 달리 소유 및 지배구조가 PER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15년부터 시행된 배당소득증대세제, 즉 고배당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상장기업 배당 정책에 미친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먼저, 어떤 특성을 가진 기업이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고배당기업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규모, 수익성, 부채율, 지분율이 고배당기업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OSDAQ 시장의 경우 배당정책 및 기업의 주요 경영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주주들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고배당기업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OSPI 시장보다는 KOSDAQ 시장의 주요 주주들이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세제 인센티브에 보다 크게 반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실제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당소득증대세제가 기업의 현금배당규모와 배당성향을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금배당규모가 증가한 주요인은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배당소득증대세제가 현금배당규모와 배당성향에 미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 이후 주요 주주의 지분율이 현금배당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 이후 전체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총액이 증가한 것은 동기간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 원인이며, 이로 인해 시장 전체의 배당성향의 증가는 크지 않다는



B5변형/ 131면
2017. 12

점이다. 즉,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시장 전체에 미친 효과는 제한적이며, 상당한 세수의 손실만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세제혜택은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높은 고소득층 또는 개인 대주주들에게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배당소득증대세제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동 제도가 고배당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특정 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세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고배당기업이 되려면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배당증가율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렇듯 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세제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배당소득증대세제의 1차적인 경제적 효과, 즉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상장기업의 현금배당규모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기대한 2차적인 효과, 즉 민간소비와 투자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더욱이 현금배당규모가 증가하였더라도, 이런 배당소득은 주로 고소득층 또는 기업의 대주주들에게 귀속되고, 또한 이런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은 높지 않기 때문에 민간소비의 확대와 그로 인한 투자 증대 등의 2차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이는 오히려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2015년부터 시행한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상당한 세수손실을 초래하고, 제도의 도입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제도의 일몰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의 도입취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실제 본 연구의 결과, 배당성향은 주식의 가치를 의미하는 PER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의 배당성향과 PER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즉,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 우리나라 증시의 저평가(Korean Discount)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정부의 정책의도는 그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업의 배당을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만약 기업의 배당 확대가 정책목표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편하여 기업의 주주들에 배당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배당소득증대세제 또한 고배당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던 이유는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일부 제한적인 기업들만이 혜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다듯이, 우리나라는 자본이득에 비해 배당소득의 세부담이 높기 때문에 기업의 주주들이 배당보다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선호하여 배당성향이 낮

는 점이다. 따라서 배당소득세와 자본이득세(주식양도소득세)를 일원화하거나 배당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과세제도 개편이 기업의 배당성향 또는 현금배당규모를 확대시키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부는 배당 확대 유인책으로 배당 확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특성을 개선하는 방식의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기업의 재무특성, 소유 및 주요 주주가 배당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기업의 재무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구조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배당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의 스투어드십 코드의 확대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이 주주환원 정책의 강화로 이어질 경우 기업의 배당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KI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7-05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관세율 체계 분석 연구

정재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성훈 /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 교수

전 세계적으로 무역자유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GATT 체제에서는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관세인하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WTO 출범 이후에는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소수 국가들 간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1980년대부터 중심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현재 중심관세율 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인 지역무역협정 확대 추세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국가들과의 FTA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EU, 중국 등의 거대 경제권 FTA를 비롯해서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52 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일본 등 다수의 국가와 FTA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까지 중심관세율을 8%로 인하한 이후 일부 품목의 기본관세율을 조정하였지만, 전반적인 관세율 체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수의 국가들이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의 관세율 체계 변화를 살펴보았지만 미국, EU, 일본 등 다수의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눈에 띄게 관세율 체계를 변화한 국가는 없었다. 다만 호주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고관세

품목인 자동차와 석유류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여 절반 이상의 품목에 대해 5%의 관세율을 부과하여 단일 관세율 체계로 전환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율 자료를 활용하여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서는 기본관세율 적용 비율이 낮아지고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높아졌지만, 그 밖의 대다수 FTA에서는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교역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한·미 FTA, 한·EU FTA 그리고 한·아세안 FTA의 경우 FTA 이전에는 기본관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약 60~70% 수준이었는데, 그 비중은 약 25% 정도로 감소하였다. 그 밖의 대다수 FTA에서는 FTA 협정세율이 적용 비중이 낮아서 전체적으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약 1/4 정도였다.

2016년 기준으로 한·미 FTA 경우에는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은 39.8%였지만, 한·아세안 FTA 경우에는 그 수입 비중이 48.6%이고, 한·EU FTA의 경우에는 58.3%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별 FTA별로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상이하였으며, 한·EU FTA의 경우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다른 FTA

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농산물 수입에서 나타난다. FTA 발효 이전에 기본관세율과 할당관세율로 수입되는 상당수의 농산물이 FTA 협정세율로 전환되었다. 한·미 FTA의 경우 약 69.4%가 한·미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었고, 한·아세안 FTA 경우에는 72.8%, 그리고 한·EU FTA의 경우에는 약 80.2%로 협정세율 적용 비율이 더 높았다.

이처럼 상당수의 농산물 수입이 FTA 협정세율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탄력관세제도에 대한 정책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한 탄력관세제도 운용은 FTA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화할 필요가 있다. 공산품에 비해 농산물은 압도적으로 FTA 활용률이 높고 FTA 협정세율도 점진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탄력관세는 FTA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자연재해 등으로 공급 부족이 발생해 국내 시장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지극히 일시적으로 탄력관세제도를 활용할 필요는 여전히 있다. 따라서 탄력관세 고유의 목적에 적합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탄력관세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각 FTA별로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군들이 다수의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 FTA에서는 음식료품을 비롯해서 4개 산업군에서, 한·EU FTA에서는 수송장비를 비롯해서 7개 산업군에서, 한·아세안 FTA에서도 섬유 및 가죽제품을 비롯해서 7개 산업군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한·미 FTA와 비교해 볼 때, 한·EU FTA와 한·아세안 FTA에서는 FTA 협정세율 수입 비중이 절반 이상 되는 산업군이 더 많았고,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군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고 있었다.

전체 FTA 교역을 기준으로 산업별 분석을 하였다.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산업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2016년 기준으로 FTA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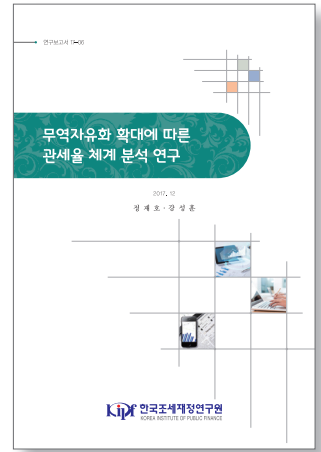
정세율로 수입되는 산업 중에서 음식료품이 약 62.9%로 수입 비중이 가장 높았고, 섬유 및 가죽제품과 수송장비는 절반 이상이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고 있었다.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농림수산품은 약 1/3이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어 중간 위치에 있고, 나머지 금속제품, 기계류, 제1차 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기 등은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 작다. 특히 전기 및 전자기 산업은 WTO ITA 협정에 의해 WTO 양허세율이 무세이기 때문에 FTA를 통해 수입되는 비중이 10.4%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더 작았다.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높은 음식료품은 농림수산품과 함께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서 농산물로 분류된다. 농림수산품과 음식료품은 우리나라에서 고관세를 통해 국내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 농림수산품과 음식료품은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높은 편이었고, 특히 음식료품은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다른 산업들 중에서 가장 높았다. 높은 기본관세율과 WTO 양허세율을 통해 국내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FTA를 통해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많이 반감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음식료품에 대한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도 한·미 FTA에서는 76.8%, 한·EU FTA에서는 83.0%, 한·아세안 FTA에서도 82.3%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산물은 다른 품목들에 비해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FTA 확산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효과는 없으면서 이러한 높은 관세율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여 대외적으로 보호 수준이 과다하는 부정적인 인식만 남길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관세율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농산물에 대한 높은 기본관세율과 FTA 협정세율 간의 관세율 차

이, 그리고 이로 인한 농산물 품목의 무역전환 효과 등을 감안하여 기본관세율 구조를 개선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중심관세율 체계에서 예외로 운용하고 있는 섬유 및 가죽제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심관세율 8%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섬유 및 가죽제품은 예상대로 아세안, 중국, 베트남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다. 한·아세안 FTA를 통해 수입되는 섬유 및 가죽제품의 비중은 2015년에는 26.2%까지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19.5%였다. 2016년에 새롭게 한·중 FTA를 통해 12.8%를, 한·베트남 FTA를 통해 9.8%의 섬유 및 가죽제품이 수입되었다. 한·아세안 FTA에서 섬유 및 가죽제품의 93.1%가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고 있다. 향후에도 이들 FTA 체결 국가들로부터의 섬유 및 가죽제품은 꾸준히 수입될 것으로 여겨진다.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한 현재의 고관세 정책은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한 높은 기본관세율과 FTA 협정세율 간의 관세율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한 무역전환효과 등을 감안하여 기본관세율 구조를 개선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수송장비 산업에서는 거의 한·EU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수송장비 비중이 매우 높았다. 2016년 기준으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수송장비가 약 51.9%인데, 이 중에서 39.2%가 한·EU FTA를 통해 수입되고 있다. 2015년에는 이 비중이 43.2%에 이르기기도 하였다. 산업별 분석에서 특정 FTA의 수입 비중이 이처럼 높은 경우는 없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일본과의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참고로 한·미 FTA를 통해 수입되는 수송장비의 수입 비중은 9.8%다. 수송장비와 달리 제1차 금속제품의 경우에는 특정



B5변형/ 171면
2017. 12

FTA가 아닌 여러 FTA들로부터 수입되어 특별히 수입이 편중되지 않은 산업도 있었다.

그리고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계류, 전기 및 전자기기 품목은 EU와 미국에서 주로 수입되는데,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한·중 FTA가 2015년 12월에 발효되어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하였지만, 2016년 한 해 자료만을 보았을 때, 한·중 FTA 발효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산업이 다수 눈에 띈다. 전기 및 전자기기, 금속제품, 비금속광물, 화학제품, 섬유 및 가죽제품 등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추후에도 한·중 FTA가 우리나라 기본관세율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다수의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2016년 기준 산업별 FTA 실적관세율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지금 중심관세율을 8%에서 5%로 인하할 경우와 향후 FTA 관세인하 일정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중심관세율을 5%로 인하할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산업별 FTA 실적관세율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자료로

사용할 때 장점은 2016년 기준으로 FTA별로 특정 산업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실제 관세율을 모형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적관세율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FTA 체결로 인해 모든 수입품에 FTA 협정세율인 무세(0%)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산업별, FTA별로 FTA 협정세율 적용 비율이 다양해 일률적인 적용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현재 다수의 FTA가 발효되었지만, 이처럼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산업별, FTA별로 다양한 상황에서 중심관세율 인하로 인한 무역전환효과 완화 등으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FTA 관세인하 일정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중심관세율을 낮추는 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모형 설정의 한계로 인해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산업별, FTA별로 다양한 상황에서 중심관세율 인하효과가 모형 분석대로 현실에서도 그대로 반영될지는 의문이다.

또한 중심관세율 인하로 인해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 감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이들 국가들의 후생이 감소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후생이 증가하는데 이 역시도 한·중 FTA가 2015년 12월에 발효되어 한·중 FTA에 따른 교역효과가 이번 분석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가 이제 막 발효되어 2016년 한 해만 볼 수 있었지만 한·중 FTA가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FTA들에 비해 향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한·GCC FTA와 한·일 FTA가 이루어질 경우를 분석하였다. 한·GCC FTA 체결은 곧 우리나라가 전체 원유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FTA들과의 관세

인하 일정이 마무리되고 추가로 한·GCC FTA가 체결되어 원유 관세가 무세가 적용되면 세수 감소 보전 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사회적 후생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GCC FTA가 체결된 이후 중심관세율을 인하하면 사회적 후생과 국내총생산이 약간의 개선되었지만 그 효과는 작았다. 따라서 관세율 정책 측면에서는 한·GCC FTA 체결은 긍정적인 측면이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거대 경제권 중에서 아직 일본과의 FTA가 중요한 사안으로 남아 있다. 한·일 FTA도 다른 FTA들과의 관세인하 일정이 마무리되고 한·일 FTA를 체결한 이후 중심관세율 인하를 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분석들보다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경제권들과의 FTA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중심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을 통해 다수의 FTA가 체결되어 발효된 상황에서 FTA 협정세율이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난 10년 동안의 전체 수입액 자료를 활용하여 FTA별, 산업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중심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FTA 관세인하 일정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낮추는 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러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기초가 될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 FTA가 더 성숙해지고, 또한 한·일 FTA 논의가 시작되면 이와 같은 분석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7-06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관세율 체계 분석 연구』의 요약 및 정책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8-3

> 미국/캐나다

[미국-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안 승인]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8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에는 25%의 관세를,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최종 서명함¹⁾
 - 이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무역적자 해소 및 국가 안보 증진 목적으로 높은 세율로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도입하는 것임²⁾
 - 군함, 군용기, 군사시설 등의 제작 시 철강, 알루미늄이 사용되며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 무역적자 발생으로 미국 철강산업의 침체 및 일자리 감소의 부작용도 존재함
 - 위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는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됨

- 철강의 경우 수입가격의 25%만큼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며, 알루미늄의 경우 수입가격의 10%만큼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함
 -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은 탄소합금 판재류(Carbon and Alloy Flat Product), 탄소합금 원형강류(Carbon and Alloy Long Products), 탄소합금 파이프 및 튜브(Carbon and Alloy Pipe and Tube Products), 탄소합금 반제품(Carbon and Alloy Semi-finished Products), 스테인레스(Stainless Products)임³⁾
 - 10%의 관세가 부과되는 알루미늄은 가공되지 않은 알루미늄(unwrought aluminum), 알루미늄 봉(aluminum bars, rods, and profiles), 알루미늄 선(aluminum wire), 알루미늄판(aluminum plate, sheet, strip), 알루미늄호일(aluminum foil(flat rolled products))임⁴⁾
-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25%의 철강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면제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관세 면제국에 대해 수입쿼터를 제한할 여지가 있음을 언급함⁵⁾
 - 우리나라 외에 캐나다, 멕시코,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EU국이 철강에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제외됨

1)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us-president-trump-imposes-tariffs-on-steel-and-aluminum-products-mexico-and-canada-excluded>, (접속일자: 2018.03.30.)

2) 미국 산업통상국(U.S. department of Commerce),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18/02/secretary-ross-releases-steel-and-aluminum-232-reports-coordination>, (접속일자: 2018.04.01.)

3) 미국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esidential-proclamation-adjusting-imports-steel-united-states-2/>, (접속일자: 2018.03.30.)

4) Ibid.

5) Ibid.

- 이 중 캐나다, 멕시코, 호주, 아르헨티나, 독일, 우리나라는 미국의 철강 수입량이 많은 국가며, 미국의 전체 철강수입량 중 50% 이상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이번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면제 발표는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캐나다-2018년 예산안 발표]

- 캐나다 재무장관은 2018년 2월 27일 과세 형평성 제고, 경제성장, 중산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2018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2018년부터 적용

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시함⁶⁾

- 캐나다는 수년간 중산층 강화 및 캐나다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를 지속해옴
- 각 세법개정 항목은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1. 법인세

- 법인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소규모법인의 경감세율 인하, 소규모법인에 적용되는 경감세율 혜택 제한, 클린에너지 지원을 위한 가속상각 확대 등을 제안함

[그림 1] 수동자산 보유금액별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 기준금액

(단위: 캐나다달러)

	Business Income		Passive Assets		
	1,000,000(*)/2,500,000(**)	1,500,000(*)/3,750,000(**)	2,000,000(*)/5,000,000(**)	2,500,000(*)/6,250,000(**)	3,000,000(*)/7,500,000(**)
50,000					0
75,000			NOT AFFECTED		0
100,000					0
200,000				125,000	0
300,000			250,000	125,000	0
400,000		375,000	250,000	125,000	0
500,000		375,000	250,000	125,000	0

Note: Assumes that the corporation has less than \$10 million of taxable capital.
 (*) Assuming a five-per-cent rate of return.
 (**) Assuming a five-per-cent rate of return.

출처: 캐나다재무부, "Tax Measures: Supplementary Information," Table 3, 2018.02.27.

6) 캐나다 재무부, <https://www.budget.gc.ca/2018/docs/download-telecharger/index-en.html> (접속일자: 2018.03.16.)



- 소규모 법인에 적용하는 경감세율을 2018년부터 10%로 2019년부터 9%로 인하함
 - 소규모법인은 연간 사업소득이 50만캐나다달러 미만인 법인으로, 일반기업의 법인세율은 15%인 반면 소규모 법인에 적용하는 경감세율은 10.5%임

- 소규모 법인은 사업소득의 50만캐나다달러까지 경감세율이 적용되나, 수동소득에 따라 경감세율 적용구간을 축소할 것을 제안함
 - 이는 고소득 개인 납세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수동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 5만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기준이 인하되며, 수동소득이 15만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경감세율은 적용되지 않음
 - 예로, 연간 수익률을 2%로 가정 시 수동 자산 보유액이 7,500만캐나다달러인 경우, 연간 수익률을 5%로 가정 시 수동 자산 보유액이 3천만캐나다달러인 경우 경감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가속상각이 허용되는 클린에너지 장비 구입기한을 기존 2020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함
 - 현행 규정에서는 2020년까지 클린에너지 생성 및 전환을 위한 장비 투자 시, 구입연도에 투자금액의 50% 비용상각을 허용함

2.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근로장려금 인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반려동물 관련 비용 확대, 신탁의 신고의무 부여 등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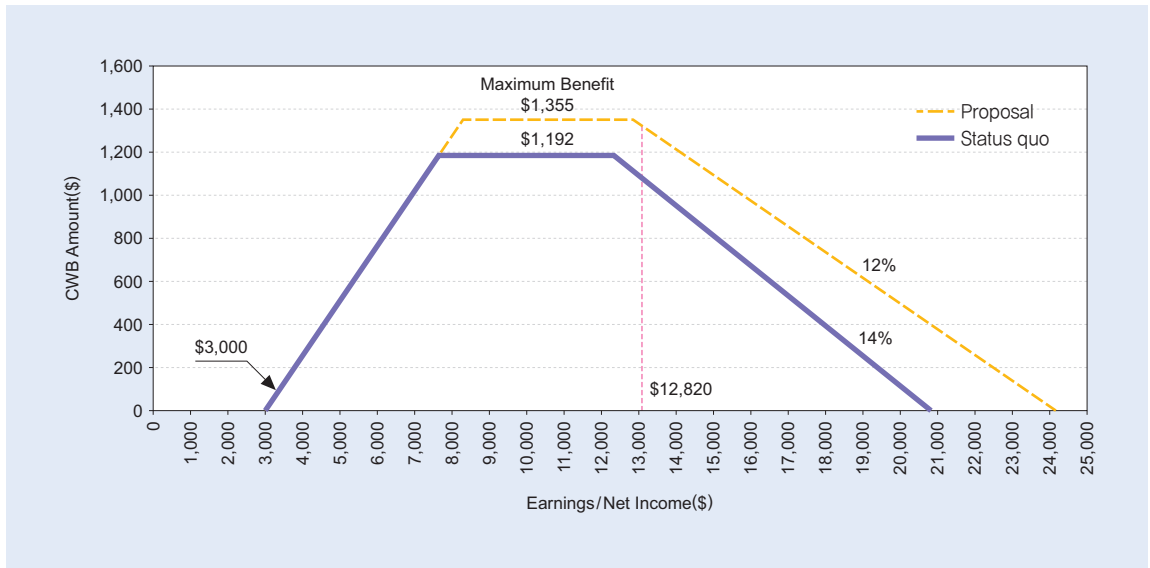
- 근로장려금(Working Income Tax Benefit)의 최대 수령가능금액 및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근로장려금 혜택 대상을 확대함
 - 캐나다 재무부는 2017년 가을 경제성명을 통해 근로장려금에 추가적으로 5억캐나다달러의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음
 -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수령가능금액을 기존 1,192캐나다달러에서 1,355캐나다달러로 인상하였으며,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소득기준 금액을 12,820캐나다달러로 상향할 것을 제안함⁷⁾
 - 또한, 기존에는 소득금액이 2만 1천캐나다달러인 납세자까지 근로장려금 혜택이 주어졌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연간 소득금액 2만 4천캐나다달러까지 근로장려금 혜택이 주어짐⁸⁾
 - 근로장려금 인상안은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7)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신고자 기준이며, 부부합산신고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개인신고자의 경우 기존 2,165캐나다달러에서 2,355캐나다달러로 근로장려금 최대 수령가능 금액을 상향함

8)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신고자 기준이며, 부부합산신고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개인신고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혜택이 주어지는 소득금액 기준은 기존 3만 2천캐나다달러에서 3만 6천캐나다달러로 인상됨

[그림 2] 캐나다의 근로장려금 인상안(부양가족이 없는 개인신고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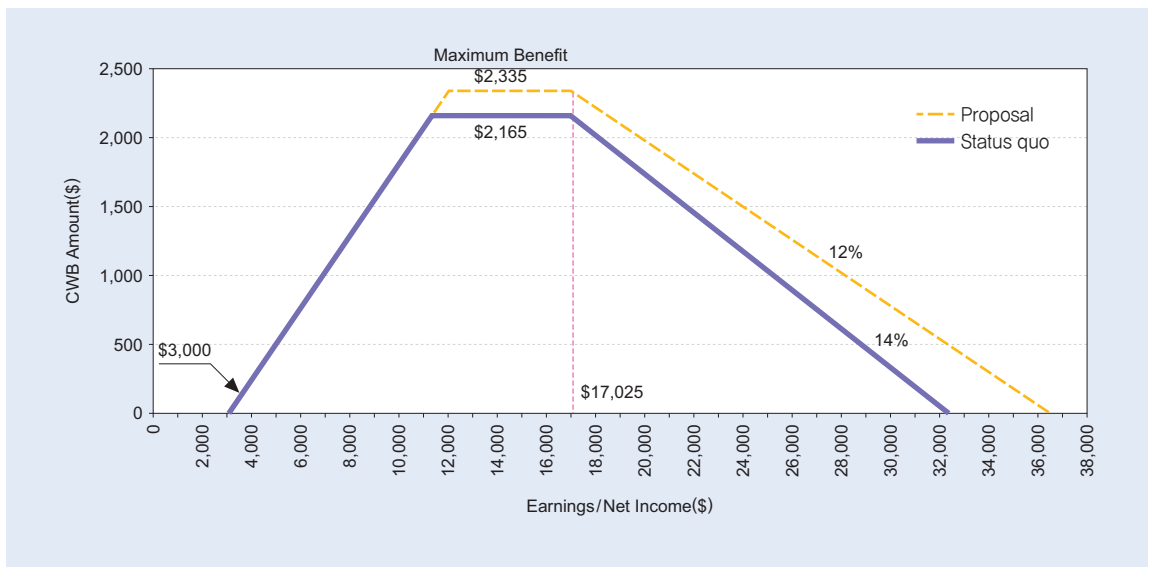
(단위: 캐나다달러)



출처: 캐나다재무부, "Tax Measures: Supplementary Information," Chart 1, 2018.02.27.

[그림 3] 캐나다의 근로장려금 인상안(가장, 부부합산 신고자 기준)

(단위: 캐나다달러)



출처: 캐나다재무부, "Tax Measures: Supplementary Information," Chart 2, 2018.02.27.



-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를 위한 특별히 훈련된 반려동물의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 트라우마, 야경증과 같은 정신장애가 있는 자에게 제공되는 특별히 훈련된 동물만 해당됨
 - 단순한 심신안정을 위한 반려동물 비용 및 특별히 훈련되지 않은 반려동물의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신탁의 경우 2021년부터 신탁인 정보, 신탁 수익자, 신탁 설계인의 정보를 매년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할 것을 제안함
 - 신탁 수익자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현행 규정에서는 신탁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나 신탁 수익자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음
 - 단, 신탁이 설립된 지 3개월 미만이거나 총자산이 5만캐나다달러 미만인 경우 등 특정신탁의 경우 신탁 수익자 관련 정보보고 의무가 면제됨

3. 소비세

- 소비세 개정안으로 투자유한회사에 파트너가 제공한 관리 및 행정서비스는 공정가치에 따라 판매세(GST/HST)를 부과할 것을 제안함
 - 캐나다 정부는 2017년 9월 8일 투자유한회사에 제공한 관리 및 행정 서비스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초안을 발표하였고, 이번 예산안에서는 공정가치에 따라 판매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규정함
- 담배에 대한 소비세율은 5년마다 물가인상률에 따라 인상하던 것을 매년 인상하고, 담배 200개비당 추가 1캐나다달러를 부과할 것을 제안함
- 개인사용 목적의 대마초에 대한 소비세는 종량세 및 증가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며, 과세율 및 주정부와 세수배분안은 2017년 12월에 발표한 내용을 대부분 차용함⁹⁾
 - 2017년 12월 발표에서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마초에 대한 소비세는 1g당 1캐나다달러를 초과

〈표 2〉 캐나다의 개인용 대마초 과세방안

(단위: 캐나다달러)

	연방세율(둘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함)		주·지방정부의 추가 세율(둘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함)	
	연방단일세율	증가세	연방단일세율	증가세
Flower	0.25/gram	제품 가격의 2.5%	0.75/gram	제품가격의 7.5%
Trim	0.075/gram		0.225/gram	
Seed	0.25/seed		0.75/seed	
Seeding	0.25/seeding		0.75/seeding	

출처: 캐나다재무부, "Tax Measures: Supplementary Information," Table 5, 2018.02.27.

9) 2017년 12월에 발표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캐나다 대마초 과세 및 세수배분 관련 주정부와 합의한 내용 발표」, 2018.02.15.에 기술되어 있음

할 수 없고, 총세수 중 75%는 주·지방정부에, 25%는 연방정부에 배분할 것을 발표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 유럽

[네덜란드-조세회피 및 탈세 방지 패키지 발표]

- 네덜란드는 2018년 2월 23일 조세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패키지를 발표함¹⁰⁾
 - 이번 조치는 EU 조세회피 방지 지침(Anti-Avoidance Directive)의 일환으로 네덜란드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의 합의를 거쳐 발표되었으며, 2018년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계획임
- 이번 조세회피 및 탈세 방지 패키지에는 이자비용 공제제한, CFC제도, 혼성불일치 해소, 조세조약 등 세법 남용 방지, 지주회사의 실질 요건, 이전가격 규정 등이 포함됨
- 이자비용공제제한(earning stripping rule)과 관련하여서는 EU지침에 따라 EBIDTA¹¹⁾의 30%를 한도로 이자비용 공제를 허용함
 - EU지침에 따라 공제가능한 이자비용의 한도를 EBIDTA의 30%로 제한하는 한편,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예외는 허용하지 않음
 - EU지침에서는 3백만유로 이하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공제를 허용할 것을 제시하였

으나, 네덜란드는 공제 허용 금액을 1백만유로로 함

- 2020년에는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한 최소 자본요건을 도입할 계획임

- EU지침에 따라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규정을 도입하기로 함
 - CFC규정이 적용되는 해외 자회사는 ① 네덜란드 거주자에 의해 해당 회사 지분이 50%를 초과하여 소유되고, ② 해당 해외 자회사의 적용 세율이 네덜란드 적용 세율보다 낮아야 함
 - 다만 위의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실질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CFC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연간 지급 총급여액이 1십만유로 이상이며 최소 24개월 이상 사용 가능한 사무실을 보유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CFC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 해소와 관련하여서는 EU 지침을 따르되, 2018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9년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는 조세조약에 계약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약상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도입할 계획임

10) Netherlands; European Union; OECD-Council of Ministers agrees on package to combat tax avoidance and tax evasion (28 Feb. 2018), News IBFD.

11)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s and amortizations.



- 조세조약 및 내국세법 남용과 관련하여서는 조세피난처 등으로의 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와 조세조약상 남용방지규정 도입 등의 조치를 계획함
 - 직간접적으로 저세율국가 또는 조세피난처에 지급되는 이자, 배당, 사용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을 2021년부터 보다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며, 관련 법안은 2019년 발의할 예정임
 - 네덜란드의 조세조약에 남용방지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며, 관련 방안을 2018년 중 의회에 제출할 계획임
- 지주회사의 실질요건과 관련해서는 실질요건(substance requirement)을 더욱 강화하여 적용하고 해외에 소재한 지주회사 중 실질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교환 등의 방안을 계획함
 - 지주회사의 실질요건 중 일부는 상기 CFC규정에서 논의한 급여와 사무실 요건 등을 포함할 예정임
 - 또한, 해외 지주에 대한 사전예규(advance ruling) 발급과 경영참가면제(participation exemption) 적용 요건도 보다 강화할 계획임
- 이전가격과 관련하여서는 2017년 OECD 이전가격 지침을 준용하여 현행 네덜란드 이전가격규정을 수정 및 보완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벨기에-공정세 과세 위헌 판결 및 폐지]

- 벨기에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는 2018년 3월 1일 공정세 과세는 위헌이기 때문에 2019년부터 공정세(Fairness Tax) 과세를 폐지하도록 규정함¹²⁾
 - 공정세는 2013년부터 재정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자비용 공제 및 이월결손금 공제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 지급한 배당금액의 5.15%만큼 과세하는 것임
 - 단, 기업의 R&D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특허소득, 투자금액, 배당소득 공제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에는 공정세를 적용하지 않음
- 2017년 5월 17일 유럽 사법재판소에서도 벨기에의 공정세 과세는 위헌이라 판결한 바 있으며, 벨기에 헌법재판소도 공평세는 헌법 규정상 공평성 요건을 저해하기 때문에 공정세 과세제도를 폐지함¹³⁾
 - 공정세 과세는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를 소득공제하는 EU의 '모회사-자회사 지침' 제4조를 위반함
 -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재배당하는 경우 배당지급액에 대해 공평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모회사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5% 이상의 세율로 과세됨

12) Belgium—Constitutional Court: fairness tax nullified as of assessment year 2019 (02 Mar. 2018), News IBFD.

13)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belgian-constitutional-court-annuls-fairness-tax-limits-recovery-of-unduly-paid-tax>, 접속일자: 2018.03.30.

- 공정세 과세는 특허소득, 투자금액, 또는 배당소득 공제 시에는 적용되지 않아 특허소득 또는 투자금액이 적은 기업의 공정세 부담이 더 커지는 불평등이 발생함
- 벨기에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납부한 공정세 과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벨기에 모회사가 지급받은 배당금을 재배당한 경우에 한해 환급을 허용함
 - 벨기에 기업이 EU회원국에 거주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다시 재배당한 경우에 한해 환급신청을 허용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 승객의 연령이나 구성, 운항 취소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항공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탑승객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2세 미만의 유아 또는 운항 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
 - 스웨덴 내 공항에 중간 기착(transit)하거나 24시간 이내에 다른 비행기로 경유(transfer)하는 승객일 경우
 - 항공기 결함, 기상 악화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해 비행이 취소된 경우에도 항공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스웨덴-항공세 과세 예정]

- 스웨덴에서는 2018년 4월 1일부터 항공세(flight tax) 과세가 시행될 예정임¹⁴⁾
 - 2017년 11월 30일자로 통과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항공세 시행 예정일이 2018년 4월 1일에 도래함
 - 항공기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됨
- 항공세는 스웨덴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 운항에 대해 승객당 일정 금액으로 산출됨
 - 스웨덴 소재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 운항에 대하여 운항거리에 따라 승객 1인당 60, 250 또는 450 스웨덴크로네에 달하는 항공세가 차등 적용됨

14)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3-15_se_1.html&WT.z_nav=Navigation, 접속일자: 2018.03.30.)



[영국-상호합의절차에 대한 과세당국 지침 발행]

- 영국 국세청(HMRC)은 조세조약 체결 국가와의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에 대한 지침(statement of practice)을 2018년 2월 20일자로 발행함¹⁵⁾
 - 영국은 BEPS 프로젝트¹⁶⁾에서와 같이 국제적 조세분쟁 해결 및 이중과세 방지 장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영국 국세청은 이번 지침을 통해 국제조세 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의 목적과 추진 과정 및 합의결과 적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1. 상호합의절차 신청

- 조세조약 체결 일방 국가의 과세처분이 조약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에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 과거 영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납세자 거주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최근의 조세조약에서는 어느 일방 국가에서든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상호합의절차 신청은 영국의 국내법상 조세분쟁 해결 절차에 의해 제약받지 않음
 - 일반적인 조세불복 사안에서 과세처분 금액의 납부의무는 상호합의절차 종결시까지 유예될 수 있음

- 납세자는 영국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 내용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 영국 국세청은 별도의 지침¹⁷⁾을 통해 상호합의절차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내역을 제시하고 있음
 - 일부 조세조약에서는 상호합의절차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정보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음
- 영국 세법상 상호합의절차는 과세대상기간 종료 후 6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신청기한을 적용함
 - 영국 세법 규정상 상호합의절차는 과세대상기간 종료 이후 6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할 것을 원칙으로 함
 - 그러나 영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쟁점 과세처분에 대한 최초 통지가 있는 뒤 3년 이내에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당초 과세대상기간 종료 이후 6년이 지난 뒤 과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 신청기한은 국내법상의 기한을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옴

2. 상호합의절차 이행 및 후속 조치

- 영국 과세당국은 상호합의절차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자국의 일방적 조치 또는 양국 합의 절차 이행 여부를 결정함
 - 영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에

15) 영국 정부(<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tatement-of-practice-1-2018/statement-of-practice-1-2018>, 접속일자: 2018.03.30.)
 16) Action 14 'Making Dispute Resolution more Effective' of the Base Erosion Profit Shifting(BEPS) project
 17) Appendix B of INTM 423056

- 위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자국의 일방적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만약 영국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일 경우에는 조약 상대방 국가와의 상호 합의절차로 이행하여 관련 논의를 개시함
-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합의 및 이에 대한 납세자 확인을 거쳐 상호합의결과가 확정되며, 상호합의 결정시 납세자는 중재(arbitration)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음
 -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합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시함
 - 납세자가 이에 동의하면 양국의 당국 간에 서면 합의문을 확정하고 이를 납세자에게도 송부함
 - 만약 상호합의절차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결정에 따라 관련 조세조약상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음
 - 영국은 조세조약에 중재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함
 - 상호합의 확정 시 과세처분 취소 등의 후속 조치(relief)가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별도의 기간이 허용될 수도 있음
 - 영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에 의해 확정된 사안은 기타 법령에 불구하고 그대로 효력이 발생함
 - 상호합의 확정에 따른 조치는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 세금 환급, 기타 과세변경 처분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이를 위해 영국 납세자들의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함
 - 쟁점 사안과 관련된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상호합의결과 통지 이후 1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음
 - 일례로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 또는 연결그룹 결손 공제 기한 도과시 적용 가능
-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오스트리아-부가가치세 일부 경감 및 유자녀 세액공제 법안 발의]

- 오스트리아 정부는 숙박업종에 부가가치세 일부 경감 및 유자녀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관련 법안을 발의함
 - 오스트리아 정부는 숙박업종(accommodation services)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적용에 관한 개정안을 2018년 2월 28일자로 국회에 제출함¹⁸⁾
 - 오스트리아 정부는 유자녀 가족을 위한 세액공제 방안을 2018년 1월에 발표하였으며, 2018년 3월 2일자로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 착수함¹⁹⁾

18)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at_20180312_1042.html&WT.z_nav=Navigation: 2018.3.30.)
 19)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at_20180306_1357.html&WT.z_nav=Navigation, 접속일자: 2018.03.30.)
 Kleinezeitung(http://www.kleinezeitung.at/politik/innenpolitik/5380295/Tuerkisblauer-Familienbonus_1500-Euro-pro-Kind-vorausgesetzt-man?offset=125&page=4, 접속일자: 2018.03.30.)



- 부가가치세 개정안에 따라 숙박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이 기존의 13%에서 10%로 낮아질 예정이다
 - 오스트리아의 관광업 경기 진작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로서,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개정 전에는 숙박업종에 대하여 13%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이 적용되고 있었음
 - 오스트리아의 일반 부가가치세율은 20%임²⁰⁾
 - 다만 숙박업체가 제공하는 조식 서비스에 대해서는 10%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개정안에 따라 조식 서비스뿐만 아니라 숙박업 전체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함
- 유자녀 가족을 위한 세액공제 도입에 따라 개인납세자는 18세 미만 자녀당 연간 1,500유로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동 제도는 오스트리아를 보다 가족친화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개인납세자는 연간 최대 1,500유로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18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 연간 500유로의 세액공제가 가능함
 - 동일 자녀에 대한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세액공제액을 부모 사이에 나누어 신청할 수는 있음

- 납세자의 소득금액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함
- 납세자와 그 자녀는 오스트리아에 생활근거지 및 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함
- 동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감면이 반영된 이후의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며, 공제부족액을 이월하거나 세액을 환급하지는 아니함
 - 따라서 산출세액이 충분히 많지 않을 경우 동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가능치보다 줄어들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 아시아

[대만-세법개정안 확정]

- 대만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과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확정함²¹⁾
 - 2017년 9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이번에 확정된 것임
- 2018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을 17%에서 20%로 3%p 인상함
 - 단, 과세표준이 50만대만달러 미만인 기업의 법인세율은 2018년 18%, 2019년 19%, 2020년부터 20%로 점진적으로 인상함
- 그 밖에 법인세 측면에서는 개인소유 기업에 대한 도관간주규정이 도입되고, 미배당 유보소득에 적용

20)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at_s_007.html&WT.z_nav=Navigation, 접속일자: 2018.03.30.)

21) EY, "Taiwan enacts tax reform proposals," 2018.1.25.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taiwan-enacts-tax-reform-proposals>(접속일자: 2018.03.19.) 및 KPMG,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tw/pdf/2018/02/tw-etax-alert-issue103-eng.pdf>(접속일자: 2018.03.30.)

되는 부가세율(surtax)이 인하됨

- 개인소유기업(sole-proprietorship)과 동업기업(partnership)을 법인세법상 도관으로 간주하여 해당 기업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개인소유기업의 주주와 동업기업의 파트너에 소득세를 과세함
 - 2018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미배당 유보소득에 적용되는 부가세(surtax)가 10%에서 5%로 5%p 인하됨
-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20%에서 21%로 1%p 인상하고, 배당원천징수세에서 차감하던 미배당 유보소득에 대한 부가세(surtax) 공제를 불허함
 - 현재 미배당 유보소득에 부과된 부가세(surtax)를 배당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고 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배당부터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 원천징수세액에서 과거 납부한 미배당 유보소득에 대한 부가세(surtax)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개인소득세 측면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인 45%의 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기본소득공제와 유치원에 대한 교육비소득공제 금액을 인상함
 - 현행 5%, 12%, 20%, 30%, 40%, 45%의 6단계 누진세율에서 45% 최고세율을 폐지하고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개정함
- 기본소득공제 금액을 9만대만달러에서 12만대만달러로 인상함
 -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2만 5천대만달러에서 12만대만달러로 9만 5천대만달러 인상함
 - 개정 규정은 2018년부터 적용됨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를 개인단계의 종합소득세에서 차감해주는 배당세액공제(imputation tax)를 폐지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싱가포르-2018년 예산안 발표]

- 싱가포르 재무부는 2018년 2월 19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의 개정안이 포함된 2018년 예산안을 발표함²²⁾
 - 특히 부가가치세법 측면에서는 세율을 인상하고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됨
- 법인세법상 연구개발소득공제율 인상, 지적재산권 등록비용 및 취득·투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²³⁾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됨
 -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격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150%에서 250%로 인상함
 - 개정안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22) 싱가포르 국세청, "Budget 2018—Overview of Tax Changes," <https://www.iras.gov.sg/irashome/News-and-Events/Singapore-Budget/Budget-2018—Overview-of-Tax-Changes/>, 접속일자: 2018.03.30. 및 IBFD, "Budget for 2018—summary," 2018.2.21.

23)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싱가포르 내 설립된 기업이 설립 후 3년 동안 세액의 일정비율을 감면받는 제도이며, 지주회사 등을 포함한 일부 업종에 속한 기업이나 주주가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됨



-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등록비용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비율을 100%에서 200%로 인상함
- 지적재산권에 대한 투자 장려를 위하여 지적재산권 취득이나 투자비용 중 10만싱가포르달러까지 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비율을 기존 100%에서 200%로 인상함
-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비율을 조정하여, 기존 10만싱가포르달러까지의 과세소득에 적용되던 감면비율을 100%에서 75%로 인하함
 - 기존 10만싱가포르달러부터 20만싱가포르달러까지 과세소득에 적용되던 감면비율은 50%로 동일하게 유지됨
- 법인세법상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비용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법인세환급제도(tax rebate)의 일몰을 2019년까지 연장하면서 환급비율은 현행보다 인하함
 - 싱가포르의 법인세부담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인세환급제도를 운영 중이며, 2018년부터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일몰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함
 - 2017년 법인세부담액의 50%에 대해 2만 5천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공제²⁴⁾하였으나, 2018년 공제비율 40%에 대해 1만 5천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공제하고 2019년 공제비율 20%에 대해 1만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공제가 허용됨
- 부가가치세율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현행 7%에서 9%로 2%p 인상함
 - 싱가포르의 1994년 4월 1일 3%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그 후 2003년 4%, 2004년 5%, 2007년 7%로 3차례 인상함
- 해외사업자가 국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목적에서 대리납부제도와 해외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함
 - 해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과세당국에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방안이 포함됨
 - 한편, 해외사업자가 국내 개인에게 디지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외사업자가 싱가포르 과세당국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당국에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안이 포함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싱가포르-이전가격문서화 규정 고시]

- 2018년 2월 22일 싱가포르 정부는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을 고시함²⁵⁾
 - 고시된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은 2019년부터 적용됨
- 매출액이 1천만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한 싱가포르 기업은 그룹 내 이전가격 정책과 사업에 관한 내용

24) 싱가포르 국세청, "Corporate Tax Rates, Corporate Income Tax Rebates, Tax Exemption Schemes and SME Cash Grant,"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Learning-the-basics-of-Corporate-Income-Tax/Corporate-Tax-Rates-Corporate-Income-Tax-Rebates-Tax-Exemption-Schemes-and-SME-Cash-Grant/#title3>, 접속일자: 2018.03.30.

25) 싱가포르 국세청, "Introduction to Transfer Pricing,"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Working-out-Corporate-Income-Taxes/Specific-topics/Transfer-Pricing/Introduction-to-Transfer-Pricing/>, 접속일자: 2018.03.30.

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함

- OECD BEPS Action 13에서 권고한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의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음
- 납세자가 속한 기업그룹의 사업 개관과 싱가포르 내 사업현황, 기능분석과 이전가격정책 분석을 포함해 관계회사와의 거래와 납세자의 사업내역 등을 보고함
- 세무신고기한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까지 이전가격문서를 구비하면 되나, 싱가포르 국세청이 요청 시 30일 이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납세자는 거래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이전가격문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인도네시아-과소자본세제 규정 도입]

-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채가 자본²⁶⁾의 4배를 초과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소득에 가산하는 내용의 과소자본세제 규정을 도입하고, 해외 사채의 경우 관련 세부내역을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함²⁷⁾
 - 과소자본규정은 2016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었으며, 불공제되는 이자비용의 계산내역과 관련 해외 부채의 세부내역은 2017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보고할 의무가 있음
 - 불공제된 이자비용은 실제 이자지급일이나 만기일에 배당으로 간주됨
 - 특히, 해외 사채 형태의 부채는 개별 신고서식을 통해 세부내역을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고 관련 이자비용은 전액 불공제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일본-저부가가치 영역에 대한 이전가격 간소화 지침 발표]

- 일본 국세청은 2018년 2월 23일 저부가가치 그룹내부용역의 이전가격에 대한 운영지침을 발표하고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²⁸⁾
 - BEPS Action 8-10의 권고에 따라 저부가가치 그룹내부용역 제공 시 간소화 접근방법을 허용하고, 원가의 5% 이윤을 가산하여 거래하면 세무상 정상가격으로 인정함
 - 사례에 따르면 입증간소화 제도는 무형자산 거래, 중요한 리스크를 포함한 거래, 연구개발, 제조, 판매, 광고, 금융, 보험이나 천연자원 채굴 등에는 적용할 수 없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26) 자본은 납입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회계상 자본으로 계상된 항목을 포함함
 27) EY, "Indonesia issue debt-to-equity ratio implementing regulation," 2018.3.15.
 28) Deloitte, "New release of the Transfer Pricing Administrative Guidelines by the National Tax Agency," 2018.3., <https://www2.deloitte.com/jp/en/pages/tax/articles/bt/japan-inbound-tax-legal-mar-2018-no27.html>, 접속일자: 2018.03.19.



[중국-조세조약에 대한 해설 지침 발표]

- 중국 국가세무총국(State of Administration of Taxation)은 2018년 2월 9일 고정사업장 판정, 해외 파트너십과 파트너에 대한 혜택 적용, 국제선박 및 항공운송소득의 범위 등을 포함한 조세조약 해설 자료를 공시함²⁹⁾
 - 조세조약 해설 자료는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서비스 고정사업장의 판정 시 조세조약에 “12월 중 6월” 이상의 기간으로 기재된 경우도 “12월 중 183일” 이상의 기간으로 해석함
 - 조세조약상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존재하면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규정에서 중국 과세당국은 6월을 183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힘
- 국제 선박 및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국제 선박 및 항공운송 소득에 포함되는 거래와 포함되지 않는 거래를 열거함
 -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 등을 포괄적으로 임대하는 포괄임대, 항해용선계약, 기간용선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국제운송소득으로 분류함
 - 반면, 나용선계약, 항공기나 선박만 임대하는 단순임대, 컨테이너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제운송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음

- 중국 내 설립된 파트너십의 비거주자인 파트너나 해외 파트너십에 투자한 비거주자인 파트너가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중국내 설립된 파트너십의 비거주자인 파트너는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중국 원천소득에 대해 비거주자인 파트너는 거주국과 중국 간 체결된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반면, 중국 거주자가 해외에 설립된 파트너십의 비거주자인 파트너와 거래 시 일정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해당 파트너는 중국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요건은 중국과 해당 파트너의 거주국 간 조세조약에서 파트너십이 도관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하며, 파트너가 해당 파트너십과 동일 국가에 소재하고 조세조약상 거주자 요건에 부합해야 함
 - 중국-프랑스 조세조약을 포함한 소수의 조세조약만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29) Tax Notes, TAX NOTES INTERNATIONAL Vol 89, Number 910 p. 962, "SAT Clarifies Foreign Partnerships' Rights To Treaty Benefits," 2018,3,5.

[홍콩-2018/19 예산안 발표]

- 2018년 2월 28일 홍콩 정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³⁰⁾

1.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율을 인하하고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하였으며, 현재 4단계 누진세율에서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변경함
 - 현재 2%, 7%, 12%, 17%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에서 2018/19 사업연도부터 2%, 6%, 10%, 14%, 17%의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변경함
 - 현재 4만 5천홍콩달러를 기준으로 세율이 변동하던 것을 2018/19 사업연도부터 5만홍콩달러를 기준으로 세율이 변동하도록 세율구간을 확대함

〈표 1〉 홍콩의 개인소득세율

(단위: 홍콩달러, %)

개정 전		개정 후	
과세표준 구간	현행 세율	과세표준 구간	개정 세율
45,000 이하	2	50,000 이하	2
45,000~90,000	7	50,000~100,000	6
90,000~135,000	12	100,000~150,000	10
135,000 초과	17	150,000~200,000	14
		200,000 초과	17

- 소득공제 항목 중 자녀소득공제 금액과 노부모 부양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장애인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9세까지 자녀에게 적용되는 자녀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출생 시 20만홍콩달러에서 24만홍콩달러로 4만홍콩달러를 인상하였으며, 출생 이후부터 9세까지 현행 10만홍콩달러에서 12만홍콩달러로 2만홍콩달러 인상함
- 노부모부양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9만 2천홍콩달러에서 10만홍콩달러로 8천홍콩달러 인상함
 - 60세 이상이고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부모나 조부모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현행 4만 6천홍콩달러에서 5만홍콩달러로 인상함
 - 60세 이상이고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부모나 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소득공제액을 현행 4만 6천홍콩달러에서 5만홍콩달러로 인상함
- 납세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받을 수 있는 7만 5천홍콩달러의 소득공제 항목을 신설함

2. 법인세

- 기업활동과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채무증권 중 면세대상 증권의 종류를 확대함
 - 연구개발활동을 장려할 목적에서 기업은 연구개발에 사용한 적격비용 중 2백만홍콩달러의 비용은 300%까지 공제하고, 2백만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은 200% 소득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됨
 - 면세대상 증권에 홍콩증권거래소에 등록된 채무증권을 추가하였으며, 그 결과 면세대상이 기존 만기가 7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에서 증권거래소

30) 홍콩 국세청, "2018-19 Budget-Tax Measures," 2018.2.28., <https://www.ird.gov.hk/eng/tax/budget.htm#a01>, 접속일자: 2018.03.19. 및 홍콩 정부, "Reducing Tax Burden on Individuals," 2018.2.28., <https://www.budget.gov.hk/2018/eng/rb.html>, 접속일자: 2018.03.19.



에 등록된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면세됨

- 환경보호 목적에서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비용에 대한 일시 감가상각 규정을 도입하고 현행 전기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면제 규정의 일몰을 2021년까지 연장함
 -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위한 설비투자나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설비투자 비용을 자산으로 계산한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지 않고 지출한 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공제함
 - 전기자동차, 전기삼륜자동차, 전기오토바이의 최초 취득 시 등록세를 면세하는 규정의 일몰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 기타

[이스라엘-비트코인에 대한 과세지침 마련]

- 이스라엘 국세청은 2018년 2월 19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간주하여, 개인소득세, 자본이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발표함^{31) 32)}
 - 가상통화를 현금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판단함
-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한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자본이득세로 과세되며, 사업목적에 갖고 거래한 가상통화에서 발생한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자본이득이나 사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음
 - 자본이득은 25%의 단일세율로, 사업소득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7단계 누진세율로 과세됨
- 사업목적상 거래되는 가상통화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³³⁾를 부과하며, 사적으로 거래되는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
 - 특히 비트코인 채굴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중개인(dealer)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으로 간주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31) Tax Notes, TAX NOTES INTERNATIONAL Vol 89, Number 9 p. 851, "Bitcoin Not a Currency for Purposes of Israeli Tax Law," 2018.2.26.

32) 이번 발표한 내용은 국세청의 해석이므로 법원 판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33) 17%의 부가가치세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임

국제기구

[OECD-Action 14 관련 상호검토 결과보고서 발표]

- OECD는 2018년 3월 12일 BEPS프로젝트 Action 14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체코, 덴마크, 핀란드, 우리나라, 노르웨이, 폴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등 8개국에 대한 제1단계 상호검토 결과보고서를 발표함³⁴⁾
 - Action 14는 BEPS프로젝트 15개 Action 중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에 해당하는 4개의 Action 중 하나로 상호검토(peer review) 대상에 해당함
 - Action 14 외에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Action으로는 Action 5(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 Action 6(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해택의 부여 방지), Action 13(이전가격문서화와 국가별보고서) 등이 있음
 - OECD는 2017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3개국에 대한 제1차 상호검토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Action 14 상호검토는 Action 14의 최소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1단계와 1단계에서 발견한 미비점의 시정 여부를 평가하는 2단계로 이루어지며, 본 상호검토 보고서는 1단계 검토 보고서임
 - 본 1단계 상호검토 보고서는 Action 14의 네 가지

최소기준인 ① 분쟁방지 노력, ② 상호합의절차(MAP)의 이용가능성과 접근성 보장, ③ MAP 사건의 해결, ④ MAP 합의 이행 등에 대한 이행 현황을 평가함

- 상호검토 결과 검토대상국들은 Action 14의 최소기준을 대체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국가별 미비점에 대해서는 상호검토 보고서에 상세한 개선방안을 기술함
 - 검토대상국은 대체로 Action 14의 최소기준에 부합하나, 2개월 이내에 MAP사건 해결 준수, 분쟁방지 노력(폴란드, 체코), MAP 절차에 대한 보다 명료한 안내(체코)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³⁵⁾
- OECD는 2020년까지 1단계 상호검토를 완료하고, 1단계 검토 이후 1년 이내에 2단계 검토를 진행할 계획임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34) OECD

(http://www.oecd.org/tax/oecd-releases-third-round-of-peer-reviews-on-implementation-of-beps-minimum-standards-and-calls-for-taxpayer-input-for-the-fifth-round.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OECD%20releases%20third%20round%20of%20peer%20reviews%20on%20implementation%20of%20BEPS%20minimum%20standards%20on%20improving%20i&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2-03-2018&utm_term=demo, 접속일자: 2018.03.29.)

35) EY([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OECD_releases_third_batch_of_peer_review_reports_on_Action_14/\\$FILE/2018G_01473-181Gbl_OECD%20releases%20third%20batch%20of%20peer%20review%20reports%20on%20Action%2014.pdf](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OECD_releases_third_batch_of_peer_review_reports_on_Action_14/$FILE/2018G_01473-181Gbl_OECD%20releases%20third%20batch%20of%20peer%20review%20reports%20on%20Action%2014.pdf), 접속일자: 2018.03.29.)



[OECD-공통보고기준(CRS) 관련 모델 강제보고규정 발표]

- OECD는 G7의 요청에 따라 2018년 3월 9일 “공통 보고기준(CRS) 의무 회피 방식을 위한 모델 강제 의무보고규정(모델강제보고규정³⁶⁾”을 발표함³⁷⁾
 - CRS는 OECD/G20 국가들의 자동정보교환의 실효성 증진과 금융기관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제정한 표준화된 자동교환 모델로서 금융기관이 매년 과세당국 간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규칙 및 절차를 다룸³⁸⁾
 - 동 모델강제보고규정은 과세당국이 CRS 관련 의무를 회피하는 거래와 “불투명한 구조(Opaque structure)”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임
- 본 모델강제보고규정은 ① 보고 대상 거래나 구조, ② 보고의무자, ③ 보고 대상 정보, ④ 보고 불이행에 따른 처벌 등에 대한 모델 조항과 관련 주석(commentary)을 제시함
- 보고 대상 거래·구조는 “CRS 의무를 회피하도록 설계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래·구조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모든 거래·구조”로 함

- 보고의무자는 보고 대상 거래·구조의 설계자 또는 판매자 그리고 그러한 거래·구조를 수립하는 데 있어 자문을 제공하는 모든 중개인을 포함하되, 특정 국가에서의 보고의무는 그 해당 국가와 연계(nexus)된 중개인으로 함
 - 특정 국가와 연계된 중개인(intermediaries)이라 함은 그 국가의 법률에 따른 거주자, 설립법인뿐 아니라 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함
- 보고 대상 정보는 보고 대상 거래·정보와 관련한 상세내역, 고객 또는 사용자, 그리고 관련 중개인을 포함함
- 강제보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은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 보고의무 이행을 권장하고 불이행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설계할 것을 권고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36) OECD, *Model Mandatory Disclosure Rules for CRS Avoidance Arrangements and Opaque Offshore Structures*, 2018.

37) OECD

(<http://www.oecd.org/tax/exchange-of-tax-information/game-over-for-crs-avoidance-oecd-adopts-tax-disclosure-rules-for-advisors.htm>, 접속일자: 2018.03.29.)

38) 이동규, 『자동정보교환 공통보고기준(CRS)과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의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1, pp. 6~7.

[EU-조세피난처 지정 국가 리스트 업데이트]

- EU는 2018년 3월 13일 EU의 조세피난처 국가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리스트를 업데이트하여 발표함³⁹⁾
 - EU는 조세투명성, 공평과세,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방지 조치 이행 등 3가지 기준을 근거로 조세피난처 국가를 지정하며, 매해 최소 1회 이상 조세피난처 국가 리스트를 업데이트 함⁴⁰⁾

- EU는 이번 발표에서 바레인, 마셜제도, 세인트루시아 등 3개 조세관할지역에 대하여 조세피난처 지정을 철회함⁴¹⁾
 - 이들 국가는 EU에 개선이행 약속을 하였으며, EU가 이를 받아들여 조세피난처 국가에서 “조건부 협력적 국가”로 지정함

- 금번 조치로 EU의 조세피난처 리스트에는 미국령 사모아(American Samoa), 바하마, 괌, 나미비아, 팔라우, 사모아, 세인트키츠네비스(Saint Kitts and Nevis),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9개의 조세피난처 국가가 남게 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39) European Council(<http://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u-list-of-non-cooperative-jurisdictions/>, 접속일자: 2018.03.30.)

40) European Council(<http://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5429-2017-INIT/en/pdf>, 접속일자: 2018.03.30.), p. 15.

41) European Council(<http://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u-list-of-non-cooperative-jurisdictions/>, 접속일자: 2018.03.30.)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집행위, 2018 국가별 보고서(Country Report)¹⁾ 발표(2018.3.7.)²⁾
 - (총평) 경제 회복이 유럽의 노동시장 및 사회적 문제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개혁 이행 노력이 더 필요
 - 실업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했으며 투자가 증가하고 재정도 지속적으로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의 비율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 감소
 - 그러나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공공 및 민간 채무와 같이 잔존하고 있는 취약성을 해결해야 함
 - 유럽 경제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개혁 이행이 더 많이 필요하며 투자, 구조 개혁 및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의 '순순환'에 계속 초점을 두

어야 함

- (이행평가) 지난 국가별 정책 권고에서 논의된 경제·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각 회원국들의 이행 상황을 평가
 - 회원국들은 지난 5월 국가별 정책 권고 발표 이후 개혁을 진행해 왔으며, 2011년 European Semester가 시작된 이래로 적어도 2/3 이상의 권고 사항에서 '일부 진전'을 달성
 - 특히 금융 서비스와 재정 정책 및 재정 거버넌스, 금융 접근 개선, 고용보험법 및 노동 계약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으나, 장기 재정지속 가능성에서는 진척이 느리다고 평가
- (심층검토)³⁾ 지난 11월 경고체계보고서에서 거시경제 불균형⁴⁾ 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12개 회원국들에 대해 심층 검토를 진행
 - 8개국이 불균형, 3개국이 초과불균형 상태로 분석되었으며 해당 회원국에 불균형 모니터링 및 조정을 권고
 - 불가리아, 프랑스, 포르투갈은 작년 초과불균형에서 올해 불균형으로 개선되었으나 특히 불가리아와 포르투갈은 지속가능한 불균형 교정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1) 국가별 보고서는 European Semester의 일환으로, 2017년 11월 발표된 가을 패키지(가을 패키지의 추가적인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동향』, 2017년 하반기, 2017을 참고.)를 통한 EU 차원의 정책 지침을 각 회원국 차원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함. 집행위는 4월 각국의 개혁 프로그램 및 안정화·수렴 프로그램을 토대로 5월 국가별 정책 권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각 국가별 보고서는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

2) 출처: EU 집행위,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8-1341_en.htm

3) 심층검토는 EU의 거시경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감시체계인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Macroeconomic Imbalance Procedure: MIP)의 일환임.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는 특정 회원국, 유로지역, EU 전체의 경제 안전성을 저해하는 거시경제 불균형을 식별, 예방,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 회원국의 거시경제 상황 점검 및 경고, 심층 검토, 정책권고 불이행 국가 제재 등의 절차로 구성됨

4) 거시경제 불균형은 'EU 회원국, EMU, 또는 EU 경제의 적절한 기능에 부작용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거시경제적 변동을 일으키는 추세', 초과불균형은 'EMU의 적절한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불균형'으로 정의. GDP 대비 경상수지,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청년실업률 등 대내외 불균형을 나타내는 14개의 주요지표와 25개의 보조지표를 기초로 평가.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5-6070_en.htm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economic-and-fiscal-policy-coordination/eu-economic-governance-monitoring-prevention-correction/macroeconomic-imbalance-procedure/scoreboard_en

〈표 1〉 심층검토 결과

MIP 구분	국가
초과불균형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이탈리아
불균형	불가리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불균형 없음	슬로베니아

출처: EU 집행위, 국가별 보고서 보도자료, 2018.3.7.

- EU 통계청, 2017년 4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18. 3.7.)⁵⁾
 - 2017년 4분기 유로지역 19개국의 경제성장률(계절조정)은 전 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2.7%이며, EU 28개국의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2.6%로 추계됨
 - (국가별) 에스토니아(2.2%), 슬로베니아(2.0%)가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그리스, 크로아티아(이상 0.1%)가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
 - (요소별) 전 분기 대비 가계 최종소비지출이 유로 지역에서 0.2%, EU에서 0.3% 증가했고, 총고정 자본형성은 모두 0.9%,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각각 0.3%, 0.4%, 수출은 각각 1.9%, 1.7%, 수입은 각각 1.1%, 1.3% 증가

〈표 2〉 유로지역 19개국 및 EU 28개국의 2017년 4분기 경제성장률(계절조정)¹⁾

(단위: % 변화)

국가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17				2017			
	Q1	Q2	Q3	Q4	Q1	Q2	Q3	Q4
벨기에	0.7	0.5	0.2	0.5	1.8	1.5	1.6	1.9
불가리아	0.9	1.0	0.9	0.7	3.7	3.7	3.9	3.5
체코	1.5	2.4	0.6	0.5	3.0	4.6	5.1	5.2
덴마크	2.3	-1.2	-0.8	1.0	4.0	2.2	1.0	1.2
독일	0.9	0.6	0.7	0.6	2.1	2.3	2.7	2.9
에스토니아	1.0	1.7	0.4	2.2	3.9	5.3	4.5	5.3
아일랜드	-3.4	2.7	4.2	:	5.6	6.6	10.4	:
그리스	0.6	0.7	0.4	0.1	0.4	1.5	1.4	1.9
스페인	0.8	0.9	0.7	0.7	3.0	3.1	3.1	3.1

5) 출처: EU 통계청, <http://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8718257/2-07032018-AP-EN.pdf>



〈표 2〉의 계속

(단위: % 변화)

국가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17				2017			
	Q1	Q2	Q3	Q4	Q1	Q2	Q3	Q4
프랑스	0.7	0.6	0.5	0.6	1.2	1.9	2.3	2.5
크로아티아	0.6	0.8	0.7	0.1	3.5	3.6	3.1	2.2
이탈리아	0.5	0.4	0.4	0.3	1.3	1.6	1.7	1.6
키프로스	0.8	0.9	0.9	1.1	3.8	4.0	4.1	3.9
라트비아	1.7	1.3	1.5	0.3	4.2	4.9	6.2	4.7
리투아니아	1.1	0.7	0.5	1.4	4.0	4.1	3.6	3.8
룩셈부르크	-0.5	0.7	1.7	:	3.8	1.9	3.2	:
헝가리	1.5	1.0	1.0	1.3	4.0	3.8	4.3	4.9
몰타	1.0	2.1	1.9	:	6.1	7.7	7.7	:
네덜란드 ²⁾	0.6	1.5	0.4	0.8	2.7	3.8	3.2	3.1
오스트리아	1.2	0.7	0.8	0.8	2.6	2.9	3.5	3.6
폴란드	1.1	1.0	1.2	1.0	4.4	4.3	5.2	4.3
포르투갈	0.7	0.3	0.6	0.7	2.9	3.0	2.4	2.4
루마니아	2.0	1.7	2.4	0.6	5.8	6.1	8.5	7.0
슬로베니아	1.4	1.4	1.2	2.0	4.9	5.4	5.1	6.2
슬로바키아	0.8	1.0	0.8	0.9	3.1	3.4	3.5	3.5
핀란드	1.3	0.6	0.2	0.7	3.1	3.5	2.6	2.8
스웨덴	0.4	1.2	0.8	0.9	1.9	2.6	2.9	3.3
영국	0.2	0.3	0.5	0.4	2.0	1.8	1.8	1.4
EA19	0.6	0.7	0.7	0.6	2.1	2.4	2.7	2.7
EU28	0.6	0.7	0.7	0.6	2.2	2.5	2.7	2.6

주: 1) 슬로바키아는 계절 조정에 달력 조정을 포함하지 않음

2) 달력 조정 자료로부터 계산된 전년 동기 대비 퍼센트 변화

출처: EU 통계청, 2017년 4분기 경제성장률 보도자료, 2018.3.7.

- EU 통계청, 정부기능분류(COFOG)에 따른 2016년 일반정부 재정지출 통계 발표(2018.3.9.)⁶⁾
 - 2016년 기준, EU 정부 지출 중 사회보호 분야가 GDP 대비 1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GDP 대비 사회보호 지출 비중은 국가마다 상이하여 핀란드(25.6%), 프랑스(24.4%), 덴마크(23.4%) 등 8개국은 20%를 상회한 반면 아일랜드(9.9%), 리투아니아(11.2%), 루마니아(11.6%) 등 7개국은 13%를 하회

- 모든 회원국에서 사회보호 분야 지출 중 노령 부문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GDP 대비 노령 부문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그리스(16.0%),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일랜드(3.5%)였음

〈표 3〉 2016년 기능별 일반정부 재정지출

(단위: GDP 대비 %)

	독일	프랑스	영국	EA19	EU28
1. 일반공공행정	5.8	6.1	4.6	6.3	6.0
2. 국방	1.0	1.8	2.0	1.2	1.3
3. 공공질서 및 안전	1.6	1.6	1.8	1.7	1.7
4. 경제활동	3.1	5.6	3.0	4.2	4.0
5. 환경보호	0.6	0.9	0.7	0.8	0.7
6. 주거 및 지역사회개발	0.4	1.1	0.7	0.6	0.6
7. 보건	7.2	8.1	7.6	7.1	7.1
8. 휴양, 문화, 종교	1.0	1.2	0.6	1.1	1.0
9. 교육	4.2	5.4	4.7	4.6	4.7
10. 사회보호	19.3	24.4	15.8	20.0	19.1
10.1 질병 및 장애	3.2	2.8	2.5	2.7	2.7
10.2 노령	9.2	13.5	8.6	10.8	10.2
10.3 유족	1.9	1.5	0.1	1.7	1.3
10.4 가족 및 자녀	1.7	2.4	1.4	1.7	1.7
10.5 실업	1.7	2.0	0.1	1.6	1.3
기타	1.7	2.2	3.1	1.4	1.7
총계	44.2	56.4	41.5	47.6	46.3

주: 프랑스는 잠정치
출처: EU 통계청,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in the EU in 2016, 2018,3,9.

6) 출처: EU 통계청, <http://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8725251/2-09032018-AP-EN.pdf>



- 두 번째로 비중이 큰 분야는 GDP 대비 7.1%를 차지한 보건이며 일반공공행정(6.0%), 교육(4.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GDP 대비 보건 지출은 덴마크(8.6%)가 가장 높았고 스위스(2.2%)가 가장 낮았음
 - GDP 대비 일반공공행정 지출은 그리스(9.2%)가 가장 높았고 불가리아(2.7%)가 가장 낮았음
- GDP 대비 교육 지출은 아이슬란드(7.1%), 덴마크, 스웨덴(이상 6.9%) 순으로 높았고 아일랜드(3.3%)가 가장 낮았음

〈표 4〉 2016년 기능별 일반정부 재정지출

(단위: 총정부지출 대비 %)

	독일	프랑스	영국	EA19	EU28
1. 일반공공행정	13.2	10.8	11.0	13.3	12.9
2. 국방	2.3	3.2	4.8	2.6	2.9
3. 공공질서 및 안전	3.6	2.9	4.4	3.5	3.7
4. 경제활동	7.0	9.9	7.3	8.7	8.6
5. 환경보호	1.4	1.7	1.8	1.7	1.6
6. 주거 및 지역사회개발	0.9	1.9	1.7	1.2	1.3
7. 보건	16.2	14.4	18.3	15.0	15.3
8. 휴양, 문화, 종교	2.3	2.2	1.5	2.3	2.2
9. 교육	9.5	9.6	11.2	9.7	10.2
10. 사회보호	43.6	43.3	38.1	42.1	41.2
10.1 질병 및 장애	7.3	4.9	6.1	5.8	5.9
10.2 노령	20.9	24.0	20.8	22.7	22.1
10.3 유족	4.2	2.7	0.1	3.7	2.9
10.4 가족 및 자녀	3.8	4.2	3.3	3.6	3.8
10.5 실업	3.7	3.5	0.3	3.4	2.8
기타	3.8	3.9	7.5	3.0	3.7

주: 프랑스는 잠정치

출처: EU 통계청,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in the EU in 2016, 2018,3,9.

- EU 의회, 다년도 예산 체계에 대한 결의안 채택 (2018.3.14.)⁷⁾
 - EU 의회는 2020년 이후 다년도 예산 체계(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post-2020)에 대한 지출 및 수입 결의안⁸⁾을 채택
 - (지출) 새로운 다년도 예산 체계는 새롭게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해야 하며 수입 측면의 진전이 병행되어야 함
 - EU 예산은 정치적 우선순위에 부합하고 이주, 국방, 안보, 기후 변화와 같이 모든 회원국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함
 - 구체적으로 연구 프로그램, 교육훈련지원프로그램(Erasmus+), 청년고용계획(Youth Employment Initiative),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투자 강화 등을 제안
 - 지역 개발 또는 농업 예산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우선순위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EU 지출 상한을 EU GNI 대비 1.3%로 인상해야 함
 - (수입) GNI 기반의 직접 기여금을 축소하고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
 - EU 예산 고위급 회의 보고서⁹⁾를 바탕으로, 개정된 부가가치세, 법인세 수입, 금융 거래세, 디지털 부문 세금, 환경세 등 새로운 재원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청
 - 새로운 EU 자체 재원은 GNI 기반의 직접 기여금을 실질적으로 감축(40% 목표)하고 일부 회

원국에만 이익이 되는 모든 환급 및 조정제도를 폐지하며 EU 납세국에 전반적인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Brexit gap'을 커버해야 함

7) EU 의회, <http://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180309IPR99420/funding-europe-s-future-eu-s-post-2020-budget-must-match-policy-goals>

8) 새로운 다년도 예산 체계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 결의안은 2018년 5월로 예정된 집행위 예산안 발표에 앞서 다년도 예산 체계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제공

9) 관련 내용은 2017년 2월 1호 「재정동향」 참고



〈참고〉 다년도 예산 체계(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¹⁰⁾

- 다년도 예산 체계는 5년 이상의 기간¹¹⁾에 대해 EU가 각기 다른 정책 분야에서 해마다 지출할 수 있는 최대 연간 예산을 규율한 것으로, 각 연도 예산은 다년도 예산 체계를 준수해야 함
- (지출) 크게 스마트·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천연자원, 안보 및 시민권, 대외정책, 행정비용 등 5개 분야에 지출됨

2014-2020년 다년도예산체계 분야별 지출

(단위: 승인기준, 십억유로, %)



출처: EU 집행위, EU budget 2016 Financial report,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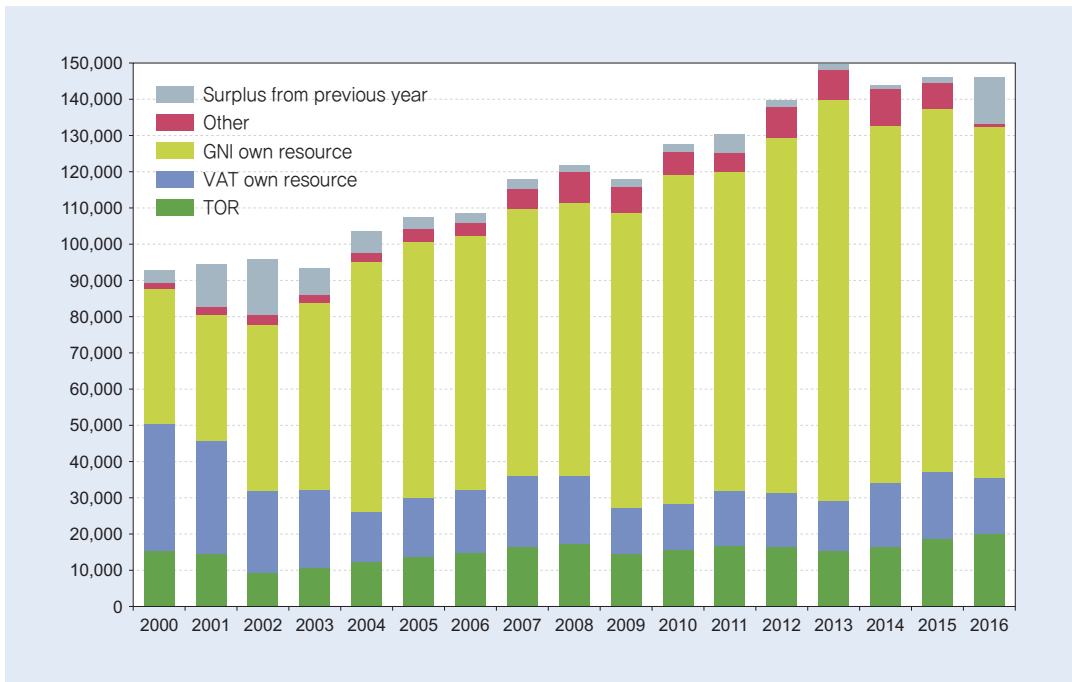
10) EU 집행위, http://ec.europa.eu/budget/mff/index2014-2020_en.cfm

11) 현 다년도 예산 체계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음

- (수입) 크게 전통적 기반의 자체 자원(관세, 설당징수세 등), VAT 기반의 기여금(회원국이 징수하는 부가세의 일정 비율), GNI 기반의 기여금(회원국 GNI의 일정 비율)으로 구성된 자체 자원(own resources)과 기타 수입(other revenue)으로 구성됨

2000-2016년 EU 수입

(단위: 백만유로)



출처: EU 집행위, EU budget 2016 Financial report, 2017.



■ EU 이사회, 브렉시트 협상 부분 합의 발표(2018.3.19.)¹²⁾

- EU 및 영국 협상단이 시민권, 재정분담금, 전환 기간, 기타 분리 문제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진전된 상황을 나타낸 탈퇴 협정 부분 합의안을 발표
 - 탈퇴 협정 법률 문서에 협상 합의 수준에 따라 녹·황·백색으로 표기
- (주요 합의 내용)
 - (제12조) 연합 시민과 영국 국민은 소재국에 거주할 권리를 가짐
 - (제121조) 전환 또는 이행 기간이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은 본 협정 발효일에 시작해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됨
 - (제128조 제1항) 2019년과 2020년 동안 제4편에 따라 영국은 연합 예산의 이행에 기여하고 참여함
 - 한편 양측은 북아일랜드 및 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 다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북아일랜드가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backstop' 해결책에 대해 합의

• (주요 내용)

- 정상들은 양측 협상단이 시민권, 재정분담금, 기타 탈퇴 문제 및 이행 문제를 포함한 탈퇴 협정 법률 문서의 일부에 대한 합의를 환영
- 다른 사안은 여전히 합의가 필요하며 지금까지의 모든 약속이 존중되어야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음을 상기함
- 정상들은 향후 영국과 가능한 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EU의 결정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협력 관계는 무역,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특히 테러 및 국제 범죄 대응, 안보, 국방, 외교 정책을 포함해야 함
- 정상들은 미래 협력 관계의 깊이를 제한하는 영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며, 관세 동맹 및 단일 시장 탈퇴는 필연적으로 무역 마찰을 야기할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연구원〉

■ EU 이사회, 브렉시트 미래 관계 협상 지침 채택 (2018.3.23.)¹³⁾

-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이 참석한 EU 정상회의가 미래 관계와 관련한 브렉시트 협상 지침¹⁴⁾을 채택

12) EU 이사회, https://ec.europa.eu/commission/publications/draft-agreement-withdrawal-united-kingdom-great-britain-and-northern-ireland-european-union-and-european-atomic-energy-community-0_en

13) EU 이사회,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8/03/23/european-council-art-50-guidelines-on-the-framework-for-the-future-eu-uk-relationship-23-march-2018/>

14) 브렉시트 2단계 협상 지침 초안은 2017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참고. 브렉시트 이행 기간 협상 지침과 관련한 내용은 2018년 1월 2호 재정동향 참고

 IMF

- IMF, 글로벌 전망과 정책과제(Global Prospects and Policy Challenges) 보고서 발표(2018.3.15)¹⁵⁾ 16)
- (경제전망) 투자 · 무역의 강세로 2017년 하반기부터 세계 전반적인 경제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2018-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9%로 상향 조정*
 - *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2017년 10월 보고서에서는 2018-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3.7%로 전망하였으나, 2018년 1월 Update 보고서에서 3.9%로 상향 조정함
- (중기 경제전망) 2018-19년에 예상되는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은 점차 줄어들 것이며 이로 인해 중기에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금융시장 긴축)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며, 통화정책 정상화로 금융 조건이 엄격해질 수 있음
 - (정책효과 감소) 미국의 법인세 감세에 따른 투자 유인이 만료되면 세계개혁 모멘텀은 감소할 것이며, 중국의 신용 성장과 재정 부양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생산성 감소) 투자 성장세는 잠재성장률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고령화 및 기타 요소들은 선진국의 생산성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위험) 하방위험이 누적되고 있음
 - (금융여건) 기 예정된 미 금리 인상 경로의 조정 등으로 미국의 금융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 엄격해질 수 있으며 신흥국의 자본 유출 등의 파급효과 야기
- (세계경제 불균형) 미국이나 다른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 국가들이 경기 부양적 재정정책을 펼칠 경우 세계경제 불균형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
- (자국보호정책) 기술 변화 및 세계화에 대한 불안감은 자국보호정책을 조장하고, 투자 및 무역을 저해할 수 있음
- (정책권고)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중기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 · 개혁이 필요
 - (여력 확보) 인플레이션이 낮은 국가들은 경기 대응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완전 고용상태이거나 근접한 국가(예, 미국)는 재정여력과 총공급 확대에 힘써야 함
 - (금융시장 안정성) 미시 및 거시건전성 정책을 시행하여 높은 레버리지를 막고, 금융 시장 위험을 억제해야 함
 - (잠재성장률 제고)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대, 구조적 실업에 대한 지원, 청년고용 투자 등 생산성 개선과 포용성 강화를 위한 구조 개혁과 재정정책 운용이 필요
 - (협력 촉진) 재정 및 규제 개혁 모멘텀을 유지하고, 개방적인 다자간 무역 체제 유지 등의 노력이 필요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전문연구원)

15) <http://www.imf.org/external/np/g20/031518.htm>

16)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2018.3.19.-20.)에 앞서 상시적으로 동 보고서를 발표



OECD

■ OECD, 중간 경제 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2018.3.13.)¹⁷⁾

- (경제 전망) 세계경제는 GDP 성장률이 2017년 3.7%에서 2018~2019년 약 4%로 전망되는 가운데 계속 강화될 전망이다. 위험요인(tensions)은 확대
 - 투자 확대, 세계무역 반등, 고용 증가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감세와 재정지출 증가, 독일의 재정활성화 정책 등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데 기여
 -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는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통화정책 정상화는 환율 및 자본유입(특히 신흥국)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음
- (주요국 전망) 감세, 공공지출 증가, 투자 개선 등에 따라,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2017.11월 전망보다 상당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국) 감세, 정부지출 증가가 국내수요 모멘텀을 강화하여 2018~2019년에 2.8~3%의 GDP 성장률을 보일 전망
 - (일본) 수출 개선, 추경, 기업수익 증가로 2018년 경제성장률은 1.5%로 전망되나, 2019년에는 1.1%로 완화될 전망
 - (독일) 2018~2019년에 계획된 추가적인 재정완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강건하게 유지될 전망

(GDP 성장률 2018년 2.4%, 2019년 2.2%)

- (프랑스) 최근 시행된 개혁의 영향으로 2018~2019년에 1.9~2.2%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영국)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가계소득 성장률이 감소하고, 영국·유럽연합 간 불확실한 관계로 기업투자가 둔화되면서, 2018~2019년에 1.1~1.3%의 경제성장 전망
- (중국) 수출은 크게 반등하겠으나, 통화·규제정책의 제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중립적 재정정책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2019년까지 6.5% 이하로 완화될 전망
- (한국) 세계무역 반등(특히 반도체 부문), 최저임금 인상·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가계소득 확대 등에 따라 2018~2019년에 3%대의 성장률 전망
- (정책 제언) 생산성, 포용적 성장, 위험요인 대응력 제고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들이 요구됨
 - (통화정책) 국가별로 상이한 경제전망, 물가,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필요
 - (재정정책) 지나치게 경기순행적인(pro-cyclical) 재정정책을 피하고, 중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출 필요
 - (구조개혁) 구조개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는 생산성, 투자 및 생활수준의 보다 강건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임

17) 출처: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2018

(<http://www.oecd.org/eco/outlook/Getting-stronger-but-tensions-are-rising-press-handout-oecd-interim-economic-outlook-march-2018.pdf>)

〈표 5〉 주요국의 실질GDP 성장률 전망

(단위: %, %p)

	2017년	2018년		2019년	
		중간 전망치	'17.11월 전망치 대비 차이	중간 전망치	'17.11월 전망치 대비 차이
세계	3.7	3.9	0.2	3.9	0.3
G20	3.8	4.1	0.2	4.0	0.2
유로지역	2.5	2.3	0.2	2.1	0.2
미국	2.3	2.9	0.4	2.8	0.7
일본	1.7	1.5	0.3	1.1	0.1
독일	2.5	2.4	0.1	2.2	0.3
프랑스	2.0	2.2	0.4	1.9	0.2
영국	1.7	1.3	0.1	1.1	0.0
캐나다	3.0	2.2	0.1	2.0	0.1
호주	2.3	3.0	0.2	3.0	0.3
한국	3.1	3.0	0.0	3.0	0.0
중국	6.9	6.7	0.1	6.4	0.0

출처: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2018, p. 2. 일부 국가

- OECD, “사람과 일자리 연계” 시리즈* 중 한국보고서 “한국의 더 나은 사회와 고용보장을 위하여”¹⁸⁾ 발표(2018.3.14.)¹⁹⁾ 20)

* OECD는 동보고서 국가별 시리즈를 통해 각국의 노동시장참여 활성화정책이 사회 모든 그룹이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석·평가

- 2014년 영국 보고서가 첫 발간이며, 이번 한국 보고서는 2016년 슬로베니아, 2017년 호주에 이어 네 번째에 해당
- (평가) 수백만 가구에 소득·고용 지원을 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사회보장이 미흡한 낮은 수준의 일자리에 있는 근로자

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의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사회보장이 가장 필요한 근로자와 구직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
- 대부분의 OECD 회원국과는 달리 한국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음
- (권고) 한국은 사회 안전망 강화,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시행 할 필요

18) OECD, Connecting People with Jobs: Towards Better Social and Employment Security in Korea, 2018.

19) OECD Newsroom, 2018.3.14.

<http://www.oecd.org/newsroom/korea-should-speed-up-job-market-and-social-protection-reforms-to-strengthen-inclusive-growth.htm>
<http://www.oecd.org/newsroom/korea-should-speed-up-job-market-and-social-protection-reforms-to-strengthen-inclusive-growth-press-release-in-korean.htm>

20)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보고서 참고



- 고용보험 개선 및 범위 확대
 -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자발적 퇴직자에 대해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대신 수급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
 - ☞ 고용주가 모든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새로운 감독권한을 도입하는 등의 강화조치를 고려
 - 건강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의 환경 개선
 - ☞ 대부분의 OECD 회원국과 같이 근로자에 대해 연간 2~5주의 법정 병가제도를 도입
 - ☞ 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신속한 직장 복귀에 중점을 둔 새로운 형태의 소득 지원을 매칭
 - 저소득 가정 및 근로 빈곤층의 환경 개선
 - ☞ 가족부양의무(Family support obligation)를 점차 폐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 * 자녀 또는 부모의 실질적인 지원이 없음에도 동 의무로 인해 잠재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기초생활보장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
- ☞ 근로장려세제 수급자격 대상자의 생활수준과 노동보상 개선을 위해 수급자격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도록 보장

■ OECD, 구조개혁평가 중간보고서* “Going for Growth-Interim Report 2018” 발표(2018.3.19.)^{21) 22)}

* 구조개혁평가 보고서는 2005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매년 발표되고 있으며,²³⁾ 정책입안자들에게 국가별 우선순위로 파악된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개혁권고사항을 제공

- 이번 중간보고서는 2017년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구조개혁 우선순위의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있으며, 두 개의 Special chapter를 통해 녹색성장 지표, 파산제도 지표를 평가하여 구조개혁평가 범위를 확장

• (구조개혁) 대체로 2017년 구조개혁은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완만한 속도로 진행

-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우, 빠른 속도의 개혁은 거의 보이지 않음

- ☞ 선진국은 구조개혁 우선순위 분야 중 1/10 정도를 시행하였고 1/3은 진행 중이며, 개도국은 시행 완료된 분야가 훨씬 적었고 1/4 정도가 시행 중

- 반면,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사회보장강화 프로그램, 프랑스의 노동시장 개혁, 일본의 보육시설확충 계획 등과 같은 과감한 조치는 주요 진전으로 평가

• (녹색성장) 구조개혁 평가와 녹색성장의 연계를 위해 환경성과 측정지표 개발, 경제성장-웰빙-환경-환경정책 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이 중요

-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은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웰빙을 위해 매우 중요하나, 구조개혁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단일의 환경성과 측정지표는 부재

21)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Going for Growth-Interim Report 2018, 2018.

<http://www.oecd.org/newsroom/global-upswing-should-be-used-to-implement-structural-reforms-to-boost-incomes-and-well-being-for-the-longer-term-and-for-all.htm>

2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보고서 및 추후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는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 참고

23) 홀수년도에는 본보고서, 짝수년도에는 중간보고서 형태로 발표되며, 중간보고서에는 국가별 보고서가 없음

- ☞ 측정지표는 기후, 대기오염, 토지이용 분야에서 소위 녹색혁명이라 할 수 있는 진전을 보여 왔으나, 쓰레기, 하수처리, 물효율, 수질오염 등의 분야는 미흡
- (파산제도) 노동생산성과 관련된 국가별 파산제도를 평가한 결과,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 존재
 - 비효율적인 파산제도는 노동생산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요인, 즉 좁비기업²⁴⁾의 생존, 비효율적인 자본 배분, 기술확산 지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이에 실패기업의 원활한 퇴출 또는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마련된 국가별 파산제도를 평가하였는데,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 존재
 - ☞ (영국) 실패한 기업가들에 대해 개인비용과 구조조정 장벽은 상대적으로 낮고, 파산예방을 지원하는 조항들은 많되, 절차는 간소화 되어 있음
 - ☞ (헝가리, 에스토니아) 원활한 퇴출 또는 구조조정에 대해 가장 높은 장벽이 존재하며, 파산비용, 파산예방,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은숙 전문연구원)



미국

1. 예산 · 결산 등

- 美 의회, FY2018 예산안(H.R.1625/P.L. 115-141) 확정 의결(2018.3.23.)^{25) 26)}
 - (의회 표결)
 - 표결 결과, 하원 256:167, 상원 65:32로 1.3조 달러 규모의 FY2018 종합 예산안(omnibus appropriations bills)의 의회 승인 완료 (FY2018 기간: 2017.10.1.~2018.9.30)
 - * Omnibus appropriations bills: 의회는 총 12개 세출소위 원회가 12개 분야별로 각각 세출법안을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몇 개의 분야 또는 전체 분야를 하나의 세출 예산법안으로 통합하여 상정하여 처리하는 법안을 뜻함
 - (주요 예산사업)²⁷⁾
 - (국방) 군인 연봉 2.4% 증가 등 대 테러와의 전쟁(GWOT)/해외비상작전(OCO)²⁸⁾ 예산을 포함하여 총 6,546억달러 승인
 - (안보) 국토안보부 예산은 전년 대비 54억달러 증가한 총 478억달러가 승인되었으며, 국경장벽 건설 및 구금시설(detention space) 및 감시 기술(surveillance technology) 등을 지원할 계획
 - (인프라) 교통, 에너지, 사이버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총 210억달러 투자

24) 회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부 또는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기업

25) 美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signing-h-r-1625/>

26) 이번 종합 예산안이 통과되기까지 총 5회의 임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이 통과되었음

27) 美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395176>

28) GWOT: Global War on Terror/OCO: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 (의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적 비상사태 (national emergency)로 선포한 마약성 치료제 위기에 대응(combating the opioid crisis)한 치료, 예방, 법집행 등을 위한 예산으로 40억달러 배정
- (교육)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주관의 안전한 교육 환경 개선 및 아동 보호의 일환으로 정신건강, 훈련, 학교 안전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에 총 23억달러 배정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전문연구원〉



일본

1. 예산·결산 등

- 재무성, FY2017 제3사분기 예산사용상황²⁹⁾ 발표 (2018.3.2.)³⁰⁾
 - FY2017 제3사분기 일반회계의 국가 수납 금액은 17조 6,667억엔, 국가 지출금액은 21조 8,447억엔으로, 세출 금액이 세입 금액을 4조 1,780억엔 초과

〈표 6〉 FY2017 제3사분기 예산사용상황 개요

(단위: 억엔, %)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예산액 (A)	974,547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 ¹⁾ (D)	1,021,936	세입예산액 (A)	3,956,840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 (D)	3,983,823
제3사분기 국가 수납 금액 (B)	176,667	제3사분기 국가 지출 금액 (E)	218,447	제3사분기 국가 수납 금액 (B)	658,419	제3사분기 국가 지출 금액 (E)	767,942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 (B/A)	18.1 (18.7)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 (E/D)	21.3 (23.1)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 (B/A)	16.6 (19.5)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 (E/D)	19.2 (22.6)
제3사분기까지 누계 (C)	534,420	제3사분기까지 누계 (F)	706,866	제3사분기까지 누계 (C)	2,993,469	제3사분기까지 누계 (F)	3,006,366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 (C/A)	54.8 (56.2)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비율 (F/D)	69.1 (68.2)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 (C/A)	75.6 (77.1)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비율 (F/D)	75.4 (76.4)

주: ()는 전년 동기 비율

1)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은 세출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 등을 증감시킨 금액을 의미. FY2017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

출처: 재무성, 「平成29年度第3・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 2018.3.2.

29) 예산사용상황은 재정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 및 국민에 대한 보고로, 일반회계의 세목별 조세 등 수납 상황 및 소관·조직·항(項)별 지출 상황과 특별회계의 수지(収支) 상황에 대한 각 부처의 월별 보고를 재무성에서 분기별로 집계한 것임

30) 재무성, 「平成29年度第3・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 2018.3.2.

http://www.mof.go.jp/budget/report/budget_use/iy2017/29_3a.pdf

- FY2017 제3사분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비율은 18.1%,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21.3%를 기록
- FY2017 제3사분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비율은 16.6%,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19.2%를 기록

- 이는 정부최종소비지출과 공적투자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이 1차 속보치 대비 상향 조정되었음에 기인
- (수출·수입) 재화·서비스 수출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2.4%, 재화·서비스 수입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2.9%로 1차 속보치와 동일
-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전 분기 대비 0.1% 감소하여 1차 속보치와 동일

2. 기타

- 내각부, 2017년 4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2018. 3.8.)^{31) 32)}
- 2017년 4분기 GDP 2차 속보치에서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4%(연율1.6%), 명목 GDP 성장률은 0.3%(연율 1.1%)로, 실질성장률과 명목성장률 모두 1차 속보치 대비 상향 조정
 - (국내외 수요기여도) 실질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 기여도는 민간재고 증감 및 민간설비 투자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1차 속보치 대비 상향 조정된 0.4%를 나타냈으며, 재화·서비스 순수출 기여도(외수)는 1차 속보치와 동일한 -0.0%를 나타냄
 - (민간수요) 민간수요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0.6%로 1차 속보치 대비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민간주택 및 민간설비 투자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이 1차 속보치 대비 상향 조정되었음에 기인
 - (공적수요) 공적수요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0.0%로 1차 속보치 대비 상향 조정되었으며,

31) 내각부, 「2017(平成29)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18.3.8.
http://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32) 분기별 GDP의 1차 속보는 해당 분기 종료 후 1~2개월 후에 발표되며, 2차 속보는 1차 속보치 발표 이후 새롭게 이용 가능한 기초자료 들을 반영하여 1차 속보치 발표 후 약 1개월 뒤에 발표. 1차 속보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8년 2월 제2호 「재정동향」 '일본편' 참조



〈표 7〉 2017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 2차 속보치(계절조정)

(단위: 전 분기 대비, %)

	2016년	2017년					2017년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여도		4분기 연율환산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국내총생산(GDP)	0.3	0.5	0.6	0.6	0.1	0.4	-	-	0.5	1.6
국내수요	-0.1	0.4	0.9	0.1	0.1	0.4	(0.1)	(0.4)	0.6	1.8
민간수요	0.1	0.5	0.8	0.2	0.3	0.6	(0.2)	(0.4)	1.1	2.4
민간최종소비지출	0.0	0.3	0.9	-0.6	0.5	0.5	(0.3)	(0.3)	1.9	2.1
민간주택투자	0.8	1.2	0.9	-1.7	-2.7	-2.6	(-0.1)	(-0.1)	-10.2	-10.1
민간설비투자	0.8	1.2	1.2	1.0	0.7	1.0	(0.1)	(0.2)	2.8	4.2
민간재고증감	(-0.2)	(0.1)	(-0.1)	(0.4)	-	-	(-0.1)	(0.1)	-	-
공적수요 ¹⁾	-0.6	0.1	1.2	-0.5	-0.2	-0.0	(-0.1)	(-0.0)	-0.9	-0.2
정부최종소비지출	-0.2	0.1	0.2	0.1	-0.1	-0.0	(-0.0)	(-0.0)	-0.5	-0.0
공적투자 ¹⁾	-1.9	-0.2	4.8	-2.6	-0.5	-0.2	(-0.0)	(-0.0)	-2.1	-0.8
공적재고증감 ¹⁾	(-0.0)	(0.0)	(0.0)	(-0.0)	-	-	(-0.0)	(-0.0)	-	-
재화·서비스 순수출 ²⁾	(0.4)	(0.1)	(-0.3)	(0.5)	-	-	(-0.0)	(-0.0)	-	-
재화·서비스 수출	2.7	2.0	0.0	2.1	2.4	2.4	(0.4)	(0.4)	10.0	10.1
재화·서비스 수입	0.6	1.7	1.9	-1.2	2.9	2.9	(-0.4)	(-0.4)	12.0	12.0

주: ()안은 국내총생산 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1) 공적수요는 Public Demand, 공적투자는 Public Investment, 공적재고 증감은 Change in Public Inventories를 의미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출처: 내각부, 「2017(平成29)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18.3.8.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전문연구원〉

독일

1. 기타

■ 연방 통계청, 2017년 4분기 공공채무 현황 발표 (2018.3.27.)³³⁾

- 독일의 2017년 연말 공공채무 총액은 2016년 말 대비 2.1% 하락한 1조 9,654억유로로 집계

- 연방정부의 공공채무는 4.3% 감소하여 1조 2,428억유로, 주정부는 3.4% 감소하여 5,848억유로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협회는 3.1%, 사회보장은 10.8% 감소함

33) 연방통계청, 2018.3.27.

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18/03/PD18_112_713.html

〈표 8〉 독일 2017년 4분기 공공채무 현황

(단위: 백만유로, %)

	공공채무		증감률 (%)
	2017년 12월 31일	2016년 12월 31일	
총액	1,965,483	2,006,813	-2.1
연방정부	1,242,780	1,258,910	-4.3
주정부	584,809	605,505	-3.4
지방자치단체 · 협회 ¹⁾	137,459	141,911	-3.1
사회보장	434	487	-10.8


주: 1) 독일의 지방정부는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정부로 구성되며 각 주(Land)마다 주헌법(Landesverfassung)이 존재한다. 각 주는 주헌법에 기초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주 의회로 구성된다. 기초자치단체(Gemeinde)는 기초자치단체규칙(Gemeindeordnung)에 근거하여 성립하며 이에 기초하여 기초자치단체 행정부와 의회로 구성된다(참고: 「독일의 재정제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p. 12).

출처: 연방통계청 보도자료, 2018.3.27.

■ 연방 사회노동부, 독일 퇴직연금 인상 발표(2018. 3.26.)³⁴⁾

- 연방 사회노동부 장관 후베르투스 하일(Huber-tus Heil)은 독일의 강건한 노동시장과 임금상승으로, 올 7월 1일부터 서독과 동독지역 연금자들의 연금수령 액수가 각각 3.2%, 3.4% 상승할 예정
- 동독지역의 연금수준은 서독지역 대비 95.8% (전년 대비 0.1%p 상승) 정도며, 2024년까지 동서독 지역간 연금을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

(자료 수집 및 정리: 엄동욱 연구원)

 프랑스

1. 예산 · 결산 등

- 재무부, 2017년 사회보장예산 잠정 집행결과 발표 (2018.3.16.)³⁵⁾
- 2017년 사회보장예산 재정적자는 정부의 건강보험 지출 통제 노력으로 인해 전년 대비 27억유로 감소한 51억유로를 기록
 - 이는 지난 1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며, 사회 보장법안에서 명시한 목표수준(52억유로)을 달성함
 - 의료보험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보다 수지가 개선됨

34) 연방사회노동부, 2018.3.26.

<http://www.bma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18/renten-steigen-zum-1-juli.html>

35) 프랑스 재무부, <https://www.economie.gouv.fr/annonce-comptes-securite-sociale-2017>



〈표 9〉 2017년 사회보장예산 잠정 집행결과

(단위: 십억유로,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률(%)
의료보험(CNAM)	-4.8	-4.9	-0.1
산재보험(CNAM AT/MP)	0.8	1.1	0.4
법정연금기금(CNAV)	0.9	1.8	0.9
가족지원금(CNAF)	-1.0	-0.2	0.8
일반 제도 수지(Total Régime général)	-4.1	-2.2	2.0
노령연대기금(FSV)	-3.6	-2.9	0.7
총액	-7.8	-5.1	2.7

주: 각 연도의 수치는 각 항목에 대한 사회보장예산 수지를 의미함

출처: 재무부, Annonce des comptes de la sécurité sociale en 2017(2018.3.16.)

2. 기타

- 통계청(INSEE), 2017년 일반정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발표(2018.3.26.)^{36) 37)}
 - 2017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166억유로 감소한 593억유로(GDP 대비 2.6%)로 개선

-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2.5%(311억유로) 증가한 1조 2,919억유로이며, 이전지출과 보조금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6.5%)
- 경제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에 기인하여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4.0%(478억유로) 증가한 1조 2,326억유로 기록

〈표 10〉 재정지표

(단위: 십억유로, GDP 대비 %)

	2016	2017
재정수지	-75.9 (-3.4)	-59.3 (-2.6)
재정지출	1,260.8 (56.6)	1,291.9 (56.6)
재정수입	1,184.8 (53.2)	1,232.6 (53.9)
조세부담률	44.6%	45.4%
일반정부 총채무	2,152.5 (96.6)	2,218.4 (97.0)
일반정부 순채무	1,949.7 (87.5)	2,005.5 (87.7)

주: ()안은 GDP 대비 %

출처: 통계청(INSEE), INFORMATIONS RAPIDES N.82(2018.3.26.)

36) 프랑스 통계청(INSEE):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3375619>

37) 프랑스 예결산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18/publication-comptes-nationaux-administrations-publiques-2017-insee#.WriJvkS-Uk>

〈표 11〉 지출과 수입 항목별 내역

(단위: 십억유로, %)

구분	2016	2017	증감률(%)
재정지출	1,260.8	1,291.9	2.5
운영비	402.1	410.9	2.2
- 중간 소비	107.3	109.8	2.3
- 인건비	283.9	290.1	2.2
채무비용(Intérêts)	46.1	44.4	-3.7
사회보장수당(Prestations sociales)	579.4	591.3	2.1
이전지출과 보조금	155.6	165.6	6.5
비금융 자산 취득	77.6	79.6	2.6
재정수입	1,184.8	1,232.6	4.0
판매수입(Ventes et autres recettes)	88.6	89.5	1.0
부동산수입(Revenus de la propriété)	15.0	15.3	1.6
조세수입(Impôts)	641.8	674.4	5.1
- 재산세	280.0	294.5	5.2
- 제품생산세	356.0	372.3	4.6
사회보장부담금	375.2	388.4	3.5
기타 수입	64.2	65.1	1.3
총재정수지	-75.9	-59.3	

출처: 통계청(INSEE), INFORMATIONS RAPIDES N.82(2018.3.26.)

-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2017년 말 일반정부 채무는 전년 대비 659억유로 증가한 2조 2,184억유로(GDP 대비 97.0%)로 나타남
- 통계청(INSEE), 2017년 4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18.3.26.)³⁸⁾
 - 수출과 총고정자본형성(GCFC: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이 증가하며 2017년 4분기에 전분기 대비 0.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2017년의 연간 성장률은 2%를 기록

38) 프랑스 통계청(INSEE):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3374846>



〈표 12〉 프랑스 분기별 성장률

(단위: 전분기 대비 %)

	2017Q1	2017Q2	2017Q3	2017Q4	2016(전년 대비)	2017(전년 대비)
GDP 성장률 ¹⁾	0.7	0.6	0.5	0.7	1.1	2
수입	1.2	0	2.2	0.3	4.2	4.1
가계 소비	0.2	0.3	0.5	0.2	2.1	1.3
정부 소비	0.3	0.5	0.6	0.3	1.2	1.6
총고정자본형성(GCFC)	1.7	0.9	0.9	1.1	2.7	3.8
수출	-0.7	2.2	1.0	2.5	1.9	3.3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출처: 통계청(INSEE), INFORMATIONS RAPIDES N.81(2018.3.26.)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연구원〉



영국

1. 예산·결산 등

- 재무부, Spring Statement 2018 발표(2018.3.13.)³⁹⁾

* 영국은 매년 3월에 예산(Budget)을, 11월에 Autumn Statement를 발표해왔으나, 2018년도 예산안부터는 가을에 예산⁴⁰⁾을,

3월에 Spring Statement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예산 일정이 변경됨

- (경제전망) 예산책임청(OBR)은 2018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11월 전망치(1.4%) 대비 상향 조정된 1.5%로 전망
 - 2019년과 2020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1.3%로, 2021년은 1.4%, 2022년은 1.5%로 전망

〈표 13〉 영국 경제전망

(단위: %, %p)

	실적	전망					
	16	17	18	19	20	21	22
실질GDP 성장률	1.9	1.7	1.5	1.3	1.3	1.4	1.5
(11월 전망 대비 변화분)	0.1	0.2	0.1	0.0	0.0	-0.1	-0.1
소비자물가(CPI)상승률	0.7	2.7	2.4	1.8	1.9	2.0	2.0
실업률(LFS)	4.9	4.4	4.4	4.5	4.6	4.6	4.6

출처: 예산책임청(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18*

39) 출처: 영국 재무부, 예산책임청(OBR), 영국 의회

<https://www.gov.uk/government/news/spring-statement-2018-what-you-need-to-know>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spring-statement-2018-philip-hammonds-speech>

<http://obr.uk/efo/economic-fiscal-outlook-march-2018/><https://www.parliament.uk/business/publications/written-questions-answers-statements/written-questions-answers/>

40) FY2018-19 예산은 2017년 11월에 발표됨. 자세한 내용은 '2018 주요국 예산안-영국(한국조세재정연구원)' 참고

〈표 14〉 영국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실적	전망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수입 및 지출							
공공부문 경상수입 (Public Sector Current Receipts)	36.6	36.6	36.7	36.8	36.8	36.7	36.7
총관리지출 (Total Managed Expenditure)	38.9	38.8	38.4	38.3	38.1	37.8	37.6
재정적자 및 채무							
공공부문 순차입 (Public Sector Net Borrowing)	2.3	2.2	1.8	1.6	1.3	1.1	0.9
공공부문 순채무 (Public Sector Net Debt)	85.3	85.6	85.5	85.1	82.1	78.3	77.9

출처: 예산책임청(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18*

- (재정전망) FY2017-18년과 FY2018-19년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은 전년 대비 하락한 2.2%, 1.8%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재정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예상보다 양호한 세수 실적으로 인해 지난 11월 전망 대비 FY2017-18년 재정적자 규모 전망치가 감소
 - 또한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는 FY2017-18년에 85.6%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가 FY2018-19년(85.5%)부터 점차 하락할 전망
- 2017 가을 예산 발표 이후 주요 진행 경과
 - (브렉시트 대응) FY2018-19년은 브렉시트를 준비하는 데 약 15억파운드 배정
 - * 2017년 가을 예산에서 발표한 브렉시트 준비 지원 계획 (향후 2년간 30억파운드 지원)의 일환임
 - (주택 공급) 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41억파운드

규모의 주택 인프라 기금 운영, Housing Growth Partnership⁴¹⁾ 규모 확대(2억 2천만파운드), 2만 7천호 주택 공급을 위한 런던 지역 추가 지원(16.7억파운드) 등

* 2017 가을 예산에 따르면 5년간 최소 440억파운드의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30만호 공급할 계획임

- (생계비 지원) 법정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⁴²⁾을 7.83파운드 수준으로 인상(2018년 4월), 법정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요율 대폭 인상, 4월부터 소득세 면세 기준 소득 상향 조정 등
- 이 외에도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기업의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 재평가 시기 조정, 교통 및 디지털 통신망 개선 등 언급

41) 중소 건축회사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

42)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법정최저임금 체계에서 추가적으로 25세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요율임



- 조세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 추진
 -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세제 변경, 다국적 기업의 공정한 납세를 위한 세제 변화 등에 대한 의견
 - 디지털 기술로 인한 지불 방식의 변화를 고려해 전자 결제 수단 이용자 지원, 현금을 통한 탈세 및 자금 세탁 방지 등에 대한 의견
 - 자영업자 및 피고용자 등에 대한 기술 역량(skill) 제고 및 재훈련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연장에 대한 의견
 - 온라인 판매에 대한 VAT 징수에 대한 의견 등

〈참고〉 영국의 예산 일정 변화⁴³⁾

- (기존 예산 과정) 영국은 매년 3월에 예산(Spring Budget)을 발표해왔으며, 11월에는 Autumn Statement를 통해 예산 발표 이후의 경제·재정 변화와 함께 이를 반영한 조세·재정 정책을 제시해 옴
- (예산 일정 변경) 2016년 Autumn Statement에서 발표된 계획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부터는 가을에 예산을 발표하고 차년도 3월에 Spring Statement를 통해 경제·재정 전망의 변화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변경
 - 기존 Autumn Statement는 수정된 경제·재정전망에 대응한 신규 조세 및 재정지출 정책도 포함하였으나, 변경된 예산 일정에 따른 Spring Statement에서는 경제·재정 전망의 업데이트만 발표되고 조세 및 재정 지출 변경 계획은 포함되지 않음
 - 조세·지출 계획 변경이 연 2회에서 1회만 이루어짐 따라 기업 및 국민이 갖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축소되고, 조세 정책 변화에 대한 의견청취(consultation) 절차가 강화될 전망
 - 또한 기존 Autumn Statement는 재무장관의 연설과 함께 공식 문서(보고서) 형식으로 발표되었으나 이번 Spring Statement에서는 재무장관의 성명 발표로 이루어짐
- Spring Statement의 주요 내용
 - 경제 및 재정 상황 업데이트
 - 지난 가을 예산 발표 이후 진행 경과 업데이트
 - 정부가 검토 중인 주요 정책 변경에 대한 국민 및 기업의 의견 수렴 기회 마련

43) 참고: 영국 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news/7-things-you-need-to-know-about-the-new-budget-timetabl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utumn-statement-2016-documents>

<https://www.gov.uk/government/news/spring-statement-2018-what-you-need-to-know>

2. 기타

- 기업에너지산업부, 고령화 대비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 계획 발표(2018.3.12.)⁴⁴⁾
 - (배경) 약 천만여명의 영국인들의 100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영국이 건강한 고령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
 - (주요 내용) 정부가 발표한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building a Britain fit for the future)⁴⁵⁾의 일환이며, 미래를 위한 혁신과 신기술 개발에 대한 약 3억파운드 규모의 지원 계획임
 - (건강한 고령화 지원 프로그램) 치매연구소 투자 등 수명 연장, 고독감에 대응, 독립 및 행복 제고 등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9천 8백만파운드를 지원
 - (조기 진단 및 정밀 의료 프로그램을 위한 데이터) 유전체학(genomics)에 대한 투자 등 조기 진단 개선 및 신규 의학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개발에 2억 1천만파운드 지원
 - (지역 거점 기관 투자)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환자들에게 개선된 진단·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역의 우수 거점 기관 설치에 7천만파운드 지원

- 영국 예산책임청(OBR),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의 EU 분담금 정산 비용 전망 제시(2018.3.13.)⁴⁶⁾
 - *Spring Statement 2018*⁴⁷⁾과 함께 발표된 예산 책임청(OBR)의 경제·재정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March 2018)⁴⁸⁾에서 브렉시트에 따른 EU 분담금 정산 비용 전망이 제시됨
 - 영국-EU의 1단계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2017.12.8.)되어 공동 합의안이 발표된 바 있으며, 합의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영국의 EU 분담금 정산(이혼합의금(divorce bill)) 이슈였음
 - (규모)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의 EU 분담금 정산(EU financial settlement) 비용은 총 414억유로(371억파운드)*로 전망되며, 이 중 약 75%는 2022년까지의 소요 비용으로 예상됨
 - * 이는 작년 12월 재무부가 발표한 EU 탈퇴 정산 비용 범위(350억~390억파운드)에 해당되는 규모임
 - (2014-2020 EU 다년도 예산체계(MFF)⁴⁹⁾에서 합의한 연간 EU 예산 중 영국 분담금) 2019년도는 81억유로, 2020년도는 104억유로로 총 185억유로(164억파운드) 규모로 전망
 - (2020년 말 기준 EU 다년도 예산체계의 미지불금액(RAL)⁵⁰⁾ 중 영국 분담금) 2021년부터 8년 동안 지불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억유로

44) 출처: 영국 기업에너지산업부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announces-300-million-for-landmark-ageing-society-grand-challenge>

45) 기술, 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영국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이 전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계획임(자세한 내용은 '2018 주요국 예산안-영국(한국조세재정연구원)' 참고)

46) OBR, <http://obr.uk/efo/economic-fiscal-outlook-march-2018/>

47)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3월 1호를 참고

48) 영국은 매년 3월과 11월에 예산 또는 Spring Statement(2018년도 예산 이전에는 Autumn Statement) 발표 시 예산책임청(OBR)의 경제·재정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을 함께 발표함

49)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EU의 장기 지출계획으로 예산의 지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음

50) RAL(reste à liquider)은 세출이 약속되었으나 아직 수혜자에게 지출되지 않은 세출예산의 총합임



- (182억파운드) 규모로 전망
- (연금 부채, 유럽 투자 은행 출자금 등이 반영된 기타 순부채) 27억유로(25억파운드) 규모로 전망

* 다만 환율, 영국 및 EU의 경제성장률, EU 예산의 미지불금액(RAL) 규모 등에 따라 전체 비용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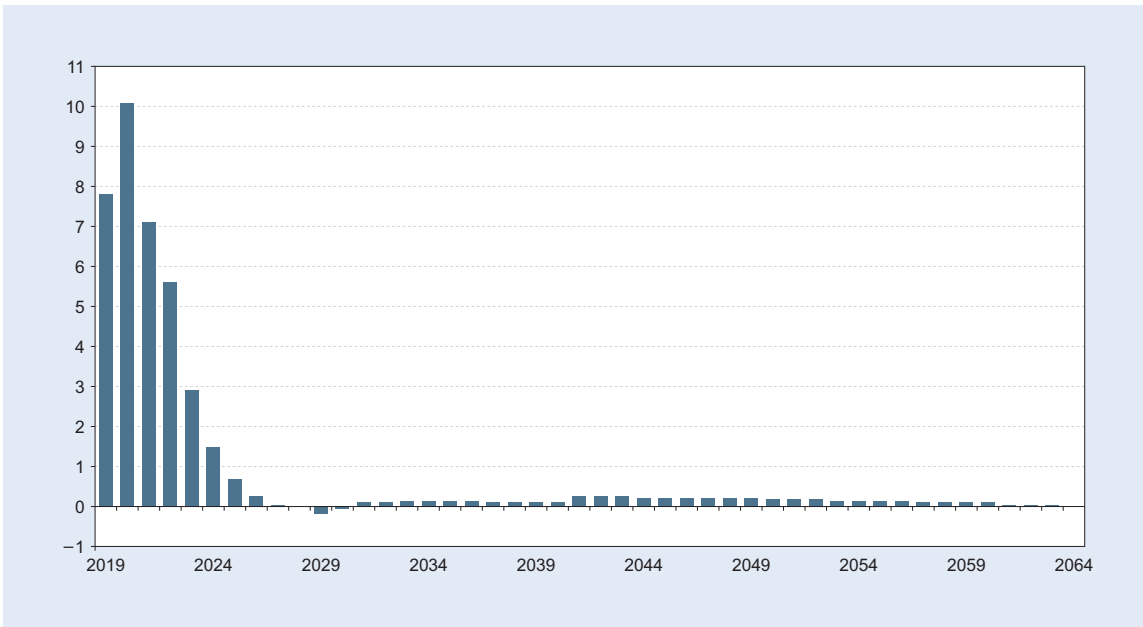
〈표 15〉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의 EU 분담금 정산 비용 전망

	지불 기간	금액	
		십억유로	십억파운드
2020년까지의 연간 EU 예산 중 영국 분담금	2019-2020	18.5	16.4
MFF의 미지불금액(RAL)	2021-2028	20.2	18.2
기타 순부채	2019-2064	2.7	2.5
합계	2019-2064	41.4	37.1

출처: 예산책임청(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18*

〔그림 1〕 연도별 EU 분담금 정산 비용

(단위: 십억유로)



출처: 예산책임청(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18*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전문연구원〉

 캐나다

1. 예산 · 결산 등

- 재무부, FY2018 예산안(Budget 2018) 발표(2018. 2.27.)⁵¹⁾
 - (예산기조) FY2018 예산안은 「강한 중산층을 위한 평등과 성장(Equality+Growth: A Strong Middle Class)」을 주제로, 모든 캐나다 국민이 미래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공유했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
 - 이번 예산안에서는 성장(Growth), 진보(Progress), 조화(Reconciliation), 발전(Advancement), 평등(Equality)에 대한 5개 주제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을 제시

- 2018 예산안에서는 GBA+(Gender-Based Analysis Plus)⁵²⁾를 도입하여 각 정책들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으며, 캐나다 정부는 여성 경제참여 촉진과 직장 내 양성평등이 경제성장률 상승 및 중산층 강화에 귀결된다고 언급
- (경제전망) 2017년 실질GDP 성장률은 가을경제보고서(Fall Economic Statement, 2017.10)와 동일하게 3.0%로 전망되며, 2018년 실질GDP 성장률은 가을경제보고서 대비 상향 조정(0.1%p)된 2.2%로 전망
 - 2018년 실업률은 가을경제보고서 대비 0.3%p 하향 조정된 6.0%,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가을경제보고서와 동일한 1.9%로 전망

〈표 16〉 캐나다 경제전망

(단위: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17- 2022
실질GDP 성장률							
Budget 2017	2.1	2.0	1.7	1.7	1.8	-	-
2017 Fall Economic Statement	3.0	2.1	1.6	1.7	1.7	1.8	2.0
Budget 2018	3.0	2.2	1.6	1.7	1.6	1.8	2.0
실업률							
Budget 2017	6.9	6.7	6.7	6.6	6.4	-	-
2017 Fall Economic Statement	6.5	6.3	6.3	6.4	6.3	6.1	6.3
Budget 2018	6.4	6.0	6.0	6.1	6.0	6.0	6.1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Budget 2017	2.0	2.0	1.9	1.9	2.0	-	-
2017 Fall Economic Statement	1.6	1.9	1.9	1.9	1.9	2.0	1.9
Budget 2018	1.6	1.9	2.0	1.9	1.9	2.0	1.9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 Table A2.1 일부 발췌

51) 캐나다 재무부, <https://www.budget.gc.ca/2018/home-accueil-en.html>

52) GBA+는 우리나라의 성별영향분석평가과 유사한 개념이며 남성과 여성 간 양성평등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다양한 요소들(인종, 민족, 종교, 나이, 신체 등)을 고려하는 정책분석 도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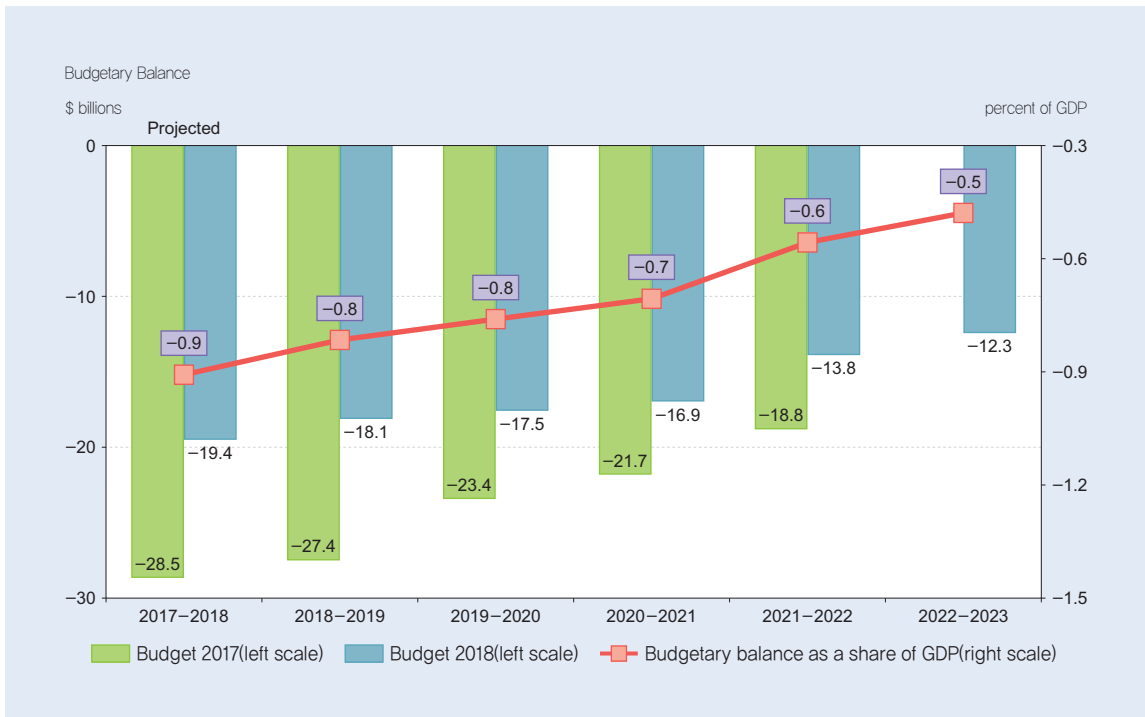


- ☞ 2015.11월 이후 약 60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캐나다 실업률은 5.9%(2017.11월 기준)까지 하락하였으며 이는 최근 40년 간 가장 낮은 수준
- (재정전망) FY2018-19 재정적자는 181억캐나다달러(GDP 대비 0.8%)이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FY2022-23에는 123억캐나다달러(GDP 대비 0.5%)를 기록할 전망
 - 연방채무비율 또한 FY2018-19 GDP 대비 30.1%(6,696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GDP 대비 28.4%(7,301억캐나다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세입전망) FY2018-19 총세입은 전년 대비 138억캐나다달러(4.5%) 증가한 3,234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FY2022-23까지 GDP 대비 총세입 비율은 14.5% 수준으로 유지
- (세출전망) FY2018-19 총세출은 전년 대비 95억캐나다달러(2.9%) 증가한 3,385억캐나다달러 규모로 전망
 - FY2018-19 프로그램 지출은 전년 대비 2.5%(76억캐나다달러) 증가한 3,122억캐나다달러, 이자지출은 전년 대비 7.8%(19억캐나다달러) 증가한 263억캐나다달러로 전망

[그림 2] 캐나다 재정수지 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 of GDP)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 Chart 4

〈표 17〉 캐나다 재정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

	전망(projection)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총세입 (GDP 대비 %)	293.5 (14.4)	309.6 (14.5)	323.4 (14.5)	335.5 (14.5)	348.0 (14.5)	362.1 (14.6)	373.9 (14.5)
총세출 (GDP 대비 %)	311.3 (15.3)	329.0 (15.3)	338.5 (15.2)	350.0 (15.1)	361.9 (15.1)	372.9 (15.0)	383.2 (14.9)
프로그램지출	287.2 (14.1)	304.6 (14.2)	312.2 (14.0)	321.5 (13.9)	331.5 (13.8)	340.7 (13.7)	350.1 (13.6)
이자지출	24.1 (1.2)	24.4 (1.1)	26.3 (1.2)	28.6 (1.2)	30.3 (1.3)	32.2 (1.3)	33.1 (1.3)
위험조정 (Adjustment for risk)			-3.0	-3.0	-3.0	-3.0	-3.0
재정수지 (GDP 대비 %)	-17.8 (-0.9)	-19.4 (-0.9)	-18.1 (-0.8)	-17.5 (-0.8)	-16.9 (-0.7)	-13.8 (-0.6)	-12.3 (-0.5)
연방채무 (GDP 대비 %)	631.9 (31.0)	651.5 (30.4)	669.6 (30.1)	687.1 (29.8)	704.0 (29.4)	717.8 (28.9)	730.1 (28.4)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8, Table A2.6 일부 발췌

• (주요 정책)

- (성장) 새로운 근로장려세제(Canada Workers Benefit)⁵³⁾ 도입, 아동복지급여(Canada Child Benefit) 강화,⁵⁴⁾ 육아휴직 기간 확대(35주 → 40주), 남성중심의 특수분야(Red Seal Trades)에 여성진출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 투자, 공정한 세제시스템 강화 등
 - ☞ 육아휴직 기간 확대: 기존 육아휴직에 5주를 추가하여 총 40주를 부모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향후 5년간 10.2억캐나다달러 투자

- ☞ 남성중심의 특수기술직 분야에 진출하는 여성을 위한 기술훈련을 지원하는 ‘Apprenticeship Incentive Grant for Women’ 구축에 향후 5년간 19.9백만캐나다달러 투자
- ☞ 일자리창출: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하계일자리프로그램(Canada Summer Jobs)에 향후 5년간 448.5백만캐나다달러 투자 등
- ☞ 공정한 세제시스템 강화: 탈세근절, 중소기업세율 감소(2018.1월 10% → 2019.1월 9%)
- (진보) 캐나다 기술혁신을 위한 기업, 과학자, 연구원 및 장비 등 투자 확대

53) 기존의 근로장려세제(Working Income Tax Benefit)를 강화하는 제도로 저소득계층의 세금경감 및 근로활동참여 증진을 목표로 함. 새로운 제도 하에서 최대 혜택금액이 증가하고 급여가 중단되는 소득금액이 상향 조정 됨

54) 저소득층과 미혼모 가정 지원확대 내용 포함



- ☞ 캐나다 차세대 연구원(next generation researchers) 지원에 5년간 17억캐나다달러, 실험실, 장비 및 연구인프라 구축에 5년간 13억캐나다달러 투자 등
- (조화) 원주민과 조화를 바탕으로 둔 정책을 중심으로 원주민 보호를 위한 가족, 보건, 주택, 물 등에 대한 투자
 - ☞ 원주민 자녀양육 및 가족지원 강화에 6년간 14억캐나다달러 지원, 원주민 주택지원(10년간 Inuit족 4억캐나다달러, Métis족 5억캐나다달러 포함), 원주민 보건 지원에 5년간 15억캐나다달러 투자,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투자에 향후 3년간 1.73억캐나다달러 투입 등
- (발전) 캐나다 자연유산 보호에 지속적인 투자, 국제원조 지원 강화, 안전한 국가 구현 등의 정책에 중점투자
 - ☞ 자연보호: 2016.12월 채택된 Pan-Canadian Framework on Clean Growth and Climate Change에 12년간 57억캐나다달러 투자 등
 - ☞ 국제원조: 세계여성지원정책(Feminist International Assistance Policy)⁵⁵⁾에 5년간 20억캐나다달러 지원, 여성난민 지원을 위해 5년간 2천만캐나다달러 투자 등
 - ☞ 안전한 국가
 - 사이버 안보강화: 사이버안보센터(Canadian Centre for Cyber Security) 설립에 향후 5년간 155백만캐나다달러, 국제사이

- 범죄 전담반(National Cybercrime Coordination Unit) 창설에 향후 5년간 116백만캐나다달러, 새로운 국가 사이버안보전략(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지원에 향후 5년간 236.5백만캐나다달러 투자
- 성관련 폭력(gender-based violation program) 방지 프로그램 지원에 향후 5년간 86백만캐나다달러 지원

2.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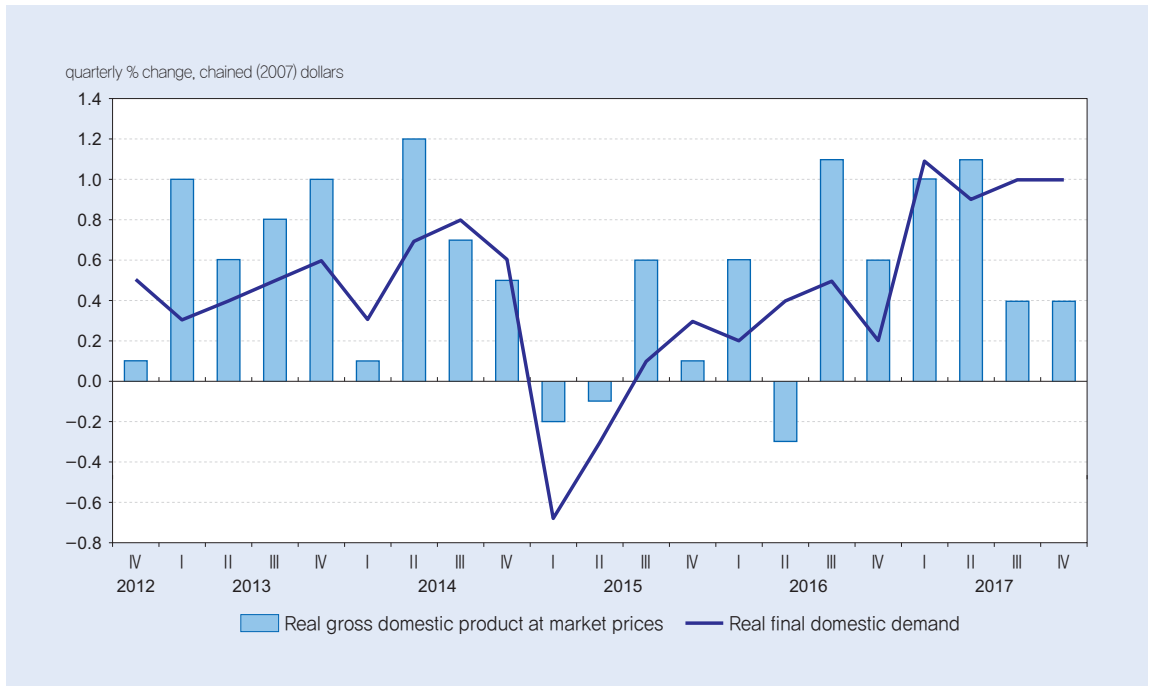
- 통계청, 2017년 4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18.3.2.)⁵⁶⁾
 - 2017년 4분기 캐나다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 분기와 동일한 0.4%이며, 최종국내수요 성장률은 전 분기와 동일한 1.0% 수준을 유지
 - 최종소비지출 증가율 0.6%,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2.3%, 상품 및 서비스수출증가율은 0.7%를 나타냄
 - 캐나다의 2017년 연간 실질GDP 성장률은 2016년(1.4%)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3.0%로 추정되며, 이는 상반기의 높은 GDP 성장률에 기인

55) 세계여성지원정책은 UN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일환

56) 캐나다 통계청, <http://www.statcan.gc.ca/daily-quotidien/180302/dq180302a-eng.pdf>

[그림 3] 분기별 실질GDP 및 최종국내수요 성장률

(단위: %)



출처: 캐나다 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income and expenditure, fourth quarter 2017*, Chart 1, 2018.3.2.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진아 전문연구원)

 호주

1. 기타

- 호주 통계청(ABS), 2017년 12월 분기(December Quarter)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발표(2018.3.6.)⁵⁷⁾

* GFS는 통계청 출간물로 호주의 정부 재정통계에 대한 개념, 출처 그리고 방법론을 포함

- 세수는 전 분기 대비 13.4% 증가한 133,271백만 호주달러(2017년 9월 분기 177,519백만호주달러)
 - 일반정부부문의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여 1,986백만호주달러의 순재정수지(net operating balance)를 기록
 - 일반정부부문의 순채무(net lending(+)/borrowing(-))는 -4,609백만호주달러로 집계

57) 출처: 호주 통계청.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Latestproducts/5519.0.55.001Main%20Features1Dec%202017?opendocument&tabname=Summary&prodno=5519.0.55.001&issue=Dec%202017&num=&view=>



〈표 18〉 2017년 12월 분기 정부재정통계(일반정부부문)

(단위: 백만호주달러, %)

	'17년 9월 분기	'17년 12월 분기	전 분기 대비
세금 수입(Taxation revenue)	117,519	133,271	13.4
총수입(Total revenue)	147,647	162,692	10.2
총지출(Total expenses)	161,238	160,706	-0.3
GFS 순 재정수지(Net operating balance)	-13,591	1,986	
GFS 순 채무(Net lending(+)/borrowing(-))	-17,959	-4,609	

출처: 통계청, 2018.3.6.

- 호주 통계청(ABS), 2017년 12월 분기(December Quarter)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발표 (2018.3.7.)⁵⁸⁾
 - 계절조정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
 - 가계최종소비지출은 호텔, 카페, 레스토랑, 문화 등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의 증

- 가로 분기 동안 1.0% 증가
 -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가 1.1% 증가하였고, 이는 4분기 연속 지속적 성장세를 보임
 - 재화 및 서비스 수출 감소로 인해 GDP 성장률이 0.4%p 하락

〈표 19〉 2017년 12월 분기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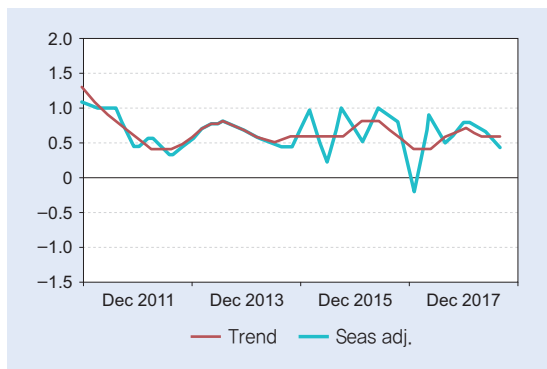
(단위: %, 계절조정)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GDP	0.4	2.4
최종소비지출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1.1	3.3
총고정자본형성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1.2	2.5
교역조건 (Terms of Trade)	0.1	-1.0
실질순국민가처분소득 (Real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	1.5

출처: 통계청, 2018.3.7.

[그림 4] GDP 성장률

(단위: %)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지현 연구원)

58) 출처: 호주 통계청.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0/52AFA5FD696482CACA25768D0021E2C7?Opendocument>



조세 · 재정 정책 및 연구 동향

■ 정책 및 연구 동향: 3.10.~4.9. 세미나 등: 4.1.~4.30.

* 이 자료는 국내외 조세 · 재정과 관련한 정책 및 연구 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세미나

세미나 개요	주최(주관)기관	개최일
<p>■ 2018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8. 04. 21.(토) 08:30~19:30 • 장소: 중앙대학교 100주년기념관 • 발표: 장연호 회계사(법무법인 광장), 최환용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 외 • 토론: 윤재원 교수(홍익대), 김현동 교수(배제대)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세무학회 	18-04-21
<p>■ 2018년 한국파생상품학회-한국세무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8. 04. 20.(금) 14:30~18: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 주제: 파생상품시장 양도소득세제와 투자자 진입규제 개선방안 • 발표: 이영한 교수(서울시립대), 이우백 교수(한국방통대) 외 • 토론: 김배호 교수(고려대), 장경덕 논설위원(매일경제신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파생상품학회 • 한국세무학회 • 국회 최운열의원실 	18-04-20
<p>■ 2018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8. 04. 20.(금) 13:30~18:30 • 장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층 교육장 • 주제: 지방분권과 회계의 역할 • 발표: 김이배 교수(덕성여대), 윤성만 교수(서울과기대) 외 • 토론: 송민섭 교수(서강대), 이남주 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부회계학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8-04-20
<p>■ 2018년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8. 04. 20.(금) 10:00~18:00 • 장소: 한국행정연구원 • 주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책학회 	18-04-20
<p>■ 2018 조세정책 심포지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8. 04. 03.(화) 14:00~17:00 • 장소: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 • 주제: 자발적 성실납세를 위한 제재제도 운용방향 • 발표: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 외 • 토론: 문은희 입법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 김명섭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공인회계사회 • 한국세무학회 	18-04-03

▶ 정책 및 연구

(1) 정책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p>◇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8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 • 232개 공공기관 조사결과, S등급 19개, A등급 99개, B등급 94개, C등급 20개 	기획재정부	18-03-28
<p>◇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6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 • 기획재정부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를 제출받을 계획 	기획재정부	18-03-26
<p>◇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세입 359,5조원, 총세출 342.9조원, 결산상 잉여금 16.2조원 발생 • 재정수지는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세수 실적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GDP의 0.3~0.4%p 수준의 개선 효과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재정수지: 24.0조원 흑자(전년 대비 GDP의 +0.4%p 개선), 관리재정수지: 18.5조원 적자(전년 대비 GDP의 +0.3%p 개선) • 국가채무(D1)는 전년 대비 33.8조원 증가한 660.7조원(GDP 대비 38.6%) •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제표 결산결과, 국가 자산은 2,063.2조원, 부채는 1,555.8조원, 순자산은 507.4조원 	기획재정부	18-03-26
<p>◇ 국세청, 납세자 입장에서 조세불복제도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은 불복청구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여 납세자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 • 올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보다 많은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국세청	18-03-20
<p>◇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는 3월 15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금년도 국민참여예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 	기획재정부	18-03-15



(2) 국내외 연구(Papers & Briefs)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p>◇ 선진국의 지방자치 체계와 재정고권의 보장 / 김수연, 임현, 전학선, 방동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지방자치제도 구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헌법을 통해 규율되어야 한다는 재정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일본, 영국, 미국의 헌법상 지방자치 체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 규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개헌안의 재정분권 관련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개정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고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한국지방세연구원	18-03-31
<p>◇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상태 측정에 관한 연구 / 임성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재정분권의 이론과 원리에 입각해서 분권의 측정방법과 기준을 탐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분권의 현재 상태와 최근 경향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재정지출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전통적인 재정분권 지표(지수) 대신 지자체의 재정지출 권한 등 재정분권의 질적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는 측정기준 내지 접근방법을 제시 	한국지방세연구원	18-03-30
<p>◇ 과세정보 제공 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 / 송민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정보의 제공 수준은 점차 확대되어 온 추세나, 여전히 국세청과 국회, 학계, 국민들 사이의 입장 차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납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공익목적에 위한 과세정보 공개라는 두 가치의 대립으로 인한 논란이 지속 • 미국은 「내국세법」에 따라 과세정보에 대해 원칙적 비밀주의를 규정하면서도 예외사유를 폭넓게 허용하며, 일본은 개인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원칙적으로 비공개,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는 국민의 포괄적 접근권 인정 •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과세정보 공개를 확대하되 개인정보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18-03-23
<p>◇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 및 시사점 / 조사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2016년 중 OECD 회원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상승 (57.0% → 63.6%) •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및 시간제 일자리 증가(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 보육 지원(일·가정 양립 정책), 여성 고위직 진출 및 임금격차 완화(양성평등 강화)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배경으로 분석 • 우리나라도 향후 보육 지원 제도 확충 및 육아휴직 활용 제고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여성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 	한국은행	18-03-15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p>◇ When Do We Repair the Roof? Insights from Responses to Fiscal Crisis Early Warning Signals / by Jiro Honda, Rene Tapsoba, Ismael Issif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ould policymakers wait for fiscal crisis early warning signals before repairing the roof? We give an answer to this question by investigating the interlinkages between early warning signals for fiscal crisis, policy responses, and policy outcomes, using a broad panel of 119 countries. ... (후략) 	IMF	18-04-06
<p>◇ Tax Enforcement and Tax Policy: Evidence on Taxpayer Responses to EITC Correspondence Audits / by John Guyton, Kara Leibel, Dayanand S. Manoli, Ankur Patel, Mark Payne, Brenda Schaf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ch year, the United States Internal Revenue Service(IRS) sends notices to selected taxpayers who claim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benefits to request additional documentation to verify those claims. ... (후략) 	NBER	18-04-02
<p>◇ Taxation and the Shadow Economy: How the Tax System can Stimulate and Enforce the Formalization of Business Activities / by Rajul Awasthi, Michael Engelschal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sh transactions for goods and services in which no receipts are issued greatly increase the risk of tax evasion. Despite the availability of banking services and alternative payment, key sectors of the economy remain largely cash-based in almost all developing countries. ... (후략) 	The World Bank	18-03-30
<p>◇ Long-Term Effects of Job-Search Assistance: Experimental Evidence Using Administrative Tax Data / by Dayanand S. Manoli, Marios Michaelides, Ankur Pate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is paper uses administrative tax data to examine the long-term effects of an experimental job-search assistance program operating in Nevada in 2009. The program required randomly-selected unemployed workers who had just started collecting unemployment insurance(UI) benefits to undergo an eligibility review and receive personalized job-counseling services. ... (후략) 	NBER	18-03-19
<p>◇ Tax Evasion and Inequality / by Annette Alstadsaeter, Niels Johannesen, Gabriel Zucma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is paper estimates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tax evasion. We combine random audits, tax amnesties, and leaks from offshore financial institutions matched to wealth records in Scandinavia.. ... (후략) 	CEPR	18-03-12



| 정책 흐름 |

-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본 자료는 2018년 4월 5일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에서 발표한 「청년 일자리 및 지역 대책 추진을 위한 총 3.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 청년 고용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에코붐세대 +39만명 노동시장 진입으로 향후 3~4년간 고용 위기 우려
 - * 청년실업률(%): ('13)8.0 → ('17)9.8
 - ** 고용보조지표3(%): ('15)21.9 → ('17)22.7
-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 생산과 고용이 위축* 되는 등 추가적인 위기 가능성이 높은 상황
 - * 거제·통영 '17.下 실업률 급증(거제: 2.9% → 6.6%, 통영: 3.7% → 5.8%)
- ⇒ 정부는 예산·세제·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청년 일자리 대책」, 「지역지원 대책」 추진
-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당면과제와 구조적 과제 대응의 두 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
 - 당면과제 대응을 위해 4대 분야 중심으로 대책 마련
 - ①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 ② 기술·생활혁신지원 등 창업 활성화로 연 12만개 창업 유도
 - ③ 지역 및 사회적경제·해외취업 등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 ④ 선취업-후학습 장려 등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분야에서의 구조적 과제 대응 지속 추진
 - 규제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교육·훈련 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 지역대책은 고용위기 지역·업종에 대한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 유치·대체 보완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원
 - 근로자·실직자·기업·소상공인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4대 핵심과제 추진
 - ① 훈련연장급여 등 근로자·실직자 직접 지원 강화
 - ② 고용유지·사업전환 등 협력업체·소상공인 지원
 - ③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 ④ 지역상품권 할인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정부는 청년 일자리 및 지역 대책 중 예산에서 즉시 지원해야 할 사업은 총 3.9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음
 - 시급히 추진할 사업, 정책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대책 2.9조원, 지역 대책 1조원 반영

(단위: 조원, %)

	합계	청년일자리	구조조정지역·업종
합계	3.9	2.9	1.0
일반회계	2.6	1.9	0.7 (목적예비비 0.25)
기금	1.3	1.0	0.3

- 청년일자리 대책 2.9조원은 '18년 전체 청년 일자리 예산 3.0조원과 비슷한 규모며
- 지역 대책 1조원도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규모로 판단

• 재원은 금년도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17년 결산잉여금(2.6조원)과 기금 여유자금(1.3조원)으로 조달

- 이번 추경과 함께 세제·제도개선 등 지속적 대책 추진을 통해 에코세대 유입기간 중('18~'21) 18~22만명 추가고용 창출 기대
 - 에코세대 예상 추가 실업(14만명)+청년실업률 1~2%p 추가 감축(4~8만명)
 - ⇒ '21년까지 청년 실업률 8% 이하로 안정화 목표
- 이번 추경예산안은 4.5일 국무회의를 거쳐 4.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2018년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10대)은 다음과 같음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선

- **(추진배경)** 3명 신규채용시 1명분 인건비를 지원('2+1')→3명 이상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지원업종이 제한적이고 단가가 낮아 실효성 부족 지적
- **(반영내용)** 단가인상(1인 667→900만원), 지원 업종 확대* 및 기업규모에 따라 1인 고용부터 비례지원**(+4.5만명, +1,487억원)
 - * 성장유망업종 64만개 → 전체업종 94만개
 - ** 30인 미만: 1명 고용시, 30~100인: 2명 고용시, 100인 이상: 3명 고용시 지원
- **(기대효과)** 중소·중견, 벤처기업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추가고용여력 증대 등에 기여

2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내일채움공제 확대

1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 **(추진배경)**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일자리 질 제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 **(반영내용)**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시 3천만원 목돈 마련 지원(신규 2만명, 175억원)
 - * (현행) 2년 1,600만원=청년 300+정부 900+기업 400 (고용보험기금)
 - (신설) 3년 3,000만원=청년 600+정부 1,800+기업 600 (고용보험기금)
- **(기대효과)** 청년 중소기업 입직 확대 및 기업 구인부담 완화

2 내일채움공제

- **(추진배경)**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에 따른 형평성 고려, 기존재직 청년에도 정부 지원을

통한 목돈 마련 기회 제공

- **(반영내용)** 중소기업 재직청년이 내일채움공제 가입시 정부지원 신설(신규 4.5만명, 1,000억원)

* (월 납입액) 청년 12만원+기업 20만원+정부 30만원 → (총 조성액) 청년 720만원(5년)+기업 1,200만원(5년)+정부 1,080만원(3년)

- 신규 취업자와의 형평성, 가입 촉진 등을 고려하여 재직기간 제한 완화* 및 기업부담 축소**

* 2년 → 1년 이상

** 기업은 월 25 → 20만원(5년) · 정부는 월 20 → 30만원(3년)

- **(기대효과)** 청년 중소기업 입직 확대 및 기업 구인부담 완화

3 中企 취업청년 주거비 지원 신설

- **(추진배경)** 청년은 소득 대비 임대료 지출 비율*이 19.5% 수준으로 높고, 특히 저소득 청년은 25.5%로 매우 높음

* (전체가구 평균) 18.1%, (청년층) 19.5%, (4분위 이하 저소득 청년) 25.5%

- **(반영내용)** 中企 신규 취업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최대 3,500만원)을 4년간 저리(1.2%) 대출(신규 10만명, 3,247억원)

* (요건) ① 만 34세 이하, ② 中企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 지원 받은 자+③ 연소득 3,500만원 이하+④ 보증금 5천만원(60㎡) 이하 주택

- **(기대효과)** 시중은행 전세대출(3.2%) 대비 저리대출을 통해 최대 年 70만원 수준 이자부담 경감(3,500만원×2%p)

4

교통여건 취약 산단 재직청년 교통비 지원 신설

- **(추진배경)**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청년 인력 수요는 높은 반면, 청년은 교통이 불편하여 산단 취업 기피

- **(반영내용)** 산단 중기 재직 청년 중 교통여건 취약 지역* 10만명에게 매월 10만원 지급(신규 976억원)

* 광역시 및 지방 대도시 등 제외 원칙, 다만 산단별 여건에 따라 예외 적용

- **(기대효과)** 산단 중기 재직 청년근로자 실질소득 향상 및 중소기업 인력수급 애로 해소

5

기술혁신형·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 **(추진배경)** 본격적인 창업 붐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혁신 창업팀 발굴·지원 필요

* (기술혁신형)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전문기술 활용 창업(생활혁신형) 생활 속의 다양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창업

- **(반영내용)** 기술혁신형 창업팀 1,500개를 선정하여 최대 1억원 오픈바우처* 지원(신규 1,185억원)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화·R&D 등을 위한 인건비·장비비·재료비 등 활용

- 생활혁신형 창업팀 3,000개를 선정하여 최대 2천만원 성공불용자* 지원(신규 450억원)

* 대출 후 경영지표 등을 통해 성공 여부를 판단하여 성공 판정시 대출 상환

- **(기대효과)** 전문기술 분야와 생활밀착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친 혁신창업 지원을 통해 연내 4,500개팀 창업 지원

6

TIPS* 확대, Post-TIPS 신설, TIPS 타운 추가 조성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 투자회사가 스타트업을 발굴해 1억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사업화자금·해외 진출·R&D 지원 등 총 9억원을 지원

- **(추진배경)**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우수 창업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TIPS 프로그램 지원 확대·개편 추진
- **(지원내용)** TIPS 프로그램 신규 과제 선정 확대 (195 → 245개, +72억원) 및 'Post-TIPS*' 프로그램 신설(신규 30개팀, 450억원)
 - * TIPS 졸업기업 중 성공판정 기업 등 대상으로 후속 민간 투자에 1:1 매칭 → 최대 20억원(사업화자금 5억원, 특별 저리 융자 15억원) 지원
 -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TIPS 선정 창업팀의 입주·보육 공간인 TIPS 타운 확대 조성(2개소, +60억원)
 - * 2개소 중 TIPS 타운 1개소(마포 신보사옥)는 자체기금 활용
- **(기대효과)** 우수 창업팀 지원 확대 → 유니콘 기업 창출

7

4차 산업혁명 인력 양성·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 **(추진배경)** 혁신성장 분야의 실무 기술인력 부족*+서울 서북권역 창업공간 부족**
 - * (SW) '18~'22년, 2.5만명, (정보보호) '18~'20년, 약 8천명 부족
 - ** 마포(서북권역) 창업공간 입주경쟁률: 최고 20:1 수준(기업은행 운영 공간)
- **(반영내용)** 실전형 프로젝트 교육 및 취업 지원을 통해 청년 4차 산업혁명 분야 인력 1,795명 양성(327억원)

- 마포 신보사옥 내 창업공간과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 분야 교육·상담·실증체험 공간 조성(신규 59억원)

* 블록체인·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정보보호 등

- **(기대효과)** 기업수요 기반 실무교육으로 취업연계 강화 및 마포 청년혁신타운('19년초 개소) ICT 창업·교육 기능 지원

8

선취업·후진학 지원

- **(추진배경)** 조기취업 활성화와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선취업·후진학 지원 강화 필요
- **(반영내용)** 성장유망업종 中소 취업 고졸자에게 400만원 장려금 지급(신규 2,4만명, 975억원)
 - 취업 후 진학자에 대학장학금 지원(평균 320만원, 신규 9,000명)
 - 입학 1년 후 취업하고 이후 학업을 병행하여 총 3년 만에 졸업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설(신규 5개교, 80억원)
- **(기대효과)**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 청년 취업률 제고

9

지역 일자리

- **(추진배경)** 청년유출, 지방소멸 위기 등에 따른 지역사회 활력 저하에 선제적 대응 필요
- **(반영내용)** 지역 주도로 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사업 발굴, 취·창업 및 지역정착으로 연계(신규 1.4만명, 1,105억원)
 - ① 지역정착지원형(7,500명): 인구감소 등 낙후지역에서의 취업지원(인건비, 교육비 등)을 통해 지역정착 유도
 - ②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2,500명): 유희시

- 설 리모델링(50개소),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한 취업·창업 공간 제공 등
- ③ 민간취업연계형(4,000명): 지역사회 필요 서비스(돌봄, 교육, 안전 등) 관련 민간기관 직무경험 後 취·창업으로 연결
- (기대효과) 지역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 (구조조정 지역·업종) 고용위기 지역·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최대 年 720만원) 지원(+81억원)
- 조선(신규 200명, 47억원)·자동차(신규 400명, 60억원) 기술인력 퇴직자에 연관업종 재취업 지원(인건비 年 3천만원/인)

10 구조조정지역·업종 실직자 지원 주요사업

1 실직자 지원

-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종료 후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연장급여 지급('18년 기정예산 활용)
 - * 구직급여액 100%, 최대 2년
- (직업훈련) 전직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확대(+817억원)
 - 위기지역의 경우 내일배움카드 한도 확대(年 200→300만원) 및 자부담 면제
-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참여시 지원되는 대부 확대(+205억원)
 - 위기지역의 경우 1인당 대부 한도 확대(年 1→2천만원)
- (고용서비스) 재취업 서비스 지원 확대*
 - * 조선업희망센터(4개소) 운영비 연장 지원('18.下), 청년센터 신설(군산·통영) 및 해외취업 지원 확대(K-Move 스킴과정 유치) 등
- (구조조정 업종) 조선(신규 500명, 20억원)·자동차(신규 500명, 10억원) 기술인력 퇴직자에 재교육·전환교육 지원

2 실직자 채용 기업 지원

- (청년고용) 위기지역 중소기업이 청년 신규 채용 시 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지급(+400명, 1인당 年 900→1,400만원)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 본 자료는 2018년 3월 26일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에서 발표한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내 삶의 질” 개선」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였다.

•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정부는 국민이 “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19년 총지출을 당초 '17~'21 중기계획상 '19년 증가율 수준(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 꼭 필요한 투자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지출구조 혁신 및 안정적 재원마련 등으로 재정건전성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 '19년 예산안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의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① 청년 일자리는 취업·창업·교육·주거 지원 등 에코 세대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

②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종합적·체계적 지원

- 노인일자리 확대 및 다양화, 치매국가책임

제 안착 등을통해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 지원

③ R&D·산업·인력·생태계 조성 등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④ 철저한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 DB 구축, 안전인 증제 도입 등으로 취약시설 관리 강화 및 예방 투자 확대

■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보호,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재정운용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양적·질적 구조조정 등 재정구조 혁신과 함께 참여·소통 및 재정분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재정혁신을 통해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
- 신규사업 추진이나 기존사업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질적 구조조정도 지속 추진

② 다부처·융합형 R&D 체계로 개편, 산업단지 지원 연계 강화 등 재정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융합·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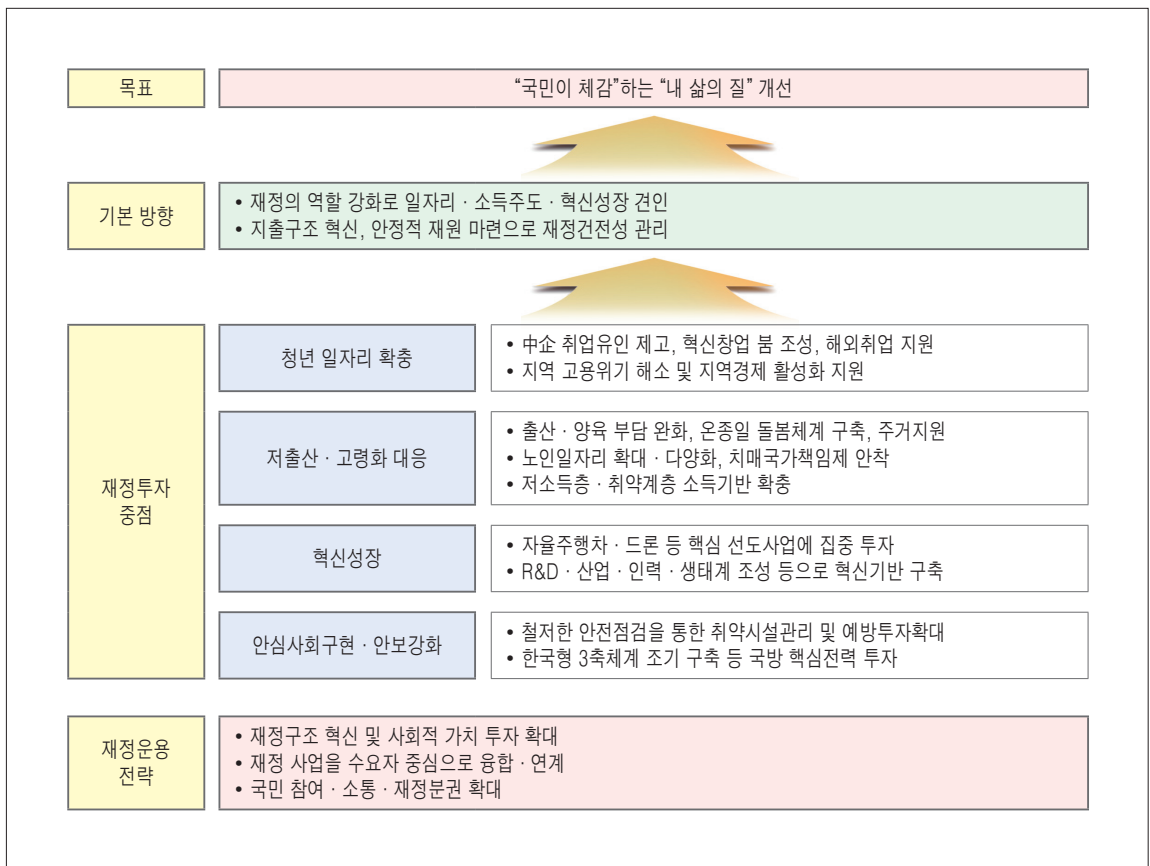
③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하고, 지역밀착형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등 재정분권도 확대

- 이번 지침은 3.30일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5.2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 기획재정부는 부처협의를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9.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동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이 2019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 절차, 작성요령, 각종 기준·단가 등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별도 배포 예정임

참고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재정포럼

2018년 4월호 통권 제262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 편집위원장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중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8년 4월 16일 발행 / 제22권 제4호(통권 제262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 414-2131~2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주)상일 E&P TEL: (02) 2269-6770

■ 인쇄 / (주)상일 E&P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